

M45-15 / 2001. 11

월간
세계농업뉴스

제15호 (2001년 11월)

『세계농업뉴스』는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http : //www.krei.re.kr](http://www.krei.re.kr))의
『세계농업정보』사이트에 게재된 자료를 월간으로 발행한 것입니다.
자료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김태곤 taegon@krei.re.kr

TEL 02-3299-4241 / FAX 02-965-8401

목 차

I. 농업 농정 동향

1. 미국 21세기 식료농업정책 개요 3
2. 중국 2001년 상반기 농산물생산 동향 22
3. 일본 중국간 세이프가드 발동관련 협의경과 28
4. 일본 발아현미(發芽玄米) 이야기 (1) : 기능성 성분과 건강증진 효과 .. 34
5. 일본 발아현미(發芽玄米) 이야기 (2) : 발아현미의 개발과 사업화 .. 40
6. 일본 발아현미(發芽玄米) 이야기 (3) : 발아현미로 지역활성화 45
7. 일본의 월간 채소산업 정보(2001. 9) 50
8. EU 집행위원회 GMO 안전성 연구에 관한 원탁회의 시작 58
9. EU 원산지표시 관련 사법적 적용 논쟁 61
10. EU의 식품 안전성 교육 캠페인 65
11. 영국 돈육수출 재개 70

II. 국제기구 논의동향


- WTO 농업협상 9월회의 논의동향 75
- EU의 WTO 농업협상에 대한 접근방법 90

III. 농산물무역 정보

- 중국의 농산물수출 동향과 문제점 111

IV. 세계 식료수급 정보

- 세계 곡물 수급 및 가격 동향(2001. 10) 119



농업 농정 동향

- 미국 21세기 식료농업정책 개요
- 중국 2001년 상반기 농산물생산 동향
- 일본 중국간 세이프가드 발동관련 협의경과
- 일본 발아현미(發芽玄米) 이야기 (1)
- 일본 발아현미(發芽玄米) 이야기 (2)
- 일본 발아현미(發芽玄米) 이야기 (3)
- 일본의 월간 채소산업 정보(2001. 9)
- EU 집행위원회 GMO 안전성 연구에 관한 원탁회의 시작
- EU 원산지표시 관련 사법적 적용 논쟁
- EU의 식품 안전성 교육 캠페인
- 영국 돈육수출 재개

미국 21세기 식료농업정책 개요

최근 미국 농업부(USDA)는 21세기를 대비한 식료 및 농업체계에 대한 미국 행정부의 검토의견을 발표하였다. 여기서는 각 분야별 원칙을 포함한 “식료 및 농업정책 : 새로운 세기를 대비한 검토(Food and Agricultural Policy : Taking Stock for the New Century)”¹⁾ 를 요약한다.

오늘날의 식량체계를 좌우하는 동력(dynamism)은 지난 20여 년 전부터 그 힘을 발휘하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이것은 시장과 문화의 세계화, 정보 및 생명공학기술의 진보, 가구구성 및 노동력의 기본적인 변화 등과 같은 사회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며, 식료판매, 유통, 무역, 소비 조직을 통해서 확대되고 있다. 이런 추세는 현실적이고, 끊임없이 지속될 것이며, 또한 오늘날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고, 미래 식료와 농업의 개별 사업환경이나 식료체계의 구조조정(restructuring)을 주도해 나갈 것이다.

이런 추세가 의미하는 시사점이나 수반하는 변화는 엄청날 것이다. 농업과 식료체계를 지원하기 위해서 구축된 제도, 정책, 규제, 사회경제기반(infrastructure)뿐만 아니라 주요 자원 등이 끊임없이 새로운 환경에 직면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서 제도나 정책을 현대화하는 것이 주요 과제가 될 것이다. 이해당사자들이 새로운 시대의 식료 및 농업에 관한 전략적 사고를 도출하는데 필요한 주요 원칙을 개발하고, 보고서를 통해 검토되어야 할 미래 지향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해 투자한 결과, 우리의 과거체계는 국가에 많은 공헌을 하였다.

1. 새로운 시대의 전개

미국에서 식료가 대량 생산된 품목의 관점에서 엄격히 고려되고, 풍요롭고 여유있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여기게 된 역사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반세기의 번영과 함께 식료에 대한 개념과 기대가 변화되었으며,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었다. 오늘날 미국 소비자들은 식품체계에 거는 기대가 상당하다. 그리고 품목이 다양하고, 안전성이 향상되며, 환경 역효과가 적고, 편리성이 향상된 보다 영양가 높은 식품이 조달될 것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1.1. 소비자 주도 농업

미국 소비자들은 생산과정 및 효과 등 전반적인 식료에 대한 관심이 더욱 더 증대하고 있으며, 보다 안정적인 식료 공급여부뿐만 아니라, 식료가 제공하는 혜택이나 원하는 식료를 마음껏 구입할 수 있는지의 여부로 소비자들의 관심이 변화되었다. 이처럼 식료에 대한 수요의 특성이 변화되고, 인구증가율이 감소하며, 성장을 거듭함에 따라서 소비자가 주도하는 추세는 차츰 중요하게 되었다. 오늘날 국내 식료에 대한 욕구는 인구증가에 따라 동일한 더딘 속도로 증대해 왔다. 미국의 식료시장이 성숙해짐에 따라 한 식품에 대한 소비는 다른 식품의 소비 희생으로 증대한다.

또한 미국인들은 환경의 질이 소비자 선택에서 매우 중요한 일종의 비시장 재화(non-market goods)로써 인식하고 있다. 영농기법과 자연자원간의 밀접한 상호작용은 1960년대 이후 매우 중요한 것으로 각광을 받았다. 습지 보전, 야생서식지 개선, 수질 유지·개선 등 미국 농민들은 환경보전 활동을 꾸준히 전개하였다. 하지만 이런 쟁점사항들은 여전히 국민이나 정부의 주요 관심사항이며 소비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1.2. 세계 경제

세계화 물결에 따라 농식료품을 교역하는데는 어떤 제약조건도 뒤따르지 않게 되었다. 보다 개선되고, 빠르고,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정보교환 및 운송체계를 통해서 전세계 시장에서 농업식료 사업활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 이런 시장의 세계화에 따라 기업들은 보다 경쟁적으로, 그리고 변화하는 소비자 요구에 응하기 위해서 유통경로를 단축하도록 압력을 받고 있다.

전세계 식료체계와 관련된 기업들은 보다 낮은 가격의 고품질의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서 경쟁하고 있다. 세계화 추세에 따라 기업은 자신의 원료 공급원을 다각화하고 있으며, 가장 낮은 가격에 최고의 제품을 공급하는 식품 가공업자, 도매업자, 농민들을 선택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더 이상 농업이 국내에서만 일어나는 제한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으며, 전세계적으로 상호연결 체계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1.3. 기술혁신

과학기술은 지리적 제약을 줄임으로써 세계시장의 성장을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술혁신을 통해 새로운 세계시장의 조건과 요구에 반응함으로써 미국 식료 및 농업체계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 전통적으로 농업기술은 농민의 비용을 줄이고 수확량을 증대시키는 기술이나 도구에 국한되었다. 오늘날의 농업경제에서 새로운 생명공학 정보는 농산물 시장을 활성화 시켰으며, 더욱이 시장기회를 증대시키면서 생산자나 소비자간의 직접적인 교류를 확대시키고 있다.

특히 생명공학기술은 농민들이 새롭게 이용하여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도록 약속하고 있다. 이런 가능성은 광범위하고, 중요하며, 차츰 확대되고 있다. 새로운 제품으로는 의약품, 틈새시장(niche market)에서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특성을 갖고 있는 가축이나 작물들이 포함된다.

정보기술(IT)이나 전자상거래를 통한 유통망은 과거보다 훨씬 광범위하게 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이 직접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고, 생산자들은 소비자들이 원하는 모든 제품을 거리와는 상관없이 전세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생명공학이나 정보기술이 결합된 효과는 잠정적으로 불확실하다. 생산자들은 전자상거래(e-commerce transactions)를 통해서 소비자의 욕구에 훨씬 더 빠르고 수월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동시에, 생명공학기술을 통해서 소비자들의 반응을 과거 보다 훨씬 빠르게 새로운 제품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 또한 생겼다.

기술진보 또한 환경문제를 반영하고 있다. 정밀농업(precision agriculture)과 같은 수단을 통해서 지역조건에 맞는 정확한 양의 비료나 농약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공간이나 에너지, 인공위성이나 로봇 등을 응용한 제조 부문은 농업환경을 개선하고 생산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새로운 엄청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1.4. 농업의 다각화

생명공학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촉진된 생산성 증대는 영농 부문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 20세기 동안 소수의 대규모 농가로의 자원집중 현상이 발생되었다. 지난 50년 동안 생산이 두 배로 증가한 반면, 농가인구는 3분의 2 이상 감소하였다. 오늘날 약 15만 명의 농민들이 대부분의 식료와 섬유를 생산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경쟁적인 농가가 미국 농업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미국 농업부(USDA)는 적어도 연간 소득이 1,000달러인 농민들이 200만 명으로 이들 대부분은 겸업농가로서 농촌생활을 향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런 다양성에 따라 농업의 다각화 문제가 부상하고 있다. 틈새시장을 겨냥한 농가(niche farms), 취미농가(hobby farms), 수렵보호구, 도시인을 위

한 목장(dude ranches), 체험농장(you-pick operations), 농민 시장을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직거래를 하는 농가 등 다양해지고 있다.

농민들은 매년 새로운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으며, 정부 정책의 주요 관심인 면화, 옥수수, 밀, 사료곡물을 포함해서 다양한 품목들이 전반적인 농업을 대표하고 있다. 1930년대 거의 모든 농가에서 재배했지만 오늘날 이런 주요 작물들을 재배하는 농가는 약 30%에 달하며, 농산물 판매액의 20%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가격과 소득지원계획이 처음으로 개발되었던 1930년대에는 농촌, 농민, 농가간의 차이점을 특별히 구분할 필요가 없었다. 사실 농촌과 농가들은 생활방식과 밀접하게 상호 관련되어 있었고, 분리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오늘날 농민들은 농업 및 비농업 부문에서 일할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소수만이 전업농이다. 1999년 농외소득이 1240억 달러에 달하는 반면 영농활동으로부터 얻는 순소득은 557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1.5. 변화의 의미

2001년 오늘날 미국은 농가의 구성이 매우 다양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으며, 새로운 과학기술은 세계 식료체계에서 소비자 욕구에 신속하게 부응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세계화 추세에 맞추어 무역, 농업정책, 경제기반 구축, 환경보전, 농촌 지역 활성화, 양분 및 식량 지원 등과 관련된 역할을 끊임없이 변화시켜 나갈 것이다. 우리가 이런 쟁점사항들에 어떻게 접근해 갈 것인가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향후 미국 농업을 대비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2. 무역확대의 중요성

장기적으로 무역은 미래 식료 및 농업 부문의 경제적 성장을 달성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국내 식료 시장의 요건을 충족시키는데 필요한 수준 이상으로 훨씬 많은 능력을 갖추고 있다. 농경지, 수송, 가공처리, 금융, 기타 2차 서비스 체계의 과잉설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해외 소비자로의 판매망을 확대하고, 유지해야 한다. 무역자유화, 세계시장 구조의 변화 추세에 맞추어 꾸준히 해외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미국의 수출은 1970년에 73억 달러에서 2001년 현재 535억 달러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수출시장이 성장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없었다면, 오늘날 농가 판매가격이나 순소득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렀을 것이다.

세계인구의 96% 이상이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인구와 소득 증가세가 상대적으로 빠른 개도국에서의 식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통적인 품목에서의 수출신장이 끊임없이 예상되며, 소비자 주도 고부가가치 품목(육류, 가금류, 과일, 야채, 가공식품)에 대한 수출이 급속히 증대할 것이다. 고부가가치 품목 매출 비중이 1990년에 50%인 것에 비해 현재 75%에 달하고 있다.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관세 및 기타 무역장벽 감축을 통해서 현상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세계무역에서 식료 및 농업의 평균 관세는 제조업 부문의 관세보다 훨씬 높은 실정이다. 세계 평균관세가 62%인 것에 비해 미국은 12%로 가장 낮은 식료 및 농업관세를 부과하는 국가 중의 하나이며, 매우 높은 지역의 관세를 인하시키는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상당한 이득을 가져올 것이다.

무역을 확대시키는 주요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세계시장의 중요성 인식

96% 이상의 인구가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새롭게 부상하는 중류 소비자 계층에 대한 공략 없이는 시장점유율을 확대시킬 수 없다.

(2) 새로운 무역협상을 통한 시장확대

세계시장으로 확장하기 위해서는 관세를 낮추고 왜곡된 보조금을 제거하는 과감한 무역정책이 요구된다. 세계무역자유화 추세에 따라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할 경우 우리의 생산자나 무역업자들은 뒤처지게 된다.

(3) 농업 및 무역정책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보장

국내 농업보조나 국제 무역정책은 일관되고 상호 강화되어야 한다. 부주의하게 국내 농가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국내보조조치의 시행과 함께 농가수출을 진흥시키는 무역정책이나 계획들은 의미가 없다. 우리의 국내 및 수출정책은 기존의 국제의무를 지원해야 하는 동시에 현재 진행중이거나 향후 협상에서의 목표를 추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해야 한다.

(4) 기존 무역협상의 강화

일단 새로운 무역협상이 이루어진다면 정부는 무역파트너로 하여금 자신들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5) 판매망 구축 노력

수출신용, 시장개발 등 수출진흥조치가 식료 및 농업 부문에 이용되었다. 이런 계획들이 비용 효율적이고, 시장이 성장하는데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고부가가치 품목을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관련 조치에 대한 검토작업이 끊임없이 요구된다.

3. 농업정책

지난 70여 년 동안의 농업정책은 21세기를 대비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경험을 제공했다. 지난 오랜 기간동안 정책이나 계획으로부터 얻은 경험은 매우 교육적이며, 과거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는 매우 가치있는 교훈을 제공한 것으로 입증되었다. 또한 지난 역사에 의하면 농가소득의 증대는 수출시장과 비농업고용 기회의 증대와 함께 주로 강력한 연구에 의해서 지원된 생산성 증대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930년대 이후 대다수 정책 접근방식은 그 실효성이 결여되고, 예기치 않은 결과를 낳았으며, 예상한 것 보다 더 많은 비용을 초래했다. 그리고 일련의 농업관련법규들 수정해왔다. 1996년 농업법(the Federal Agriculture Improvement and Reform Act)은 대다수 정책구조를 변화시켰고, 소득과 연계되지 않은(decoupled) 혜택을 통해서 농민의 의사결정에 융통성을 부여했으며, 국내 농업부문의 지원에 대한 사례를 설정했다.

아마 이런 접근방식이 시장이나 자원사용을 최소한으로 왜곡하면서 이용 할 수 있는 방식인 반면에, 가격지원조치와 함께 직불제(direct payment)는 농지 가격을 상승시키는 등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했다. 최근 지불액이 1996년 농업법에서 제안된 액수 이상으로 지난 4년 동안에 280억 달러에 달하는 등 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며, 그 효과 또한 악화되었다.

과거 역사적 변천과정에 따라 현행 조치의 혜택은 여전히 농가의 40%에 달하는 특정 품목의 생산자에게 돌아가고 있다. 농가의 수혜 혜택과 재정상태간에는 여전히 직접적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의 현행 농촌지원에 대한 대규모, 품목별 접근방식은 생산비용, 유

통방식, 전체 관리능력에 따른 광범위한 차이점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가령, 매우 효율적인 상업 농가들은 비용을 낮추고 활동영역을 확대하도록 함으로써 가격지지로부터 상당한 혜택을 받고 있다. 다른 농가들은 생존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혜택을 받지 못했으며, 다른 방식으로 흡수되었다.

현행 조치에 의한 다른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토지 소유권과 농가운영 간의 단절로부터 파생되고 있다. 현행 조치들이 농가 운영에 도움이 되는 혜택을 제공하는 반면에 대다수 지원에 의한 이득이 단기에는 토지가격 상승을 통해서 장기에는 토지가치의 상승을 통해서 지주들에게 귀속된다. 대다수 농장 경영주의 경우, 1999년에 농민의 42%가 토지를 임대한 것으로 입증된 것처럼 토지 임대는 사업의 규모를 확장하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는 주요한 전략이다. 주로 경작지를 임대하여 영농활동을 하는 농민들은 정부 조치에 의한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할 것이다.

현행 정책이 보다 시장 지향적인 방향으로(towards market orientation) 장족의 발전을 해온 반면, 오늘날 농가구조의 다양성, 시장을 주도하는 소비자의 맥락에서 살펴본 면밀한 평가에 의하면 정책목표나 정책조치 체계, 그리고 결과간에 심각한 불균형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으로 정부의 직접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농민, 농업, 농촌사회가 지속적으로 번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개선의 여지가 있다.

농업정책의 주요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과거 경험으로부터의 얻은 교훈

지난 70여년 동안의 경험으로부터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대를 대비한 효과적인 농업정책이 구축되어야 한다. 매우 세심하게 고안되었을 지라도 정부 개입은 시장과 자원배분을 왜곡하고,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낳은 것이 사실이다.

(2) 새로운 운영환경에 대한 인식

우리의 농업 부문과 식료체계는 오늘날 경쟁적이며, 소비자 주도적인 새로운 환경 속에서 운영되고 있다.

(3) 시장개방에 대한 끊임없는 공약 확대

미국은 시장 지향적인 정책을 이행하고 있으며, 식료체계와 사회의 이해 당사자들의 장기적인 관심사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시장은 자원 및 투자 분배, 생산을 주도하는 여러 가지 대안의 우수성을 입증해 왔다. 여전히 정부의 공약은 새롭게 갱신되어야 하며 확대되어야 한다.

(4) 농업 및 식료 체계의 성장을 위한 충분한 약속이행

시장 지향적 정책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시장을 개방하도록 하는 장기적이고 국가 경제적인 공약이 있다. 가령, 농산물의 경우 해외시장의 개척은 미래 투자, 성장, 건전성을 지원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오늘날 우리의 농업 생산 능력은 국내수요를 초과할 뿐만 아니라 훨씬 빠르게 증대하고 있다. 미래 자산가치, 소득, 성장 및 전반적인 번영은 세계시장에 얼마나 빨리 접근하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다. 우리의 경쟁력 있는 생산자들이 새롭고 확대된 무역협상을 통해서 판매량을 늘리고, 시장점유율을 확대하며, 농촌 지역의 경제활동을 활성화하도록 최선의 약속을 유지해야 한다.

(5) 농업 및 무역정책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보장

농업 부문의 국내보조와 국제무역정책은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며 서로 강화되어야 한다. 국내보조조치가 경쟁력을 감소시키는 동시에 농업수출을 진흥하는 무역정책이나 조치는 의미가 없다. 우리의 국내 및 수출정책은 기존 국제의무를 지지하는 동시에 현재 및 미래 협상의 목표를 추구하는 데에 필요한 대상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6) 미국의 세계 주도권 강화

세계는 국내농업보조와 국제무역을 위한 정책이나 조치를 고안하는데

있어서 미국의 지도력을 주시하고 있다. 미국 정책입안자들은 우리의 조치들이 사례가 되고, 우리의 입장을 다른 사람들에게 설득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7) 농업부문의 광범위한 다양성 구축 및 함양

효과적인 농업정책은 규모, 입지, 재정상태, 작물 및 가축, 관리능력, 소득원, 목표에 있어서 농업 부문의 다양성을 반영해야 한다. 이런 다양성에 의해서 나타나는 문제들은 매우 상이하며, 특정 욕구를 다루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잘 짜 맞추어진 해결책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 문제는 더욱 악화될 수 있다.

(8) 농민을 위한 시장 지향적 경제안전망 제공

농업 부문이 유일하고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국가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개방시장을 지원하고, 농업 부문의 붕괴를 예방하는 균등한 정책을 이행할 수가 있다. 따라서 이런 조치들은 효과성, 투명성, 공정성, 일관성, 포괄성 등과 같은 기본적인 공공정책 원칙과 일치되어야 한다. 현행 정책들은 반주기적 대출, 작물 및 수입보험, 직불제 등 여러 가지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다른 조치들과 결합하여 고안될 수 있다.

(9) 광범위한 사회경제기반 구축에 중점

소비자 신뢰나 효율적인 지원을 끊임없이 누릴 수 있도록 건전하고 바람직한 농업 및 식료체계에 필요한 요건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제도를 정비하고, 신중하게 투자하며, 농업, 식량, 무역체계를 지탱하는 사회경제기반을 현대화하는 것이 요구된다.

4. 사회경제기반 구축 강화

미국은 다양하고, 구입가능하고, 안전하며, 영양가 있는 식료를 세계 시장에 성공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이런 성공에는 광범위한 물리적, 제도적 사회경제기반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했으며, 실제로 식료 및 농업체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최근 유럽지역의 광우병 발발은 식료와 농업체계를 통합하는 사회경제기반에 대한 경각심을 부각시키는데 도움이 되었다. 과학, 기술, 국제협력은 미국으로부터의 작물과 가축의 병충해 및 질병을 예방하고 국내에서 직면하는 병충해 및 질병 문제를 다루는데 주요한 요소이다.

최근 미국인들은 식용골분 미생물 위험요소로부터 발생하는 건강 위생 문제에 대해 보다 친숙해졌다. 기본적인 증거자료에 이하면 병원균에 의해서 발생된 질병의 수가 감소하고 있지만 식품안전체계는 새로운 병원균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농업기반은 경제성장, 식료 및 섬유시장의 효율적 기능을 가능하게 하는 모든 종류의 기초 서비스, 시설, 장비, 제도 등을 포함한다. 이런 농업기반은 작물과 가축의 병충해 및 질병으로부터 농민, 목축업자,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서비스 부문의 투자를 필요로 한다. 이것은 강력한 연구에 대한 이행과 생산, 유통, 식품안전성, 양분, 자연자원보전 등을 강화하는 협동체계뿐만 아니라 농업부의 다른 기능들을 요구한다.

지금의 이런 구조는 과거보다 매우 다른 접근방식을 요구하면서, 급속히 변화된 시장이나 제도측면에서 도전을 받고 있다. 생산자로부터 가공업자나 도매업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식료경제 부문은 과거보다 서로 연계되어 있다. 첫째, 새로운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식료공급경로의 모든 관

계로부터 관련정보나 협력이 요구된다. 둘째, 작물이나 가축 관련 질병이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통합된 해결책이 요구된다. 셋째, 최근 지적재산권 보호나 생명공학기술의 진보 추세에 따라 식료체계의 과학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민간 부문의 투자기회가 활성화되었다. 또한 보다 강력한 민간 부문의 유인책(incentive)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공부문과 민간산업부문간의 효과적인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사회경제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 (1) 광범위한 사회경제기반 구축에 중점
- (2) 새로운 운영환경 인식
- (3) 작물과 가축 관련 병충해 및 질병 예방대책 개선
- (4) 모든 미국인에게 안전한 식료를 공급하도록 식료안전체계 구축
- (5) 미래 사회경제기반 욕구 예상
- (6) 과학에 근거한 결정
- (7) 농업연구 및 교도사업을 위한 공공부문을 활용
- (8) 시장경쟁력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 인식
- (9) 협력의 중요성 인식

5. 보전 및 환경

농민, 목축업자, 민간 산림지 소유자들은 국토의 3분의 2를 소유 관리하고 있으며, 토양, 대기, 물을 보호하는 관리자이다. 토지보전에 따른 비용이 토지관리자에게 부여되는 반면 혜택은 대체로 사회에 돌아간다. 환경질 개선에 대한 사회적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식료 및 섬유, 목재 생산에 따른 농촌경관, 야생서식지, 습지, 개선된 수질이나 대기질 등 환경쾌적함 같은 산출물에 대한 광범위한 정의가 필요하다.

보전정책은 생산적인 토양의 표면을 적절히 유지하는 데에 중점을 두어 전개되었다. 토양침식을 줄이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며, 주요 성과였다. 보전정책은 다양한 수질보전조치뿐만 아니라 야생서식지나 습지의 보호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더욱이 축산으로부터의 양분유출, 수질보전, 에너지생산, 온실가스배출량 감소 등에 대한 대중의 관심사항이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

환경 관심사항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서, 이런 사항들을 다루는데 필요한 다양한 보전정책 수단이 요구되고 있다. 1985년 이후 연방정부 예산의 대부분이 보전유보계획(Conservation Reserve Program)과 같은 전통적인 토지은퇴조치 등에 지원되고 있으며, 환경민감 경작지에 대한 임대 및 지역보전권(easement), 은퇴된 토지로부터 발생된 환경혜택을 증진시키는 관리기법에 대한 비용분담 등에 대한 보조가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에 자발적 조치를 따르거나 보전순응(conservation compliance)과 다른 규제조치를 준수하는 경작지를 대상으로 다양한 보전활동이 수행되고 있다.

토지은퇴조치에 편중된 현행 불균형으로 인해서 경작가능 토지를 보전하는 지출로부터 비용 효과적인 환경혜택을 가져올 수 있는 잠재력이 내재해 있다. 더욱이 대다수 새롭게 부상하는 농업환경문제는 경작가능 토지에 대한 관리기법을 변화시킴으로써 반영될 수 있다. 또한 개선된 민간산림 관리기법은 강 유역을 보호하는데 바람직하며, 멸종위기의 종들을 위한 개선된 서식지를 제공할 수 있으며, 외래종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다.

보전정책은 여러 경쟁적인 관심사항간에 균형을 유지해야 하며, 통합된 토지은퇴조치, 지역보전 유인책, 보존순응요건, 의무보조 등을 적절히 활용하는 접근방식이 중요하다. 각 수단을 적재적소에 활용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농업환경보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또한 지방 및 주정부와 보전계획을 이행하는 다른 기관들과의 협력 증진을 통해서 자금이 효과적으로 이용되고 상승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보전원칙은 다음과 같다.

- (1) 과거 환경이득 지속
- (2) 새롭게 부상하는 환경문제 수용
- (3) 보전정책 수단을 적절히 활용하는 방안을 고안하고 적용
- (4) 시장 지향적인 정책에 대한 재확인
- (5) 보전 및 무역정책의 일관성 보장
- (6) 보전 및 농업정책 통합
- (7) 이해당사자, 민간 및 공공기관간의 협력의 중요성 인식

6. 농촌 지역사회 활성화

20세기초 농업처럼 현재의 농업은 더 이상 대다수 농촌경제를 지탱할 수는 없다. 8개 농촌 지역 가운데 7개 지역이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비농업 활동에 의해 주도되고 있고, 품목별 농업정책은 농촌경제와 인구의 복잡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농촌은 다양하며, 농촌 지역이 직면하는 과제는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동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이런 다양성은 계획이나 정책을 독창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며, 미국 농촌에 도움이 되는 제도간의 독자적인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

자연자원을 바탕으로 하는 대다수 산업지역에서 고용과 소득이 감소하고 있지만, 농촌활력과 관련된 기타 지역에서는 증가하고 있다. 미국 농촌 지역에서의 민간투자를 유치하고, 고용을 창출하며, 소득을 증대시키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에너지생산처럼 자연자원을 바탕으로 농촌소득을 증대시키는 대안을 모색하는 정책 또한 매우 중요하다.

농촌 지역은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개발하고, 전통적인 화석연료를 생산하는데 적절한 위치에 놓여 있다. 농촌공간이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농촌

지역에서 바람 및 태양 에너지는 가장 경제적으로 생성된다. 작물이나 농업 잔류물들은 에탄올이나 바이오디젤과 같은 연료를 생산하거나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용할 수 있다. 에탄올 산출물은 급속히 성장하고 있으며, 연구 및 개발 노력이나 상업화를 시도하는 실험적인 사업계획을 통해서 바이오디젤이나 생물총량을 응용한 전력 생산은 많은 혜택을 가져올 수 있다.

농촌 및 도시 젊은이들이 미래 첨단기술을 요하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 경쟁하기 위해서는 전례없는 교육이나 과학기술을 필요로 한다. 과거에 농촌지역은 낮은 기술과 낮은 임금을 요하는 산업들을 불러들였다. 고용주들은 고등교육을 받은 숙련된 노동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농촌 지역으로 하여금 고도의 성과를 달성하고 지식기반 기업을 유치하도록 하는데 있어서 사회교육 및 노동자 훈련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으며, 교육의 질을 강화하고, 학교에서 직장으로의 변화를 활성화함으로써 인적자본이나 잠재적 수익률이 개선되었다.

원거리통신, 전력, 물 및 폐기물처리 시스템, 수송인프라 등은 농촌개발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그러나 규모의 영세성과 관련된 높은 비용이나 한정된 과세기준 때문에 대다수 농촌 지역은 재정적인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재정 및 기술지원에 의해서 추진된 정보 및 기술 부문은 영세한 농촌 지역으로 하여금 의료 및 교육 기회 등 도시에서 이루어진 동일한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농촌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 (1) 미국 농촌의 다양성 인식
- (2) 농업정책과 상이한 농촌개발정책에 대한 이해증진
- (3) 농업정책에서의 비농업경제의 중요성 인식
- (4) 민간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5) 높은 교육수준 및 숙련된 기술의 필요성 강조

- (6) 자연자원의 활용
- (7) 야생지대와 도시 공통영역에서의 재산과 삶에 대한 보호
- (8) 사회경제기반, 지역설비, 과학기술의 확대
- (9)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관계를 통합

7. 영양 및 식량지원

오랜 기간 식료와 농업정책은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미국인들이 건강하고 영양가 있는 식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추진되었다. 이런 정책은 다양한 식량보조, 인본주의 견지에서 취해진 영양분조치, 투자, 농업지원 목표를 포함하고 있다. 이런 조치들은 단기적 기근이나 고난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가난한 사람들에게 원조를 제공하고, 고등교육을 받은 건강한 노동력을 길러내는 인적자본에 대한 실용적인 투자를 유치하며, 농업 부문을 지원한다.

핵심적인 노력으로는 식량지원프로그램(Food Stamp Program), 어린이 영양조치, 여성, 유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보조영양조치(Special Supplemental Nutrition Program for Women, Infants, and Children(WIC)), 품목분배조치 등을 포함한다. 오늘날 이런 조치들은 미국인 6명당 1명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또한 적절한 식료를 제공받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미국인들이 건강한 식이요법을 하도록 권장한다.

국가의 식량보조조치들은 성공적으로 수행되었지만, 이들의 운영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대다수 이런 조치들은 1960년대와 1970년대 이후 저소득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저소비, 영양결핍의 문제에 반응해서 시작되었다. 이런 문제들이 매우 중요하게 부각된 반면, 식생활의 질적인 문제와 관련하여 새로운 주요 과제가 부상하였다.

영양과 식량원조의 주요 원칙은 다음과 같다.

- (1) 국가의 영양안전망 구축을 위한 끊임없는 공약이행
- (2) 영양안전망에 소요되는 안정적인 자금지원 보장
- (3) 조치 관련 규정의 단순화
- (4) 현대 과학기술 지원
- (5) 결과에 기초를 둔 성과 조치에 대한 공약 보장
- (6) 건강하고 영양가 있는 식이요법 촉구

8. 통합된 조치의 중요성

환경이 변화한다는 사실은 미래의 조치이행을 위해서는 동시대의 조치들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오늘날 현대 식료 및 농업체계가 직면하는 현안들은 너무 다양하고 복잡해서 단지 하나의 조치나 접근방식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 동식물 병충해 및 질병으로부터의 보호, 새롭게 부상하는 식용 골분 병원체의 제거, 생물에너지 효율성을 달성하는데 수반되는 장애극복, 저소득 가계를 대상으로 한 영양분 있는 식료공급, 농촌이나 산림에서의 비용 효과적인 탄소압밀 촉구 등 이들 어떤 것도 단일 기관이나 수단에 의해서 달성될 수 없다.

더욱이 대다수 조치나 정책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용할 수 있는 기술들은 여러 기관으로부터의 자원이나 정보를 필요로 한다. 현안들의 다차원적인 특성, 이런 현안들을 다루는데 필요한 과학기술들은 보다 통합된 조치를 이행하도록 촉구하는 반면에 소비자들 또한 보다 포괄적인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다. 오늘날 소비자들은 농업부나 혹은 기타 연방의 하나 이상의 조치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만일 조직이 비신축적이라면 효율적인 서비스를 얻는데 방해받을 수 있다.

주요한 추가 구조조정(restructuring) 없이도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개선시

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접근방식들이 취해질 수 있다. 이런 접근방식으로는 서비스 이행을 위해 여러 가지 상품을 한 곳에서 살수 있는 쇼핑(one-stop shopping), 정보 및 자료 공유, 기관이나 조치의 컴퓨터 환경 개선 등이 포함된다. 정보기술의 진보에 따라 관계기관들은 매우 낮은 비용으로 주요 자료를 공유할 수 있으며, 소비자들은 동일한 정보를 다양한 연방기관으로부터 제공받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수집된 자료가 부서별 기능에 따른 동시적인 의사결정 요구에 부응하는지의 여부는 모든 조직계통의 상호 검토를 통해서 달성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미래 자료요건을 평가할 수 있도록 자료들을 수집정리하고, 현재 자료의 목록을 작성하는 포괄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지원할 것이다. 이에 따라 부서별, 조치별 데이터베이스(DB)의 통합이 더욱 수월해질 것이다.

조치들을 통합하는데 필요한 주요 원칙은 다음과 같다.

- (1) 동시적인 복잡한 농업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필요한 협력사업 지원
- (2) 기관별, 부서별 통합된 서비스와 기능에 대한 검토 촉구
- (3) 협력과 제휴의 기회 추구
- (4) 주제별, 조치별 통합 반응체계에 대한 지적능력 함양

자료: USDA, Food and Agricultural Policy : Taking Stock for the New Century, 2001. 9 에서
(김상현 ksh3615@krei.re.kr 국제농업연구실)

중국 2001년 상반기 농산물생산 동향

1. 중국 농업이 직면한 새로운 동향

1.1. 식량의 안정적인 수급유지

개혁개방 20년 동안 중국농업의 종합적인 생산능력이 현저하게 개선되면서, 식량의 총 생산능력은 약 5억톤에 달하였다. 특히 “九五”기간 동안 지속적인 풍작으로, 식량 총생산량은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현상이 출현하였다.

2000년 중국의 식량생산량은 1999년에 비하여 4,621만톤이 감소하였으며, 2001년 하곡 식량생산량은 2000년 동기에 비하여 491만톤이 감소함으로써 식량의 시장가격이 다소 상승하였다. 그러나 재고식량이 풍족하여 식량의 총 수급관계는 여전히 다소 여유가 있는 가운데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최근 몇 개월 동안 식량의 시장가격 또한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1.2. 농업발전은 자원과 시장의 이중적 제약

농업이 경지와 수자원 부족의 제약을 받는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1) 1996년부터 2000년까지의 5개년 계획기간.

있다. 과거 20년 동안 중국의 경지면적은 매년 평균 20ha 이상의 속도로 감소하였다. 경제발전과 도시화가 진전됨에 따라 대량의 경지가 전용되었고, 중국정부의 산림복원정책, 초원복원정책 등의 시행으로 인하여, 하천의 중·상류 지역의 경작이 부적절한 경지는 점진적으로 조림사업을 진행하거나 초원으로 복원하였다. 비록 토지정리사업 등을 통하여 약간의 경지를 보충하기는 하였으나, 그러나 경지면적의 전반적인 감소추세는 여전히 지속되었다. 일부 관련기관은, 2030년 중국의 1인당 평균경지면적은 단지 약 0.08ha, 현재의 약 4분의 1로 감소함으로써, 경지자원은 더욱 희소해질 것으로 추정하였다.

수자원 결핍 또한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현재 중국의 1인당 평균 수자원 점유량은 단지 2,300m³로, 세계 평균수준의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세계 13개 1인당 평균수자원이 가장 결핍된 국가 가운데 하나이다. 이후, 경제발전 등의 수요에 따라 농업용수의 비중은 점진적으로 하락할 것이며, 이러한 수자원부족이 중국농업 발전을 제약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다.

중국의 수토자원 분포현황은 아주 불균형적이다. 북방지역은 경지는 넓으나 수자원이 부족하고, 남방지역은 수자원은 풍부하나 경지면적이 협소하다. 북방 15개성은 전국의 60%의 경지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수자원은 단지 전국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으며, 1인당 평균 수자원 점유량은 전국 평균수준의 약 절반에 불과하며, 경지의 단위면적당 수자원 점유량은 전국 평균수준의 약 3분의 1에 불과하다.

근래에 식량 등 주요 농산물가격의 지속적인 침체는 중국농업의 발전을 제약하는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었다. 중국주민의 소비구조, 생활수준, 생활방식이 변화함에 따라 농산물의 품질 및 품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다. 따라서 중국의 농업은 생산구조를 지속적으로 조정하여 갈수록 다양화되고, 향상되는 시장수요를 만족시켜야 하며, 단순히 생산량만을 추구하던

것에서 생산량과 품질, 효율이 결합된 새로운 단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1.3. 국제시장경쟁에 참여

중국의 WTO가입이 임박해지면서 중국농업은 거대한 국제경쟁의 압력에 직면하게 되었다.

첫째, 중국이 WTO에 가입함으로써 중국의 일부 주요 농산물생산은 일정한 정도의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근래에 중국의 주요 농산물(특히 식량)의 생산비는 점진적으로 상승하였다. 밀, 옥수수, 대두, 면화, 유지, 당료 등의 주요 농산물의 국내가격은 이미 국제가격보다 높으며, 이에 추가하여 농산물의 구조가 불합리하고 농산물의 품질이 낮다. 따라서 WTO가입이후, 일부 농산물의 수입압력은 증대할 것이며, 이는 일부 주요 생산지역의 농업생산과 농민수입에 대하여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 현재 중국 농업이 안고 있는 문제와 모순을 해결하는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다. 현재, 중국은 일부 농산물판매의 어려움, 농민수입 증가속도의 감소, 농촌 잉여노동력 해소 등 농업발전 과정 중에 적지 않은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대두되었다. 중국은 WTO에 가입하고 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이러한 문제와 모순은 일정한 정도에 있어서 더욱 두드러질 것이며, 중국농업의 진일보한 발전을 제약하는 중요 요소가 되어질 것이다.

2. 2001년 농산물 파종면적 현황

전국 800여개 현(縣)의 6만 7천 농가를 대상으로 한 표본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1년 전국의 농작물 총 파종면적은 1.56억ha(23.4억무(畝))에 달하여 2000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농작물 품종간의 경작구조는 비교적 크게 조정되었다. 품종별로 살펴보면, 식량의 재배면적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면화, 유지, 당료, 담배, 채소 등의 농작물 재배면적은 증가하였다.

2.1. 식량작물 재배면적 감소

2001년 식량작물의 재배면적은 1.07억ha로, 2000년에 비하여 1.7%가 감소하였다. 이 가운데 곡물의 재배면적은 2.5%가 감소하였는데, 밀은 4.9%, 벼는 1.9%, 옥수수는 0.9%가 감소하였으나, 수수와 조는 6.8%와 0.2%가 증가하였다. 서류는 3.1%가 증가하였으며, 대두는 2.5%가 감소하였다. 식량작물의 재배구조를 살펴보면, 2001년 밀과 벼의 재배면적이 식량작물 총 재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에 비하여 0.8%와 0.1%가 감소하였다.

식량작물의 재배면적이 감소한 주요 원인은 바로 정부의 식량수매정책의 조정과 시장가격의 지속적인 침체이다. 2000년 상반기 식량가격은 근래 들어 가장 낮은 가격으로 하락하였으며, 2000년 하반기 식량가격이 다소 상승하였으나, 밀과 쌀의 가격 상승폭은 그리 높지 않았다. 따라서 이들 품목의 재배효율이 하락하면서, 동북지역과 양자강유역의 밀 재배면적과 남방지역의 조생종 벼 재배면적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2.2. 채소 등 경제작물 재배면적 증가

면화 재배면적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표본조사에 따르면, 2001년 면화의 재배면적은 약 463만ha로 2000년에 비하여 14.9%가 증가하였다. 면화의 연간생산량이 10만톤을 초과한 8개 주요 생산지역의 재배면적이 모두 증가하였는데, 이 가운데 산둥성(山東省), 강소성(江蘇省), 안휘성(安徽省)은 모두 20% 이상 증가하였으며, 하북성(河北省), 하남성(河南省), 호북성(湖北省)은 10% 이상 증가하였으며, 신강자치구(新疆自治區)과 호남성(湖南省) 지역은 7.6%와 2.4%가 증가하였다.

면화 재배면적이 증가한 주요 원인은, 첫째 병충해에 강한 면화 보급확대로 면화의 단위당생산량이 증가함으로써 경제적인 효율이 상승하였기 때문이다. 둘째 면화가격의 상승이다. 2000년 면화의 농가판매가격은 1999년에 비하여 약 30%가 상승하였다. 셋째 방직물 수출의 국제적인 환경이

과거에 비하여 개선되었고, 방직업이 크게 호전되면서 면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유지작물 재배면적은 최근의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유지하였다. 2001년 유지작물 재배면적은 1,568만ha에 달하여 2000년에 비하여 1.6%가 증가하였다. 이 가운데 땅콩의 재배면적은 2.9%가 증가하였다.

당료작물 재배면적 또한 증가하였다. 2001년 상반기 당료작물의 재배면적은 2000년 동기에 비하여 190만무(12.67만ha), 약 10%가 증가하였다. 이 가운데 사탕수수가 6%, 사탕무우가 15% 증가하였다.

채소와 과채류 재배면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근래에 들어와 중국인의 생활수준이 개선되면서, 채소와 과채류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되었으며, 이는 채소와 과채류의 발전을 촉진하였다. 2001년 채소와 과채류의 재배면적은 7.8%와 8.6%가 증가하였다.

한약재는 가격이 높고 경제적인 효율이 높아 재배면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2001년 한약재 재배면적은 2000년에 비하여 30.6%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2001년 담배 재배면적은 약 151ha로 2000년에 비하여 약 7.6%가 감소하였다.

3. 주요 농작물의 생산동향

3.1. 하곡 식량생산량 4.6% 감소

2001년 중국 전역의 하곡 식량생산량은 10,188만톤으로, 2000년에 비하여 약 491만톤이 감소하여 4.6%가 감소하였다. 이 가운데 산둥성(山東省)은 205만톤, 사천성(四川省)은 88만톤, 하북성(河北省)은 79만톤, 강소성(江

蘇省)은 78만톤이 감소하였다. 하곡 식량생산량은 2000년도에 1,170만톤, 약 10%가 감소한데 이어, 2001년도에도 감소함으로써, 1991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이 가운데 재배면적이 133만ha가 감소함으로써 약 475만톤의 하곡 식량생산의 감소를 유발하였는데, 이는 총 감소량의 97%를 차지한다.

특히, 남방지역의 조생종 벼와 북방지역의 봄밀이 보호가격에 의한 정부 수매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2000년 조생종 벼의 재배면적은 약 1,000만무(66.7만ha)가 감소하였으며, 2001년에는 약 900만무(60.03만ha)가 감소하였다. 이밖에 남방 일부지역의 홍수와 사천성(四川省) 지역의 가뭄으로 인하여, 이들 지역의 조생종 벼의 생산량이 크게 감소하였다.

3.2. 축산물, 수산물 생산량 안정적 증가

근래에 중국은 축산물의 품종과 품질구조에 대한 개선작업을 강화하고, 규모화생산을 확대함으로써 축산업의 견실한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01년 상반기까지 중국의 육류 총생산량은 약 3,080만톤에 달하여 2000년 동기에 비하여 약 3% 증가하였다.

중국은 어업의 구조조정을 강화하고 수산양식업의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수산물 생산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2001년 상반기 수산물 생산량은 1,735만톤으로 2000년 동기에 비하여 5.1%가 증가하였다. 이 가운데 수산양식업은 7.2%가 증가하였다.

자료: <http://www.jsagri.gov.cn/forecast/search-content.asp?Otitle=1035>에서
(이수행 soohaeng@krei.re.kr 국제농업연구실)

일본 중국간 세이프가드 발동관련 협의경과

일본 정부가 WTO 협정 및 관련 국내법에 근거하여 4월 23일부터 11월 8일까지 200일간 세이프가드 잠정조치를 발동한 것에 대하여, 중국 정부는 6월 22일부터 일본제 자동차, 휴대전화, 에어컨에 대한 100% 특별관세를 부과하는 보복조치를 단행하였다.

이에 대해 일본은 중국의 보복조치는 일중무역협정을 위반하는 것이며, WTO 협정에도 정당화할 수 없는 행위라고 반박하면서 보복조치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으나, 중국측은 세이프가드 잠정조치의 철회를 요구하는 등 팽팽히 맞서고 있다. 중국의 보복조치 단행이후, 양국간에 2차례의 협의를 가지고, 문제해결에 노력하였지만 결렬되었다. 협의 결과를 정리한다.

1. 일중 1차 협의결과(7월 3일, 4일, 북경)

일중 양국은 7월 3일, 4일 양일간 중국의 보복조치 단행이후 처음으로 북경의 대외무역경제합작부에서 국장급 협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중국측은 기본적 입장으로

- ① 일본과는 互利互惠의 경제협력관계를 중시한다.
- ② 무역문제의 해결은 우호적인 합의에 의해야 한다.
- ③ 3품목의 세이프가드 잠정조치는 수입 증가가 손실의 원인이 아니며, 중국에 대해 차별 조치이기 때문에 즉시 철폐해야 한다고 발언하였다.

이에 대하여 일본측(외무성 田中國장)은

- ① 일중 양자간 경제관계의 발전은 쌍방에 이익이 되며, 또 아시아지역 및 다자간 협상의 일중협력을 위해서도 중시되어야 한다.
- ② 일중 무역에서 발생하는 마찰회피를 위해서는 룰에 부합한 행동이 쌍방에 요구되며, 중국의 특별관세조치는 WTO 룰에도 일중무역협정에도 반하고 있어 즉시 철회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중국의 보복관세에 대해 일본측(경제산업성 佐野국장)은

- ① WTO에 정합하는 3품목의 세이프가드 잠정조치에 대한 보복조치로서 중국이 특별관세조치를 도입한 것은 WTO 협정과 일중무역협정에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며, 극히 유감이다.
- ② WTO 가입을 대비해 중국은 WTO에서 인정하지 않은 일방적인 보복조치를 할 것이 아니라 국제 룰에 근거한 분쟁해결방법을 따라 해결해야 한다면서 특별관세조치의 즉시 철폐를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중국측은 적어도 WTO 미가입인 상태이기 때문에 국내법제에 근거하여 취한 조치라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한편, 파 등 3품목에 관한 세이프가드조치에 대해서 중국측은

- ① 잠정조치로 인해 중국의 농민 등이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으며, 즉시 철폐해야 한다.
- ② 이번 일련의 분쟁의 발단은 일본의 세이프가드 잠정조치이기 때문에 우선 일본 스스로가 해결을 위한 행동을 취해야한다는 발언을 하였다.

이에 대해 일본측(농림성 西藤局長)은

- ① 세이프가드 잠정발동한 요인은 3품목의 수입급증과 일본 농업의 피해에 의한 것이며, 룰에 정합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철폐할 수 없다.
- ② 수입 급증을 억제하고, 안정적인 수입의 틀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며, 이를 위해 논의할 용의가 있다. 그러나 중국측의 ‘정부의 관여에 의한 민간수준에서의 합의’에 의한 해결책으로 그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는 취지를 언급하였지만 그 이상의 진전은 없었다.

이번 국장급 협의에서는 쌍방이 각각의 입장을 고수하였기 때문에 큰 진전은 볼 수 없었지만 무역마찰을 해결하기 위해 조속히 이 문제에 대한 협의를 계속하기로 하였다.

2. 일중 2차 협의결과(9월 24일, 25일, 북경)

일중간 2차 협회가 24일, 25일 양일간의 일정으로 북경에서 열렸다. 세이프가드 잠정발동의 종료를 11월 8일로 앞두고, 이 기간 내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서둘러 개최되었다.

이번 협의는 관민협의이며, 양국의 파, 생표고, 골풀 등의 생산자단체가 참가하고, 정부측은 일본의 농림성, 경제산업성, 재무성, 외무성 등 4성과 중국의 대외무역경제협력부의 담당자가 참가하였다.

이번 협의에서는 품목별로 해결책을 논의하였으며, 이 가운데 일본측은 중국에 대하여 수출수량제한에 대하여 제안하였다. 그러나 중국측은 잠정발동을 철회하지 않는 한 수량제한 논의에는 응하지 않는다고 하는 등 문제해결에 실패하였다.

이번 협의는 관민합동으로 실시되었지만, 민간에서의 논의를 계속하는 것에는 일치하였다. 일본 정부는 향후 중국에 협의를 요청하는 한편, 정식발동을 위해 일본 국내 수속을 본격화시킨다는 방침이다.

표 1 일본·중국간 협의경과

일 자	협의내용
2001년 2월 6일	○ 마츠오카(松岡) 일본 농림성 부장관 및 龍永圖 중국 대외무역경제합작부 부부장과의 회담(동경) - 원활한 무역관계를 확립하기 위해 정보교환을 실시하는 것에 합의
2001년 2월 20일	○ 제1회 일중농림수산물정보교환회(북경)
2001년 3월 15일	○ 松岡 일본 농림성 부장관과 高虎城 중국 대외무역경제합작부 部長助理와 회담(동경)
2001년 3월 15일	○ 제2회 일중농림수산물정보교환회(동경)
2001년 3월 19일	○ 松岡 일본 농림성 부장관과 龍永斗 중국 대외무역경제합작부 副部長과 회담(북경) - 일본측에서 중국측 수출통계에서 수출수량의 범위내에서 수출입을 실시할 것(수출자주규제)을 제안
2001년 3월 29일	○ 중국 대외무역경제합작부에서 재북경 일본대사관에 대해 수출자주규제에는 반대라는 취지회답
2001년 4월 13일	○ 松岡 일본 농림성 부장관과 國井 중국 부장정무관, 龍永圖 대외무역경제합작부 부부장, 高虎城 대외무역경제합작부 部長助理와 회담(북경) - 일본측에서 잠정조치의 발동에 대해서 설명. 문제해결을 위해 양자간 협의 지속에 의견일치
2001년 4월 20일	○ 재북경 일본대사관 荻野 서기관이 蘇斌 대외무역경제합작부 司處員에게 잠정조치 내용 등을 설명
2001년 4월 23일	○ 재북경 일본대사관 宮原 참사관이 孟丹 대외무역경제합작부 부처장에게 협의 개최를 신청

일 자	협약내용
2001년 5월 4일	○ 韓中日 아셈 경제장관회의에서 今野 일본 경제산업심의관이 石廣生 대외무역경제협력부 부장에게 일본측은 협의를 계속할 용의가 있다는 취지 전달
2001년 5월 9일	○ 田中 일본 외무성 경제국장이 방중시에 龍永圖 대외무역경제협력부 부장에 대해 일본은 협회에 응할 용의가 있다는 취지 다시 전달
2001년 5월 11일	○ 仁坂 일본 경제산업성 통상정책국심의관이 張克寧 중국 대외무역경제협력부 副司長에게 ‘잠정조치에 대해서는 보상협상할 필요도 없고 보복도 할 수 없다’는 취지를 설명 - 중국측은 ‘일방적인 태도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보복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는 취지 반론
2001년 5월 17일	○ 原口壽府 일본 대표부대사와 龍永圖 대외무역경제협력부 부장과의 회담에서 중국측이 ‘농업이라는 작은 문제에서의 마찰이 일중관계의 전반적 상황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발언
2001년 6월 4일	○ 파 등 3품목에 관한 일중정보교환회(북경)
2001년 6월 7일	○ 平沼 일본 경제산업장관과 石廣生 대외무역경제협력부 부장의 논의(APEC 무역장관회의(상해)의 워킹런치)에서 平沼 장관이 “논의하여 해결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상호 연락하여 큰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고 싶다”는 취지 발언
2001년 6월 18일	○ 중국정부는 新華社통신을 통해 대외무역경제협력부 대변인 담화에서 일본의 세이프가드 잠정조의 보복조치로서 일본의 자동차, 휴대전화, 에어컨에 대해 즉각 특별관세의 징수를 개시할 것을 결정하였다는 취지를 발표.

일 자	협의내용
2001년 6월 19일	○ 재북경 일본대사관 宮原참사관 등, 張克寧 중국 대외무역경제합작부 副司長 등이 전일의 중국측 보복조치에 관한 발표가 사실임을 확인하는 동시에 사전통보가 없었다는 것에 유감을 표명하고, 이번 결정의 철폐를 신청
2001년 6월 21일	○ 중국 대외무역경제합작부에서 재북경 일본대사관에 대해 '6월 22일부터 일본제 자동차, 휴대전화, 에어컨에 대해 현행 수입세율에 더해 일률적으로 100%의 특별관세를 부과한다'는 것을 통보(즉시 阿南 일본대사가 龍永圖에게 엄중한 항의를 제기)
2001년 6월 22일	○ 재북경 일본대사관이 중국 대외무역경제합작부에 중국측의 보복조치에 관한 협의 및 일본의 과 등 3품목의 잠정조치에 관한 협의를 제기(6월 29일 중국이 수락회답)
2001년 6월 28일	○ WTO 중국가맹작업분과(제네바)에서 일본 대표단이 중국의 특별관세조치 및 과 등 3품목에 관한 세이프가드 잠정조치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설명
2001년 7월 3,4일	○ 중국의 특별관세조치 및 일본의 과 등 3품목에 관한 세이프가드 잠정조치에 대하여 일중 정부간 협의(국장급, 북경)
2001년 9월 24,25일	○ 일중 관민협의(정부·생산자단체, 북경)

자료: 日本 農林水産省 綜合食料局 國際部 國際調整課 자료
(김태곤 taegon@krei.re.kr 국제농업연구실)

일본 발아현미(發芽玄米) 이야기 (1) : 기능성 성분과 건강증진 효과

발아현미는 현미를 발아시키는 과정에서 현미 중의 단백질이 가수분해 효소로 부분적으로 분해되어 유리 아미노산이 증가하는 등의 변화를 통하여 현미나 백미에는 없는 새로운 기능을 발휘한다. 이러한 기능 중에서 알려져 있는 것이 청소년 발육촉진을 비롯하여, 치매증, 비만증, 갱년기 장애 및 생활습관병, 초로기 불면과 불안감, 우울증 등의 예방과 치료에 크게 기대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최근 학교급식에도 발아현미가 도입되는 등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 발아현미가 가지고 있는 기능과 건강증진효과, 발아현미에 의한 기업의 사업화 사례, 그리고 발아현미로서 지역 활성화하는 지자체의 사례 등을 3차례로 나누어 소개한다.

1. 머리말

현미가 신체에 좋다는 것은 모유가 유아에게 최고의 식재라는 것과 같은 정도로 좋은 식재라는 점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백미가 고급감이 있다는 것으로 그 동안 경원되어 온 것이 사실하다.

현미를 포함하여 일반 종자가 발아한다는 것은 종자에 있어서 일대 이벤트이며, 환경조건이 갖추어지고 발아에 필요한 영양성분이 최고 상태인 단계에서 발아를 시작한다. 현미의 경우, 약 32℃의 미지근한 물에서 22시간 정도 담가두면 수분을 약 30% 흡수한 단계에서 현미에 극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배아부분이 싹트기 시작하여 그때까지 잠자고 있던 각종 효소가 일제히 활동하기 시작, 원래 현미에 포함되어 있던 각종 우수한 영양성분의 양이 증가한다.

또, 각종 암의 예방·치료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진 피틴산과 같이 현미에는 각종 미네랄과 결합함으로써 각각 본래의 효능이 발휘되기 어려운 상태로 존재하는 성분이 효소의 작용으로 유리되어 직접 효능이 발휘되는 상태가 된다. 더욱이 치매증 예방과 경감에도 도움이 되는 성분(PEP 저해물질)과 같이 현미 중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성분이 새롭게 생성되는 것도 밝혀지고 있다. 그리고, 발아현미의 애호가로부터 변비치료, 기미·주근깨 해소, 각종 생활습관병 경감 및 회복 등 다양한 체험담이 전해지고 있다.

2. 주요 기능성 성분과 효능

2.1. 가바(γ -아미노낙산)

현미를 약간 발아(0.5-1.0mm)시키는 과정에서 현미 중의 단백질이 가수분해효소로 부분적으로 분해되어 유리아미노산이 증가하는 동시에, 그 안의 글루타민산 탈탄소효소의 작용으로 ‘가바’로 변환된다. 그 양은 백미의 10배, 현미의 약 2.8배에 달한다.

가바의 효율은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우선 비만의 예방과 치료를 들 수 있다. 이것은 가바의 작용으로 간장 및 혈중의 중성지방이 현저히 낮아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행히 다이어트 중에 부족하기 쉬운 마그네슘, 아연, 철 등 각종 미네랄이 발아현미에는 遊離 상태로 존재하고, 흡수율이 대폭 높아져 사람의 본래의 건강한 체형을 유지할 수 있다.

다음으로, 갱년기 장애 및 생활습관병, 초로기 불면, 불안감, 우울, 혈관형 치매증 등의 예방과 치료에 크게 기대된다. 가바는 인간의 몸 안에도 원래 포함되어 뇌신경의 흥분을 억제, 뇌의 혈류를 원활하게 하여 뇌에 산소운반을 증가시켜 뇌세포의 대사를 촉진하고 뇌기능을 활발하게 한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뇌를 비롯해 체내의 가바량이 감소, 상기와 같은 증상을 유발한다고 한다. 생활습관병 중에도, 특히 고혈압, 신장기능 장애, 고지혈증 등이 현저히 나아진 경험자가 속출하고 있다. 또, 숙취 예방과 구강악취 제거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2.2. 식물섬유

식물섬유에는 불용성과 수용성이 있으며, 모두 발아현미에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다. 우선, 불용성 식물섬유는 변을 부드럽게 하며, 부피를 늘려 장의 연동운동을 활발히 하여 변비 해소효과가 있다. 효과가 빠른 사람은 다음날 변통이 있다. 수용성 식물섬유는 소장에서 지방을 흡수하여 비만의 예방·치료를 기대할 수 있다.

2.3. 피틴산, 이노시톨

피틴산은 이노시톨의 수산기 수소가 모두 인산으로 치환된 화합물로서 자연계에서 대부분의 곡류·종실류·두류에 포함되어 있는 물질이며, 발아현미에 특히 풍부하다. 각종 미네랄과 결합한 피틴이라는 단단한 과립상 물질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피틴산과 미네랄 모두 본래의 기능이 발휘되기 어려운 상태이다.

그런데, 현미가 약간 발아하는 단계에서 효소 피타제의 작용으로 피틴산과 미네랄이 유리되어 각각의 기능을 기대할 수 있다. 최근, 미국의 연구에서 피틴산과 이노시톨이 결장암, 간장암, 폐암, 피부암 등에 탁월한 효능이 있고, 더구나 두 물질을 혼용하면 더욱 효과가 있다고 한다. 이노시톨은 지방간, 동맥경화, 콜레스테롤 혈중의 예방과 치료, 유아 성장촉진 등에도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두 물질 모두 미국에서는 이미 영양보조식품으

로 시판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제조 판매되고 있다. 다행히 두 물질 모두 발아현미에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다. 피틴산은 이 외에도 요로결석 예방과 치료, 신장결석 예방과 치료, 齒垢형성 억제효과 등이 알려져 있다. 또, 뇌의 만복중추를 자극하여 식욕 억제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2.4. 坑酸化 물질

γ-오리자놀은 토리텔펜 알콜의 페루라산 에스테르이며, 옛날부터 두통, 자율신경계 실조증, 갱년기 장애, 무월경, 난소기능 장애 등의 예방과 치료 분야에 사용되어 왔다. 페루라산은 혈당치 및 콜레스테롤치의 개선에 효과가 있으며, 당 대사에 직접적으로 관련하고 있어 당뇨병 치료에 기대할 수 있다.

토코토리에놀은 동맥경화를 억제하는 이로운 콜레스테롤은 떨어트리지 않고 유해 콜레스테롤만 떨어트리는 작용이 있으며, 또 유방암 예방과 치료효과도 알려지고 있다.

2.5. 미네랄

현미를 약간 발아시키는 것으로 다이어트 시에 부족하기 쉬운 마그네슘, 칼륨, 칼슘, 아연, 철 등의 흡수율이 대폭 좋아진다. 아연, 철, 마그네슘에 대해 살펴본다.

아연은 옛날부터 생식기능의 저하 및 동맥경화를 예방·치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당뇨병에 걸리면 아연이 대량으로 노중에 배설되고, 스트레스나 식품첨가물의 과다 섭취도 아연 흡수를 방해한다. 또, 최근 셀러리맨들 사이에서는 기억력저하 증상군이 있다고 한다. 젊은데도 건망증이 현저해지는 경향이 있는데 원래 기억력을 유지하는 기능은 대뇌피질에 있는 海馬의 작용이 약화되어, 기억력 저하, 면역력 감퇴, 정력 감퇴로 이어지게 된다.

비타민 C의 섭취가 부족하면 아연 농도도 저하하여, 당뇨병 환자에게는 비타민 C와 아연을 함께 보급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아연부족이 원인으로 젊은 주부 층에서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것이 미각장애이다. 아연이 부족하면 미각을 담당하는 기능이 저하되어 본래의 맛을 알 수 없게 되며, 극단적으로 맛이 싱겁다고 느끼게 된다.

마그네슘 부족도 지나칠 수 없다. 미국에서 흉악 범죄를 일으킨 어린이의 모발 분석에서 모두 마그네슘이 부족했다는 충격적인 보고가 최근 발표되었다. 마그네슘 부족은 심장병을 유발하는 것 외에도, 우울증, 부정맥에 깊은 관계가 있다고 한다. 또, 철이 부족하면 사춘기 不定愁訴와의 관련성도 높다고 한다.

2.6. PEP 저해물질

사람의 뇌에는 아미노산이 10개 전후 결합한 펩티드가 많이 존재하고 있어 뇌의 활동을 정상으로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구성아미노산이 일부 L-체에서 D-체로 변화하여 오래되면 활성이 떨어진다. 보통은 거기에 존재하는 효소 프로틸엔드펩티타제(PEP)가 활동하여 새로이 같은 펩티드가 생산되어 펩티드의 밸런스가 유지된다.

그런데, 알츠하이마형 치매증 환자의 뇌에는 PEP의 양이 다량 존재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그 여분 PEP가 오래된 펩티드를 필요 이상으로 절단하여 뇌기능을 정상으로 유지시키는 펩티드의 양을 감소시켜 뇌기능 교란을 초래한다고 한다. 이 PEP의 활성을 억제하면, 알츠하이마형 치매증의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다.

식물성 천연소재, 그 중에서 선조 대대 주식으로 해 온 쌀에 PEP 저해물질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연구한 결과 백미와 현미 중에는 찾아 볼 수 없었던 PEP 저해기능이 현미를 조금 발아시키면 현저하게 발현되는 것이 발견되었다.

3. 학교급식 도입확대

현미를 발아시키는 것에 의해 필수아미노산(20 종류의 아미노산 가운데 음식물 형태로 섭취 할 필요가 있는 아미노산) 가운데, 특히 리진의 양이 증가한다. 리진은 청소년의 발육에 특히 필요한 아미노산이며, 종래에는 급식용 빵에 리진을 약 4% 첨가한 빵을 사용하여 섭취하고 있었다. 최근 발아현미를 학교급식으로 하고 있는 학교가 급증하고 있는데 상당히 이상적인 현상이다. 임신부, 이유식, 사춘기, 샐러리맨, 갱년기, 초로기, 숙년기를 통틀어 남녀를 불문하고 발아현미를 주식으로 한 생활의 질을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

자료: 「週刊農林」第1791號(2001. 6. 25)에서
(김태곤 taegon@krei.re.kr 국제농업연구실)

일본 발아현미(發芽玄米) 이야기 (2) : 발아현미의 개발과 사업화

1. 발아현미 연구시작

발아현미를 개발하여 이것을 판매방법에 대하여 농림성에 상담하였다. 식량청 가공식품과 담당자로부터 식품종합연구소 곡류특성연구실을 소개 받아 여러 연구자들의 지도를 받았다. 그리고 영양학자로부터도 도움을 받아 현미의 발아처리와 발아시킨 현미의 영양변화 연구를 할 수 있었다.

연구 지원면에서도 식량청에서 ‘시험연구용 무상교부미’를, 농림성 종합 식료국에서 ‘뉴푸드 크리에이션 기술연구조합’을 통해서 연구비를 지원받아 발아현미에 관한 기초실용화연구를 추진할 수 있었다.

당시, 회사(도마社)에는 연구를 하는 사람도 설비도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정부 기관, 대학, 나가노현 식품공업시험장, 그리고 뜻을 같이 하는 민간기업 등과 공동연구를 실시, 지금까지 발아현미에 관해 14건의 특허를 국내, 국외에 출원할 수 있었다.

발아현미는 발아에 의한 영양변화와 물리변화에 의해 가공원료로도 우수한 소재가 되고 있다. 발아현미를 이용한 각종 가공식품도 개발되어 현재는 발아현미의 일대 상품군을 형성하고 있다.

2. 발아현미의 중요성

‘현미는 신체에 좋은 식재’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 신체에 좋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것을 적극적으로 먹어보자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다. 현미는 취사하기 어려우며, 취사하여도 딱딱하고, 맛이 좋지 않고, 소화가 잘 되지 않는 4가지 큰 결점이 지적되고 있다. 그런데 현미를 0.5mm에서 1.0mm 정도 발아시키면 보통의 전기밥솥에서 잘 익고, 부드럽고 단맛이 있으면서 무엇보다도 소화가 잘된다.

결국 현미가 가지고 있던 4가지 결점을 하나 하나 없앤 것이 발아현미라는 것이다. 발아현미를 먹어 본 사람들은 “변비가 나왔다”, “혈압이 안정되었다”, “감기에 잘 걸리지 않는다”, “냉증이 치료되었다”, 등등 수많은 효과를 듣게 되었다. 이것으로 새로운 쌀 시대의 막을 여는 예감과 쌀의 소비확대에 큰 계기를 가져다 줄 것으로 확신하였다.

3. 무세미와 발아현미

희고 맛이 좋으면 그것이 ‘밥’이라는 쌀에 대한 생각이 ‘쌀’의 백미화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속화하였다. 그리고, 최근 ‘무세미’라는 겨 부분이 완전히 제거된 결국 ‘백미’가 등장하였다. 환경에도 좋고 밥짓기에도 편리하다는 점에서 급속히 소비자들이 늘고 있는 ‘무세미’의 등장으로 사람들은 겨를 쌀에서 일절 취하지 않게 되었다.

결국, ‘무세미’는 백미이고, 그리고 겨를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먹는 현미식이 ‘발아현미’이다. 쌀의 역사상 이 2가지 미식의 출발이 21세기의 초기에 데뷔하여, 각각이 또는 2가지가 협조하여 새로운 쌀 문화를

형성해나가야 할 시기이다.

1998년도 농림성 ‘식료수급표’에 의한 쌀 소비량은 1인 1년간 824만 1,000톤이다. 이것을 현미로 환산하면 9백 9만 6,000톤이다. 85만 5,000톤이 겨로 제거된 셈이다. 임시 계산상이기는 하지만 겨 가운데에는 단백질 11만 2,716톤, 철분 9.4톤, 마그네슘 7,286톤, 비타민 B1, B2, 나이아신 합계 345.2톤 등 귀중한 영양자원이 포함되어 있다. 물론 모두 폐기되었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이것이 쌀에 붙어있는 상태로 사람들이 섭취하였다고 한다면 더욱 우수한 식재라고 생각된다.

4. 발아현미를 지역에서 세계로

현재 전국 각지에서 쌀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가노현 우에다시(上田市)에 있는 도마社를 시찰하러 온다. 제조 노하우 문제가 있어 충분히 시찰할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열심히 보고간다. 발아현미에 대한 관심을 지역에서 느낄 수 있다. 도마社로서는 가능한 한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금년 2월 일본 특허청 주최로 한일 특허기술교류페어가 한국 서울시에서 개최되었다. 도마社도 발아현미 기술로 출품하였는데 전시장에 온 많은 관계자는 발아현미에 대해 관심이 높았다. 그 중에서 발아현미 제조의 사업화, 판매화 등을 희망하는 기업과 단체가 다수 있었다.

또, 5월 중국 하북성에 있는 하북농업대학(河北省 保定市 소재, 1902년 창립, 중국을 대표하는 농업대학 중 하나, 학생수 1만 2,000명)에서 발아현미 강좌가 개설되어 이 대학의 객원교수인 茅原 紘(일본 信州大學 교수)가 발아현미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있다. 일본에서 발아현미를 사업화한 기업으로서 발아현미의 사업화 과정에 대해 출석한 교수와 학생들의 큰 반향

을 불러 새로운 중일 우호의 계기로서 발아현미가 활약하는 날이 올 것으로 확신하였다.

지역에서는 발아현미를 급식으로 도입하는 학교가 많아지고 있다. 나가노현 내에서만 시험도입, 본격도입을 포함해서 50개 학교가 넘고 있다. 호텔식당 도입, 레스토랑 도입, 택배급식 도입, 대형편의점의 발아현미 주먹밥 도입 등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5. 발아현미는 건전한 주식의 부활

일본에서 米食의 역사는 2천년 혹은 6천년이라고 한다. 긴 역사 속에서 실질적으로 정미한 쌀을 먹게 된 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이다. 그때까지는 정미하였다고 해도 상당량의 겨가 붙어있어 현실적으로 배아가 있는 상태에서 먹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 상태의 쌀을 일반 가정에서는 전날 밤에 물에 담가 두었다 다음날 아침 취사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결국 밤사이 쌀은 수분을 흡수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냥 배아가 붙어있는 쌀이 아니고 흡수와 동시에 효소활동이 시작되어 영양분해가 진행된 쌀, 결국 발아현미와 비슷한 상태로 먹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것으로 보아 발아현미식은 21세기를 앞두고 태어난 전혀 새로운 미식이 아니라 옛날부터 계속 먹어오던 미식의 진화된 형태이다. 결국 ‘발아현미는 올바른 미식의 부활’인 셈이다.

일본인의 연간 1인당 쌀 소비량은 많을 때는 120kg 정도이었다. 그것이 최근에는 약 절반인 60kg 정도로 감소하고 있다. 1960년경부터 감소하기 시작한 쌀 소비량에 역행하여 생활습관병이 증가하고 있다. 후생성 ‘인구동태통계’에 의하면 인구 10만명당 사망률을 악성신생물로 보면 1950년에 77.4명이었던 것이 1998년에는 226.7명, 실제로 2.9배 증가하였다.

쌀 소비량과 암(악성신생물)과의 사이에 역학적으로 보아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어떤지는 향후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적어도 1960년 당시의 쌀 소비량이나 식습관을 계속하여 왔다면 암에 의한 사망이 현재와 같이 증가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발아현미의 연구를 통해 본 주식인 미식의 모습, 만약 1960년 이후의 식생활의 대변화 가운데 주식의 급속한 백미화가 암으로 사망하는 사람의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면 20세기 미식의 변천은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은 하나의 반성거리이다. 우리들의 자손이 ‘세계의 米食人들은 20세기에는 쌀을 백미상태로 먹었다’라고 과거 역사의 일면을 반성할 날이 올지도 모른다. 하루라도 빨리 ‘발아현미로 주식혁명’이 일본에서, 그리고 세계에서 일어날 것을 기원한다.

자료: 「週刊農林」第1791號(2001. 6. 25)에서
(김태곤 taegon@krei.re.kr 국제농업연구실)

일본 발아현미(發芽玄米) 이야기 (3) : 발아현미로 지역활성화

쌀 가격하락으로 인한 쌀 농가의 생산의욕 저하, 생산조정, 후계자 부족 등 지금 수도작은 3중고에 있다. 그러나 발아현미는 60kg당 5만 7,000엔에 판매할 수 있다. 일본 카가와현(香川縣) 미노정(三野町)은 정내에서 생산된 쌀을 1팩 120g을 130엔의 소매가로 ‘神農米’라는 브랜드로 판매하고 있다. 발아현미는 지금 미노정에서는 지역활성화의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발아현미는 현미에서 발아시켜 상품화한 것이다. 극히 간단한 원리이다.

1. 발아현미로 고령자 건강증진

미노정은 인구 1만명이 채 안되는 순수 농촌이다. 농가 1,100호, 경지면 적은 논과 밭을 합쳐도 약 700ha이다. 미노정은 극히 일반적인 서일본의 전원풍경이다. 노인 의료비가 매년 1억엔씩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정 전체의 건강을 회복할 방법을 검토하던 중에 생각해 낸 것이 발아현미이다. 정내에서 수확한 쌀을 그대로 판매해도 60kg 1가마니에 1만 4,000~1만 5,000엔이다.

이 가격도 하락하고 있는 경향이다. 이것을 발아현미로 만들어 신농미로 팔면 정내도 경제적으로 윤택하고 공장의 건설에 따른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매년 상승하는 의료비를 어떻게 해서든 경감해야 한다는 상황에서 발아현미 공장건설로 발전한 것이다.

그런데 미노정은 북쪽은 세토(瀬戸) 内海에 접하여 기후는 온난하고 연간 평균기온은 15도, 적설은 거의 없다. 일조시간이 많은 세토내해 기후이다. 400미터의 산이 정내에서 가장 높을 정도로 완만한 지형이다. 정 중앙을 흐르는 다카세가와(高瀬川)의 하류에 주로 논이 있다. 여기에 적합한 작물은 쌀, 포도, 채소 등이다. 최근에는 생산조정정책으로 오이, 양상추, 브로콜리 등의 하우스 재배가 늘어나며, 젊은 농가들 사이에서는 꽃 재배가 왕성하다. 이러한 기후풍토에 은혜 입은 미노정에서 조차 노인 의료비에 골치를 앓고 있다. “아직 미노정은 적은 편이다. 홋카이도 의료비의 절반이다”고 한다.

2. 고령자 건강으로 의료비 경감

1990년부터 2000년까지 노인의료비의 수급자 추이를 보면, 1990년부터 매년 상승경향이었던 의료비는 2000년에는 감소경향이다. 미노정의 건강운동이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미노정은 노인홈을 자랑한다. 노인들이 젊은 스태프들의 간호를 받으면서 생활하고 있다. 밝은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

현재, 발아현미가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은 ‘밥하기 어렵다, 먹기 어렵다, 냄새가 있다, 소화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는 현미식의 난점을 극복하였기 때문이다. 현미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이세신궁(伊勢神官)에 발아현미를 먹었다는 자료가 남아 있다. 이세신궁은 2천년에 걸친 神田의 도작을 계속하고있는 도작에 관한 역사적인 장소이다.

현미에서 수분과 온도를 주어 싹을 틔운 것을 고대의 사람들은 먹고 있었다. 남은 것은 건조하여 보존식으로 하였다. 발아현미가 근대적인 공장에서 생산, 유통되어 소비자에게 호평을 얻고 있는 것은 역사적으로 2천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 갈 수 있다.

주요 성분과 효능은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 있다. 이노시톨(지방간 및 동맥경화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최근 유방암 및 대장암 등 항암물질로서 주목되고 있다), 페루라산(활성효소를 제외한 멜라닌색소의 생성을 억제한다)도 포함되어 있다. 발아현미를 상용하면 여성에게 많은 변비 해소에도 도움이 되며 혈압을 내리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현대의 일본인은 3명 중 1명이 암으로 사망하고 있다. 과학적으로 만들어진 항암물질의 부작용이 우려되는 가운데 항암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발아현미를 식사로 이용하는 것으로 일상생활에서 암을 막는 것이 기대된다. 쌀에 포함되어 있는 이노시톨과 피틴산 등 다양한 건강에 대한 효과는 세계적으로 과거 30년간에 걸쳐 검증되고 동물실험에서도 밝혀졌다. 향후 인간에 대한 효과가 주목된다. 세계에서 쌀을 먹고 있는 민족은 암환자가 적다는 학회의 보고도 있다.

미노정에서 노인의료비를 보면, 겨우 1만명이 채 안 되는 정의 노인 의료비는 일반회계의 약 50%에 상당한다. 일반회계는 35억엔 규모이지만 노인 의료비는 그 중에서 절반을 차지한다. 게다가 매년 1억엔씩 늘어나고 있다. 이대로 노인 의료비가 커지면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은 뻔하다. 고령화사회에서는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 만성질환이 늘어나 점점 의료비가 증가해 간다.

정 행정에서 의료비 경감은 긴급 과제였다. 미노정에 한해서만이 아니라 일본 전체에도 마찬가지이다.정이 건설한 노인홈도 모두 노인이 들어 갈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어떻게 하면 병에 걸리지 않는 상황을 만들까, 그것이 각 市町村의 공통된 과제이다.

‘병에 걸리면 의사에게 치료받으면 된다’는 사고방식은 통하지 않는다. 질병은 일상생활에서 스스로 만들어 내는 것이다. 식생활을 비롯해 라이프스타일을 고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것이다. 여기에서 町民의 식생활을

바꾸는 것에서 대책이 시작되었다.

3. 공장건설로 고용창출

양호한 기후의 미노정에서 과수나 채소가 생산된다고는 해도 쌀 생산은 역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생산조정정책은 전술한 것처럼 농가의 도작에 대한 정열을 잃게 했다. 도작을 포기하면 보조금이 나오기 때문에 농가의 쌀생산 정열을 감퇴시켰다. 보조금도 최근 여러 가지 제약으로 미래에까지 영원히 나오는 것은 아니다. 쌀 농사를 지어도 수확하여 농협에 내놓은 후에는 그 쌀이 어떻게 유통되고 소비자에게 전해지는지 알 수 없는 것이 농가의 실태였다.

쌀 자유화정책은 자신의 책임으로 쌀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자유가 있다고는 해도 영세한 농가에게는 어려운 것이다. 거기서 정에서 발아현미 공장을 만들어 생산한 것을 판매하면 도작농가의 노동의욕도 증가한다. 현재, 미노정에서는 대형 건강식품회사와 일체가 되어 1일 15톤의 발아현미를 생산하고 있다. 미노정의 학교에서는 센터의 영양사 및 학교 선생님들이 발아현미를 도입하는 시험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농장을 가지고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는 급식지도로 일본의 전통적인 먹거리를 제시하고, 쌀을 중심으로 한 급식에 학생들의 관심을 모으는 것은 중요시하고 있다.

정이 일체가 되어 추진하고 있는 발아현미를 교재로 하여, 건강유지를 위해 다수의 식품에 영양균형을 고려하고, 자신의 몸에 적합한 식품을 먹을 수 있도록 한다. 지금부터 식생활을 스스로 창출해 내도록 하게 하는 아이들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방침에서 서서히 발아현미를 도입하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다. 조리실습에서는 보통의 정미와 발아현미를 섞은 밥과 된장국을 만들어 아이들에게 실제로 발아현미를 맛보게 하고 있다. 초등학교에서 농업교육시간에 생명과 생명의 연계를 배우는 농장실습을 실

시하고, 스스로가 생산한 쌀이 정내의 공장에서 발아현미인 ‘神農米’ 브랜드로 출하되고 있는 것도 체험하고 있다.

현재 일본 열도의 여기 저기서 발아현미 제조가 이루어지고 있다. 카가와현(香川縣)의 작은 정에서 발아현미를 둘러싼 동향이 다양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어 크게 주목할만하다.

자료: 「週刊農林」 第1791號(2001. 6. 25)에서
(김태곤 taegon@krei.re.kr 국제농업연구실)

일본의 월간 채소산업 정보(2001. 9)

1. 채소의 산지개혁계획

1.1. 채소구조개혁

수입채소의 급증에 대응하여 국제경쟁력이 있는 채소산지를 육성하기 위해 농림수산성은 채소관련 시책의 획기적인 개혁을 단행하는 ‘채소산업 구조개혁대책’을 발표하였다. 현재 각 산지에서 지역의 실정에 근거한 ‘산지개혁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농림수산성은 산지가 수립한 계획의 실현을 위해 시책을 집중하고 있다.

1.2. 산지개혁계획의 대상채소

세이프가드 잠정품목인 파, 세이프가드 감시대상품목인 양파, 토마토, 피망, 가지 및 마늘을 생산하고 있는 산지는 가능한 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하며, 기타 채소에 대해서도 필요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1.3. 대상 산지개혁계획의 책정주체

산지개혁계획을 수립하는 주체는 농협, 생산법인, 영농집단으로 한다.

1.4. 산지개혁계획의 인정

도도부현 지사는 수립주체가 제출된 산지개혁계획을 인정한다.

1.5. 산지개혁계획의 내용

- ① 산지에서 추진전략유형 선택
- ② 전략유형으로 추진하는 구체적인 수치목표
- ③ 목표달성 후를 위한 추진내용
- ④ 기타 산지의 구조개혁에 필요한 사항

1.6. 정부의 지원

정부는 보조사업의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하는 관점에서 산지개혁계획을 수립한 산지를 우선으로 채택한다.

2. 파 등 3품목의 세이프가드 잠정조치

4월 23일부터 발동되고 있는 파 등 3품목의 세이프가드 잠정조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일정 수량(관세할당수량)에 대해서는 종래의 관세율을 그대로 적용하지만 이것을 초과하는 수량에 대해서는 국내외 가격차를 축소하기 위해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
- ② 조치기간은 200일간(11월 8일까지)으로 한다.

지난 9월 4일, 농림수산성, 경제산업성, 재무성은 합동으로 파, 생표고 및 골풀에 대해 세이프가드조사에서 표명된 의견 및 再의견에 대해 공표하였다.

잠정조치의 기한은 11월 8일이기 때문에 원만한 문제해결을 위해 주요 수출국인 중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또, 세이프가드조치의 개요, 잠정발동 이유, 발동 후의 이유, 채소산업 구조개혁대책 등에 대한 자료인 ‘과 등 3품목의 세이프가드에 대해서’를 발표하여, 이것으로 이해를 구하고 있다.

표 1 세이프가드 발동관계

일 정	주 요 내 용
2000년 12월 22일	세이프가드에 관한 정부조사 개시
2001년 3월 22일	정부의 실태조사 발표
4월 10일	세이프가드잠정조치를 결정(각의보고)
4월 17일	세이프가드발동에 관한 정령을 각의결정
4월 23일	세이프가드잠정조치를 발동(정령 시행)
4월 27일	이해관계자의 의견표명 기한
5월 2일	제1차 관세할당발급(과 2,692톤)
5월 31일	이해관계자의 의견표명 등에 대해 공표
6월 27일	제2차 관세할당발급(과 2,691톤)
9월 4일	제출된 의견 및 이에 대해 再의견에 대해 공표
11월 8일	세이프가드 잠정조치 기한

3. 신선채소의 수입동향

2000년 신선채소 수입량은 926천톤으로 과거 5년간 약 1.5배 증가하였다. 2001년 1~8월의 신선채소의 수입량은 676천톤으로 전년동기대비 112%, 2001년 8월의 수입량은 58천톤으로 전년동기대비 124%이다.

표 2 주요 신선채소 수입량

단위 : 천톤

	1996	1997	1998	1999	2000
신선채소계	630	573	740	885	926
양파	184	175	205	223	262
호박	144	136	129	154	133
우엉	-	-	-	72	82
브로콜리	74	72	75	91	79
생강	31	33	30	34	48
당근·무청	30	13	34	50	44
파 등	9	9	18	30	42
메론	27	24	29	39	34
마늘	24	25	27	26	29
아스파라거스	22	21	20	24	25
피망 등	4	6	9	11	16
토마토	1	1	4	9	13
가지	0	0	1	2	2

자료: 재무성 「무역통계」

주: 우엉은 1999년부터 별도 분류, 파는 「식물검역통계」에 의함

표 3 신선채소 수입상황(속보)

단위: 톤, %

	8월	전년동기대비	1~8월	전년동기대비
토마토	218	96	4,948	60
양파	18,573	414	182,785	114
마늘	3,614	104	20,976	103
파	1,832	49	22,423	102
브로콜리	7,197	101	52,688	101
결구양상추	254	103	3,175	224
기타양상추	318	119	2,886	197
당근 및 순무	4,791	151	39,947	128
우엉	6,693	89	44,828	100
기타 근채류	11	49	1,309	236
오이 및 가킨	107	222	4,285	175
아스파라거스	807	110	12,540	82
가지	0	0	1,107	80
샐러리	530	111	4,980	114
버섯	28	70	350	98
피망 등	1,817	115	14,377	138
시금치	23		63	336
호박	145	67	111,422	105
생강	4,125	88	38,178	107
수박	51	17	1,656	67
메론	2,694	67	22,837	93
딸기	822	101	3,198	108
기타 신선채소	208	76	7,823	107
합 계	57,906	124	675,883	112

자료: 재무성 「무역통계」

주: 8월 자료는 속보치이며, 확정치는 10월말 공표예정

4. 식물검역 상황

최근 주요 신선채소의 수입식물 검사실적속보는 다음과 같다.

표 4 식물 검역 상황

단위: 톤

		2001년8월 20일~26일	2001년8월 27일~9월2일	2001년9월 3일~9일	2001년9월 10일~16일
과	검사수량	246	276	285	251
	합격수량	178	213	248	205
	불합격수량	68	63	37	45
양과	검사수량	4,728	4,027	3,026	2,901
	합격수량	3,235	3,293	2,924	2,564
	불합격수량	1,493	734	102	336
토마토	검사수량	30	25	23	18
	합격수량	30	19	23	18
	불합격수량	0	6	0	0
방울토마토	검사수량	13	50	97	140
	합격수량	13	50	97	136
	불합격수량	0	0	0	4
피망	검사수량	362	359	370	307
	합격수량	275	302	315	226
	불합격수량	87	57	55	80

자료: 농림수산성 식물방역소 조사

주: (1) 주요국(수입검사실적이 많은 국가)에서의 과, 양과, 토마토, 방울토마토 및 피망의 수입식물 검사실적 속보치임.

(2) 이 수량은 수입식물검사를 통해 집계한 수량이며, 세관통관통계 수치와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음.

(3) 「불합격」은 수입검사 결과, 검역유해동식물 등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불합격 되었으며, 살충처리 등 소기의 검역조치를 통하여 이 후 합격된 것이 포함되어 있음.

5. 채소의 가격 · 생산동향

5.1. 전체

최근 채소가격은 3월 이후의 양호한 기후조건으로 전반적으로 출하량이 늘어나 대체로 평년수준의 가격으로 추이되고 있다. 8월에 들어, 한발 영향이 우려되었지만, 그 후에 강우 등으로 물 부족은 해소되고 있어 계속 평년수준의 가격으로 추이하고 있다.

5.2. 엽경채류

당근, 배추, 양상추는 양호한 기후로 최근은 평년을 하회하는 가격수준이다. 한편, 무, 시금치도 입하가 순조로운 영향으로 거의 평년수준의 가격이다.

또, 파는 4월 중순까지는 수입급증의 영향으로 평년을 대폭 하회하는 수준이 계속되고 있지만, 4월 하순이후는 평년수준으로 추이하고 있다. 8월 중순부터 9월 하순에 걸친 가격은 평년을 약간 상회하고 있지만, 이것은 한발 및 태풍에 의한 일시적인 것이며, 향후는 안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5.3. 과채류

오이, 가지, 토마토, 피망은 입하가 순조롭기 때문에 대체로 평년수준의 가격대이다. 한편, 가지는 관동산의 생육 지연으로 평년을 상회하는 가격수준이다.

표 5 신선채소 도매가격 동향

	2001년 7월 중순			2001년 8월 상중순			2001년 9월 상중순		
	가격 (엔/kg)	전년대비 (%)	평년대비 (%)	가격 (엔/kg)	전년대비 (%)	평년대비 (엔/kg)	가격 (엔/kg)	전년대비 (%)	평년대비 (%)
무	83	92	78	99	98	97	114	127	107
당근	110	96	65	152	98	99	86	86	63
배추	83	93	102	90	117	87	84	86	84
양배추	88	102	104	71	115	91	70	113	79
시금치	565	90	84	663	83	87	726	98	100
파	232	133	69	380	184	141	377	141	138
양상추	106	68	70	155	70	81	232	124	123
오이	166	87	63	237	100	102	279	84	107
가지	180	83	57	195	131	107	290	130	123
토마토	244	92	84	281	106	126	260	105	95
피망	197	106	65	417	175	158	218	112	91
감자	138	141	111	135	130	111	84	76	80
토란	261	73	67	229	76	73	244	102	97
양파	81	169	99	97	194	109	69	115	82
지정채소계	137	99	79	167	111	104	159	107	98

자료: 도쿄청과물정보센터 「도쿄중앙도매시장의 산지별 입하수량 및 가격」

주: '평년대비'란 과거 5년간 순별가격 평균치와 당해 순 가격과의 비율임.

6. 생활습관과 성인병에 대해

일본에서 생활습관병의 증대가 문제가 되고 있다. 채소 소비는 건강하고 균형적인 식생활을 유지하는 데 불가결한 것이며, 생활습관병을 방지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암 발생에 대해서 채소 섭취가 방지 효과를 가지는 것은 세계적으로 4,500건의 연구논문을 분석한 결과 의학적으로도 증명되고 있다.

資料: <http://www.maff.go.jp/work/01013seisan/hyousi.htm>에서
(김상현 ksh3615@krei.re.kr 국제농업연구실)

EU 집행위원회 GMO 안전성 연구에 관한 원탁회의 시작

EU 집행위원회 연구위원(Research Commissioner) Philippe Busquin의 주도로 GMO 안전성 연구에 관한 원탁회의(round table)가 10월 9일에 시작되었다². 이 원탁회의에서는 유럽의 생물안전성 관련 분야 연구자들과 소비자 단체, 회원국 행정부 대표, 산업계 대표 등 여러 이해당사자들이 모여 토론하게 되므로, GMO의 안전한 이용에 대한 가장 최근까지의 지식이 쌓이게 될 것이다. 원탁회의는 또한 이해당사자들로 하여금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연구총국(Directorate General for Research)이 선정한 ‘유럽 연구분야(European Research Area)’에서의 연구결과에 대해 토론하고 새로운 연구사항을 찾아내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리고 EU 집행위원회는 10월 9일 현재 지난 15년간 정책자금을 지원하여 수행했던 생물안전성 관련 연구 결과들에 대한 보고서를 출간했다. 이 보고서에는 81개의 연구 프로젝트 결과가 요약되어 있다. 이 프로젝트들에 할애된 EU의 재정지원은 총 7000만 Euro에 달하며, 여기에는 유럽 전역으로부터 동원된 400개의 과학연구팀이 참여했다. 통상적인 위험평가 절차를 준수하는 가운데 그토록 많이 개발되고 판매된 유전자 변형 식물 또는 그것들을 원료로 한 생산품들에 관한 그 연구들에서는, 관행적인 식물 육

2) EU 집행위원회의 원탁회의는 사회적 이슈들에 대해 해당 분야의 총국(Directorate General)을 책임지는 위원들이 회원국들을 순회하며 사회 각 분야의 이해당사자들을 만나 토론을 벌이는 것을 말한다. 이 원탁회의는 EU 집행위원회의 공식적 결정이나 정책입안이 이루어지기 전에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로서 중요한 기능을 한다.

종이 지니는 통상적인 불확실성 수준을 넘어서는 인체의 건강이나 환경에 대한 어떤 새로운 위험도 발견되지 않았다.

EU 집행위원회 연구총국의 견해에 따르면, 참으로 더욱 정밀한 기술을 이용하고 더욱 엄격한 규제를 통해 감독한다면, GMO를 관행적인 식물이나 식품보다 더욱 안전하게 이용할 수도 있다. 그리고 아직은 드러난 바 없지만, 예측하지 못한 환경적 영향이 존재한다면, 이는 기존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재빠르게 추적되어야 할 것이다.

원탁회의의 형식을 빌어 GMO의 안전성에 관한 과학적 연구결과들을 공개하고 그것들을 토대로 공적 토론을 전개해 가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모습은, 사회적 이슈가 되는 농업 관련 문제들에 대한 합리적이고 지속적인 토론의 장이 아쉬운 우리에게 좋은 귀감이 된다. 여기에서는 GMO 안전성 연구에 대한 원탁회의를 시작하는 EU 연구총국 위원 Philippe Busquin의 연설 내용을 간략히 소개한다.

‘특정 GMO의 옹호자들이 보이는 열광적인 과장과 그 반대자들이 보이는 급진주의 사이에, 위험평가와 신중한 관리에 대한 건전하고 측정가능한 과학적 논증에 기초한 합리적인 타협의 여지를 찾아내야 한다는 긴급한 요구가 존재한다. 이는 또한 과학과 사회를 화해시키는 일이며, 과학자와 관심을 지닌 공중들을 한데 불러모아 연구 결과에 대해 토론하도록 하며, 유럽 전역에 걸쳐 협조적인 방식으로 장래의 연구 의제에 대한 윤곽을 공동으로 그려내는 일이기도 하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어떤 중대한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좋은 소식이 언제나 공적이고 정치적인 논쟁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GMO의 안전성에 대한 원탁회의는 GMO의 편익이나 위험에 관한 연구 결과들에 대한 지속적인 토론의 장을 만듦으로써 GMO 논쟁에 있어서의 과학의 목소리를 제고시키려 한다. 원탁회의는 또한 광범위하게 분포하는

유럽의 이해당사자들에게 EU가 지원한 연구와 국가적 활동들의 결과를 보여주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원탁회의는 모든 측면에 존재하는 편견들을 극복하고 의견의 심각한 극단적 대립을 피하고자 한다.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는 구조화된 토론을 통해, 모든 참여자들이 서로의 관점과 가치에 대해 더욱 잘 정보를 얻게 함으로써 대화를 촉진시킬 것이다.

첫 번째 원탁회의는 특히 한 종류의 유전자 변형 작물, 즉 생물공학 처리된 옥수수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할 것이다. 생물공학 처리된 옥수수는 유럽에서 재배가 허가된(1997년 1월 23일) 최초의 유전자 변형 작물이다.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생물공학 처리된 옥수수의 해충 저항성을 모니터링하고 인체 건강이나 환경에 대한 모든 잠재적인 부작용을 평가하는 프로그램을 초기 단계부터 운용해왔다.

지난 25년간 생물안전성 연구는 현대 생물공학기술의 결과물들을 발전시키고 확산시키는데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 보다 정밀한 방법이 가져올 편익은 분명해지고 있으며, 추측되는 위험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으며 지속적으로 수행될 것이다.

자료: EU Commission, RAPID에서
(김정섭 jngspkim@terrami.org 지역아카데미)

EU 원산지표시 관련 사법적 적용 논쟁

지난 10월 9일 유럽사법재판소의 보조판사(Advocate General) Léger는 실제 “Parmigiano Reggiano”의 특성을 지니지 않는 “Parmesan” 치즈가 이탈리아에서 생산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그는 ‘이탈리아의 “Parmesan” 치즈가 유럽 연합의 다른 회원국들에서 독점적인 지리적 인지도를 가지고 팔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Parmesan”이라는 단어를 표시에 사용하는 것은 EU 규정에 따른 ‘원산지 표시 보호제(Protected Designation of Origin)’가 적용되고 있는 “Parmigiano Reggiano” 치즈 생산지에 대한 지리적 근접성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U의 식품 품질관리 정책의 골간을 이루는 것은 ‘원산지표시 보호제(Protected Designation of Origin, PDO)’, ‘지리적 표시 보호제(Protected Geographical Indication, PGI)’, ‘전통 특산물 인증제(Traditional Speciality Guaranteed, TSG)’ 등 세 가지 제도이다.

이러한 제도들의 목적은, 첫째 다양한 농업생산을 촉진하고, 둘째로 오용이나 모방으로부터 생산품명을 보호하며, 마지막으로 생산품의 특성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를 돕기 위한 것이다. 이번 Léger 보조판사의 제안은 EU가 실시하고 있는 PDO의 사법적 적용에 대한 구체적인 논쟁거리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EU 규정에 의하면 농산물과 식품의 특성이 그 지리적 기원과 특별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경우에 유럽연합 수준에서의 PGI나 PDO 시스템에 등록하

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한 등록의 목적은 소비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데에 있다. “Parmigiano Reggiano” 치즈는 1996년 이후로 PDO에 등록되어 있는 상태이다.

Bigi씨가 법률적 대표자로 되어 있는 이탈리아 Reggio Emilia 지역의 Nuova Castelli SpA는 이탈리아 국내에서 저온살균처리된 건조분말 형태의 치즈를 생산해왔다. 이 치즈는 여러 지리적 기원을 가지는 치즈들을 혼합하여 생산되고 있으며, 이탈리아 밖에서 특히 프랑스에서 독점적으로 판매되고 있다. 이 생산품은 “Parmesan”이라는 단어가 현저하게 표기된 상표가 부착되어 판매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Parmigiano Reggiano” 치즈가 전혀 함유되어 있지 않다. 1999년에 Parmigiano Reggiano 치즈 협동조합의 주도하에 그러한 사례가 적발되었으며, 불공정 거래 및 표시위반 판매의 혐의로 형사재판 절차가 진행중이다.

Bigi씨는 변론을 통해서 ‘해당 치즈가 수출을 목적으로 이탈리아가 아닌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들에 독점적으로 판매될 경우에 “Parmesan”이라 불리우는 치즈의 이탈리아 내 생산을 금지할 수 있다는 이탈리아 국내 법규와는 달리, EU 규정은 생산을 허용하고 있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이탈리아 Parma 지방법원은 해당 유럽연합 규정에 대한 해석을 묻는 질의서를 유럽사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독일, 오스트리아, 그리스, 이탈리아의 4개국 정부와 Parmigiano Reggiano 치즈 협동조합 또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유럽연합의 규정은 등록된 생산품 명뿐만 아니라 그것을 번역한 명칭에 대해서도 보호하도록 되어 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 정부가 제출한 의견과는 모순되게, 유럽 사법재판소의 보조판사는 “Parmesan”이라는 명사는 고립되어 사용될 때 이탈리아어 “Parmigiano”에 대한 여러 나라 말의 신뢰할만한 번역이라고 판단하였다³.

3) 유럽 사법재판소 보조판사의 의견은 법정에서의 구속력을 갖지는 않는다. 하지만

그의 관점에 따르면, “Parmesan”이라는 단어는 원산지 표시 보호제에 등록되어 있는 상품과 그 명칭(즉 “Parmigiano Reggiano”)에 부가되어 있는 역사적, 문화적, 법률적, 경제적 현실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 치즈의 명성으로 인해, “Parmigiano”라는 용어는 생산품 자체를 지칭하는 것으로 간주하기에 충분하며, “Parmigiano Reggiano”라는 원산지 표시 보호의 필수적 구성요소라는 것이다.

보조판사의 의견에 따르면 그러한 이유로 인해 원산지 표시 보호제에 등록된 “Parmigiano Reggiano”에 적용되는 보호조치는 그 번역어 “Parmesan”에도 확대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EU 규정은 ‘과도기적 예외 조치’를 두고 있다. 생산품의 진짜 기원이 표시에 명료하게 나타나 있다면, PDO에 의해 보호받는 특성을 지니지 않은 생산품에 대해서 등록된 명칭을 생산자가 제한된 기간 동안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예외 조치의 의도는 생산자에게 조정기간을 줌으로써 손실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자유경쟁을 보장하려는 데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조판사는 ‘PDO의 적용을 받는 유럽연합 회원국은 자국 영토 내에서 제조된 상품에 대해 PDO에 등록되어 있지는 않더라도 등록된 생산품과 비교 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의 생산품이 국외로의 독점적 판매를 의도하여 유통되는 경우에 대해 그러한 표시의 상업적 이용을 금할 수 있다’는 관점을 견지하고 있다. 실제로 Castelli의 사례에서 보듯이, “Parmigiano Reggiano”의 PDO 등록이 적용되는 회원국인 이탈리아에서는 해당 치즈가 수출을 목적으로 생산된다면 통상적인 단어인 “Parmesan”을 상표에 표기하여 생산하는 것이 금지될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의 사례에 대해서는, EU 규정이 채택되기 아주 오래 전부터

완전히 독립적인 지위를 보장받은 상태에서 보조판사에게 할당된 사례에 대한 법률적 해석을 제출하는 것은, 그의 역할 중 하나이다.

이탈리아 법규 하에서 유죄판결 및 구체적인 처벌조항이 존재했었다. 따라서 Castelli와 같은 사례에 대해서는 특별한 예외조치를 두거나 조정기간을 허용할 이유가 없다. 보조판사는 PDO에 등록되어 있는 상품에 대해 다른 생산자가 PDO의 생산지에 대한 지리적 근접성을 이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때 소비자 보호와 공정 경쟁 보장에 대한 필요성이 충족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자료: EU Commission, RAPID에서
(김정섭 jngspkim@terrami.org 지역아카데미)

EU의 식품 안전성 교육 캠페인

1997년 EU 집행위원회는 소비자 대상의 유로바로미터(Eurobarometer)⁴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이 연구에서는 유럽 소비자들 중 67.9%가 식품의 안전성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집행위원회는 1998년과 1999년, 2년에 걸쳐 EU 15개 회원국들에서 식품안전성에 관한 정보 캠페인을 수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유로바로미터 연구를 통해 특히 소비자들이 GMOs 표시, 추적 가능성에 대해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음이 드러났다. 따라서 집행위원회는 이러한 주제들에 대해 집중적인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당시의 캠페인 목록은 무제한적인 것이었다. 따라서 각 회원국들의 캠페인 담당자들은 각기 다른 주제들에 대해 캠페인을 전개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다. 어떤 나라에서는 소비자들에게 식품 위생(주방 청결, 식품 냉장, 요리 온도, 특정 유형의 육류 요리 시간, 초음파 오븐의 적절한 사용 등)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는가 하면, 다른 나라들에서는 식품 안전성 관련 기존 법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균형잡힌 식품섭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의 냄새가 식품안전성과는 무관할 수도 있음을 인식시키는 캠페인을 전개하기도 했다.

EU 집행위원회는 또한 캠페인을 통해 소비자 단체, 회원국 정부, 전문가

4) 유로바로미터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사회적 이슈가 되는 문제들에 대해 전문 연구기관에 위탁하여 유럽시민들의 여론을 조사하는 프로그램이다.

집단들 사이의 지속적인 협조를 촉진하고 식품 안전성에 대한 공공적 토론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국민들에게 조언과 도움을 지원하는데 있어, 회원국마다 존재하는 소비자 단체들이 수행했던 역할들을 조명하기도 하였다.

식품 안전성 문제에 대해 시민들이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으므로, EU 집행위원회는 1998-1999년간 수행된 홍보 캠페인의 결과를 토대로 2000년-2001년, 두 해에 걸쳐 재차 캠페인을 벌이기로 결정했다. 이 두 번째 캠페인은 이전의 것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다른 면모를 보이고 있다. 한편으로는 캠페인 담당자들이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더욱 교육적인 캠페인이 되도록 하는 수단들을 도입해야만 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담당자들이 캠페인의 목표 집단들을 더욱 정확하게 설정했다는 점이다. 캠페인의 이러한 새로운 양상 배후에는 두 가지 생각이 자리잡고 있다. 첫째, 정보를 제공하는 일이 가치가 있는 일이라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또 다른 단계, 즉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둘째, 캠페인 예산을 전체 인구들에게 널리 사용하는 대신에 구체적인 목표 집단들에 확실하게 초점을 맞출 때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이다.

식품안전성 문제가 유럽의 농업정책과 관련하여 대단히 중요한 화두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그들이 겪었던 공공부문의 시민홍보 캠페인 경험은 아직은 공공부문이 앞장서서 식품안전성 문제를 소비자 대중들에게 홍보하고 공적 토론을 활성화시키지 못하고 있는 우리에게 좋은 참고가 될 것이다. 여기에서는 최근 종료된 2000-2001년도 EU 식품안전성 교육캠페인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들을 소개한다.

1. 캠페인의 목표

- (1) 목표집단을 설정하여 식품 안전성에 대한 일반적 원칙과 간단한 실

천사항들을 교육한다.

- (2) 최소한일지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새로운 매체, 특히 상호작용적인 커뮤니케이션을 가능케 하는 인터넷 사이트나 CD-ROM을 활용한다.
- (3) 소비자 단체들이 식품 안전성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장려한다.
- (4) 이해당사자들, 즉 소비자 단체, 정부당국, 전문 단체들 간의 식품 안전성에 대한 지속적인 대화를 유도한다.
- (5) 대중매체들이 평상시에, 그리고 특히 캠페인 기간 동안에 식품 안전성 문제에 관심을 갖도록 자극한다.

2. 캠페인의 주제

목표 집단들이 식품 안전성 문제와 관련하여 일반적인 원칙과 간단한 실천사항들에 대해 숙지하도록 교육했다. 그들이 식품 안전성문제에 연관된 모두(유럽연합의 제도들, 국가 정부, 생산자, 유통업자 등)의 책임을 잘 인식하도록 교육했다. 그들에게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누구를 접촉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이 식품 안전성에 관한 주요 법규들에 대해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친숙해지도록 했다.

개별 회원국가들에서 가능하거나 필요한 경우에 한해 더욱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주제들, 가령 GMOs, 호르몬, 항생물질, 첨가제, 잔유물 등에 대한 주제들이 다루어지기도 했다. 이러한 주제들 역시 시민들을 교육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취해진 것이다.

3. 파트너쉽

캠페인의 메시지가 믿을만하고 효율적으로 확산되도록 하기 위해서, 담

당자들은 소비자 단체, 회원국 정부(특히 보건, 소비자 보호, 교육 등에 책임이 있는 당국), 식품 생산자 및 유통업자 단체, 대중매체 등과 협조하도록 했다. 회원국에 따라 사정이 허락하는 경우, 그리고 캠페인 메시지의 확산을 촉진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담당자들이 공공 혹은 민간 부문의 기업들과의 합의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4. 국가적 요구에 대한 응답

비록 캠페인 메시지의 중심적 내용들은 모든 회원국들에 해당되는 것이었지만, 각 회원국별로 소비자들에게 특별히 중요한 관심사들을 다루도록 허용했다. 그리고 정보를 확산시키고 교육활동을 조직하는 일과 관련하여 회원국마다 다른 기회와 제약의 상황에 의해, 회원국 정부의 요구에 따라 캠페인이 조정되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소비자들이 이 모든 활동들이 유럽연합이 주도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도록 캠페인을 전개했다.

5. 회원국 조정 집단

EU 회원국별 담당자들은 캠페인이 적절하게 조직되고 회원국 정부의 요구에 따를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으로 조정 집단을 두어 책임을 지도록 하였다. 담당자들은 그가 수행하고 있는 활동들을 설명하고 상황을 보고하고 기타의 가능한 캠페인 수단들에 대해 의논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조정 집단 구성원들과 접촉하였다. 각 조정 집단은 EU 집행위원회 대표자, 유럽의회 정보사무국 직원, 회원국 정부 당국의 대표자, 캠페인에 참여하는 소비자 단체나 전문 단체 대표자들로 구성되었다.

6. 캠페인 일정

캠페인 담당자들과 EU의 계약은 2000년 10-11월 사이에 체결되었다. 캠페인 업무는 2001년 6월말에 종료되었다.

7. 예산

2000-2001년도 캠페인에 할당된 예산은 410만 Euro였다. 이 예산은 회원국별로 할당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EU 식품안전성 캠페인 회원국별 예산 할당액

단위: Euro

국가	할당액	국가	할당액
오스트리아	145,000	이탈리아	560,000
벨기에	165,000	룩셈부르크	45,000
덴마크	105,000	포르투갈	165,000
핀란드	105,000	스페인	420,000
프랑스	560,000	스웨덴	155,000
그리스	165,000	네덜란드	205,000
독일	640,000	영국	560,000
아일랜드	105,000	유럽연합 조정비용	300,000

주: 위와 같이 예산이 배정되기는 하였으나 더러는 실제 예산에 약간 못 미치게 집행된 국가들도 있음.

자료: EU Commission, DG for Health and Consumer Protection에서
(김정섭 jngspkim@terrami.org 지역아카데미)

영국 돈육수출 재개

지난 10월 10일 EU의 ‘상설 수의과학 위원회(the Standing Veterinary Committee, SVC)’는 영국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처음으로 엄격한 조건 하에 영국 이외의 지역으로 돼지고기를 수출하는 것을 허용하는 EU 집행위원회의 제안서에 서명했다.

이러한 조치가 적용되는 해당 지역은 영국 북부의 섬들로, 대부분 영국 북서부에 위치한 스코틀랜드 지방이다. 북 아일랜드 지역에서의 수출 제한 조치는 이미 지난 6월 7일에 해제된 바 있다. 이번 제안은 아직은 EU 집행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10월 22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EU 집행위원회는 매우 엄격한 조건 하에서 구제역이 확산될 수 없다고 확신되는 지역에서 특정 지역으로의 수출은 허용하는 지역화 정책을 꾸준히 추구해왔다. 이러한 조치들은 영국, 아일랜드, 네덜란드, 프랑스에서의 구제역 발병과정 중에 취해졌으며, 동시에 아일랜드, 네덜란드, 프랑스, 그리고 영국의 대부분 지역에서 구제역 제거를 성취했다. 오늘 EU 집행위원회는 회원국들의 지지 속에서 영국에서의 몇몇 지역들을 추가적으로 제한 조치로부터 풀어 놓기로 결정했다. 이 지역들은 구제역으로부터 자유로운 지역이라고 판단된 곳들이다. 이러한 제한 해제 조치는 돼지고기에만 한한 것이며, 그것도 영국에서의 구제역 발병의 심각성이라는 관점에서 경계심이 고양되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였다”라고, EU 집행위원회 보건 및 소비자 총국 위원 David Byrne이 워싱턴에서의 연설을 통해 밝혔다.

그는 미국의 농정비서관 Ann Veneman을 만나 구제역으로 인한 미국의 네덜란드, 아일랜드, 프랑스, 영국으로부터의 돼지고기 수입제한 조치에 대해 대화를 나누기로 되어 있었다. 3주전 ‘국제동물보건사무소(the International Office for Animal Health, OIE)’는 네덜란드, 아일랜드, 프랑스를 구제역 청정국가로 인정한 바 있다. David Bryne은, “이 소식은 질병과 지속적으로 싸워오는 동안 크게 고생했던 농민들에게 희망이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상설 수의과학 위원회(SVC) 회의에서, 영국 대표자는 영국의 여러 지역에서의 구제역 상황에 대한 방대하고 완벽한 개괄을 제공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영국에서 구제역 발병 건수는 지난 몇 달 동안 꾸준히 감소해왔다. 8월에는 Northumberland와 Cumbria 지방에서만 발병사례가 관찰되었으며, 9월 30일 이후에는 이들 두 지역에서도 새로운 발병건수가 보고되지 않았다. 영국에서 구제역은 대부분 양이나 소에서만 존재하며, 돼지는 이제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2001년 2월의 구제역 발병이 시작된 이후로, 어떤 지역은 전혀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3개월 이상을 발병 없는 상태로 유지해왔다. 따라서 엄격한 조건 하에서 이들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정 육류의 수출은 허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상설 수의과학 위원회의 회원국 대표들은 엄격한 조건 하에서 다음 지역에 위치한 경영체로부터 생산되는 돼지의 신선육 수송을 허용하는 EU 집행위원회의 제안서에 동의했다. 허용된 지역은 다음과 같다.

- (1) 북아일랜드 지역 : Shetland Islands, Orkney Islands, Western Isles
- (2) 스코틀랜드 지역 : 스코틀랜드 경계와 Dumfries, Galloway를 제외한 모든 카운티
- (3) 영국 동부 지역 카운티 : Humbersides, Lincolnshire, Norfolk, Suffolk, Cambridgeshire, Nottinghamshire, Bedfordshire, Hertfordshire, Buckinghamshire, Surrey, East Sussex, West Sussex, Hampshire, Dorset, Isle of Wight
- (4) 영국 서부 지역 카운티 : Gwynedd(Anglesey 섬 제외), Clwyd

이들 지역으로부터의 수출을 재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건들은 다음과 같다.

- (1) 육류의 수출은 자격이 인정되는 영국의 수의 관련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 카운티에서 구제역 발병이 더 이상 없었어야 한다.
- (3) 도축장으로 수송되기 30일 이전까지 해당 가축은 최소 30일 동안 구제역이 발생한 적이 없는 최소 10km의 반경 이내 범위 내에 위치한 자격이 인정되는 수의당국의 감독 하에 있어야 한다.
- (4) 가축은 수출이 허용되지 않은 동물과 분리된 상태로 도축장에 도착한 지 24시간 이내에 도축되어야 한다.
- (5) 도축장 공식 수의사의 검사를 통해 살아있는 가축 또는 도축 후의 가축에서 구제역 예후가 없다는 확인을 받아야 한다.
- (6) 신선육은 영국 밖의 지역으로 수송될 자격을 부여받지 못한 육류와는 분리된 상태로 저장되고, 운송되어야 하며, 명료하게 그 내용이 표시되어야 한다.
- (7) 상기 언급한 조건들에 대한 준수 여부를 감독하는 것은 EU의 다른 회원국들과 EU 집행위원회와 커뮤니케이션할 중앙 수의당국의 감독 하에 있는 자격 있는 수의당국이어야 한다.

상설 수의과학 위원회는 또한 특정 조건하에서 산화과정을 포함한 숙성을 거친 특정 유제품들을 영국 밖으로 수출하는 것을 허용하고, 냉동상태의 소 정액에서 돼지 정액에 이르는 상품들에 대한 기존의 제한조치들을 동일한 조건 하에서 완화하는 것에 대해 허용하는 데에 동의했다. 이번 제안이 채택되고 나면, 12월 31일까지 적용될 것이며, 그 동안 상설 수의과학 위원회가 정기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자료: EU Commission, RAPID에서
(김정섭 jngspkim@terrami.org 지역아카데미)



국제기구 논의동향

WTO 농업협상 9월회의 논의동향

EU의 WTO 농업협상에 대한 접근방법

WTO 농업협상 9월회의 논의동향

1. WTO 농업위원회 특별회의 제3차 비공식회의

1.1. 회의개요

2000년 3월부터 시작된 새로운 WTO 농업협상은 금년 3월까지 각국의 협상제안서 제출과 WTO에 제출한 제안서 검토를 목적으로 한 제1단계 협상을 마무리하고, 여기서 확정된 제 2단계 농업협상계획에 따라 금년 5월부터 19개 협상의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오고 있다. 금번 9월 24일부터 26일까지 개최된 WTO 농업협상 제3차 비공식 회의는 농촌개발, 지리적 표시, 허용보조, 블루박스, 특별긴급관세 등 5개 의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 졌다.

제2단계 협상에서 논의가 예정된 19개 협상의제 중 14개 협상의제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었으며, 환경, 개도국에 대한 무역특혜조치, 식량원조, 소비자 정보와 표시, 부문별자유화 등 나머지 5개 협상의제는 12월 초순경에 개최되는 회의를 통해 논의를 전개함으로써 계획된 협상의제에 대한 검토를 마칠 계획이다. 남아 있는 협상의제를 논의하기 위한 제4차 WTO 농업위원회 특별회의 비공식회의는 환경, 무역특혜, 식량원조, 소비자정보 표시, 분야별 자유화를 의제로 12월 3~5일간 개최될 예정이다. 향후 WTO 농업협상은 계획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나 오는 11월 카타르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 4차 각료회의를 통한 뉴라운드 출범 문제가 맞물려 있어 독자적인 협상진전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2. 협상의제별 주요국 제안내용

1.2.1 농촌개발

(1) 일본

농촌지역에서 농업은 가장 많은 토지를 이용할 뿐만 아니라 농촌지역사 사회 유지를 위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며, 특히 전 세계적으로 하루에 1달러 미만으로 생활하고 있는 12억명의 빈민들의 75%가량이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들 지역에서의 소득보장과 농촌개발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농업 이외의 고용기회가 제한적인 지역에 있어서는 사회적 정치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농업생산 활동의 유지와 발전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또한 개도국에서 농촌개발은 빈곤경감 및 경제발전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중요한 정책과제이며, 선진국에 있어서도 국토의 균형발전과 환경유지 등 많은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다만 농촌개발은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농업활동을 통한 농촌지역에서 일정수준의 인구유지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관심사항이며, UR 이후 농업은 자체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농촌사회의 유지와 활력증진에 보다 더 필수적 요소가 되었기 때문에 각국이 농촌개발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무역 규범을 설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각국의 농촌지역 유지와 다양한 농업공존을 허용하는 다자간 무역규칙이 설정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2) 노르웨이

대부분의 국가에서 농촌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활력유지는 중요한 정책목표의 하나이며, 특히 농업경제에 크게 의존하는 개도국에게 있어서 농촌개발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또한 상대적으로 농촌인구와 농촌경

제가 전체 인구와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비록 개도국에 비해 낮은 선진국의 경우도 농촌지역의 활력 유지는 국토의 균형발전, 전통문화유산의 보전 등의 여러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정책 목표이다. 노르웨이와 같이 인구밀도가 낮고 생산여건이 불리하며, 원거리 낙후지역에서의 대체 고용이 부족한 국가의 경우에는 농업생산활동의 유지와 농촌지역의 활력 증진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기 때문에 차기 협상에서는 무역왜곡을 최소화하면서 농촌지역의 활력유지 보장과 같은 비교역적 관심사항이 충분히 고려되고 인정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노르웨이는 현행 허용보조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차기 협상은 농촌개발과 농촌지역의 활력 유지를 위한 정책조치에 신축성을 부여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특히 낙후지역지원, 농촌 고용측면에서 높은 생산비용을 보장할 수 있도록 농업생산과 연계된 조치의 허용 및 기후적으로 농업생산유형이 제한적인 경우 주요 작물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3) 쿠바, 도미니카 공화국 등 개도국

개도국에게 있어서 농업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특히 빈곤경감, 농촌고용, 농촌소득 유지, 식량안보, 농촌고용 등의 측면에서 농촌개발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특히 개도국의 농촌거주민 생활보호, 국내생산 능력 배양, 낮은 소득과 자원빈국으로부터 수출되는 물품에 대한 시장접근개선, 영세농의 수익증진, 순수입 개도국의 농촌개발을 위한 적절한 조치 등이 차기 협상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 이들 국가가 제안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업에 의존하는 인구비율이 높은 개도국 농촌주민의 생활보호를 위해 개도국 우대조치로서 적절한 관세양허수준 유지, 농촌빈곤층에 의해 생산되고 있는 주요 작물의 관세조정, 수입급증으로부터 소규모 영세농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보호장치 마련, 농산물 덤핑수출의 금지와 이에 대응할 적절한 국경조치 허용 등을 요구하였다. 둘째, 개도국의 국내생산력 증진을 위해 빈곤경감과 농촌개발측면에서 수행되는 정책의 감축면제, 보조된 생산물이 개도국의 국내생산 축소나 제3국 시장에서 시장점유율 잠식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허용, 개도국 식량

안보와 농촌개발, 생산력 증진 조치를 허용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셋째, 개도국의 영세농으로부터 생산 및 수출되는 품목에 대한 시장접근 확대를 위해 선진국의 무세/무쿼터 제공, 고율관세 및 누진관세체제 철폐와 동식물 검역 등을 이유로 한 비관세장벽 철폐를 주장하였다. 넷째, 개도국 영세농의 수익 증진을 위해 일부 선진국의 무역 왜곡적 국내보조와 수출보조의 철폐를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순수입개도국의 농촌개발과 관련된 적절한 고려를 위해 순수입개도국에 대한 기술 및 재정지원의 확대를 요구하였다.

1.2.2. 허용보조

(1) EU

허용보조정책은 기존의 가격지지정책을 투명하고 덜 무역 왜곡적인 정책으로의 전환을 유도하였으며, 선후진국 모두가 중요하고 다양한 사회적 목표의 달성에 기여하도록 함으로써 농업개혁과정을 원활히 수행토록 해왔다. 농업생산활동은 가능한 낮은 비용으로 농산물 생산이라는 측면뿐만 아니라 농촌경관보전과 유지, 환경보호, 농촌지역의 활력 유지 등 다양한 역할 수행을 가능케 하는데, 현행 허용보조정책은 이러한 목표달성에 상당한 기여를 해왔기 때문에 현행 허용보조의 골격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EU는 허용보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안하였다. 첫째, 허용보조조치는 무역왜곡이 없거나 최소일 것, 둘째 동물복지와 같이 새로이 부각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수행을 충분히 반영할 것, 그리고 개도국에 대한 우대조치로서 식량안보와 특히 빈곤경감을 위한 농촌지역활성화 정책이 감축약속에서 면제될 것 등을 제안하였다.

(2) 일본

현행 국내보조 규율의 기본골격을 유지하되 현행 허용대상 직접지불 정책의 경직성과 정책 수행상의 어려움을 지적하면서 변화하는 생산 및 시장상황을 고려한 기준기간 변경, 직접지불의 생산요인과의 연계허용 등 허용보조조치의 확대적용을 제안하였다. 특히 현행 소득 안정망 정책이 30%

이상의 소득 손실농가를 대상으로 오직 소득 손실의 70%까지만을 허용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안하였다. 첫째, 소득의 30%미만 손실에 대해서도 보상이 가능토록 최소 소득 손실 기준을 하향시킬 것, 둘째, 최대 보상 기준을 소득 손실액의 70%이상으로 상향조정할 것, 마지막으로 자연재해로부터 구제조치도 현행 30%이상 손실기준에서 하향 조정해야 함을 제안하였다.

(3) 아르헨티나

허용대상 정책은 무역 및 생산왜곡 효과가 없거나 최소한이라는 전제에서 국내보조 감축약속이행으로부터 면제되었기 때문에 차기 협상은 보호주의적 목적이나 다른 회원국의 교역조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현행 허용대상정책의 재평가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아르헨티나가 제안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허용대상정책에 대한 보다 정확하고 세밀한 수량적 정의가 필요하며(예: 최소한의 무역 및 생산효과), 둘째, 생산 중립적 직접지불정책, 소득보험, 소득 안정망 정책 등은 생산자 소득에 영향을 주며, 이로 인해 생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감축 면제 정책에서 제외하고 감축대상으로 전환해야 할 것을 제안하였다. 다만 개도국들은 빈곤계층과 소규모 영농농가, 생산력 저하 생산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정책을 유지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셋째, 은퇴, 자원이동 등 탈농 지원과 관련된 구조조정 기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넷째, 자연재해 지원, 투자보조, 환경정책, 지역지원 등에 대한 통보와 기준 재검토가 요구되며, 다섯째, 일반서비스, 식량안보를 위한 공공비축, 국내식량원조에 대한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며, 여섯째, 현행 허용보조에 상한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하였다. 다만 개도국에게는 우대차원에서 보조 상한설정 의무로부터 면제가 있어야 하며, 개도국의 비교역적 관심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보다 많은 개도국 우대조치 노력이 강구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4) 스리랑카, 쿠바, 도미니카 공화국 등 9개국

허용대상 정책은 무역 및 생산왜곡 효과가 없거나 최소한이어야 하며,

이외에도 소비자가 아닌 정부에 의한 지출과 생산자 가격지지 형태가 아닐 것이라는 전제에서 국내보조 감축약속이행으로부터 면제되었다. 그러나 실제 약속이행기간 동안 보여진 양상은 무역 왜곡적이었으며 무제한적으로 지불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현행 허용보조 정책의 문제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적하였다. 우선 대규모 허용보조를 받아 생산된 농작물은 기본적으로 생산농가의 소득 향상을 통한 생산 투입재에 대한 투자 증대 등의 연쇄작용을 통해 과잉생산을 부추긴다. 이에 따라 국내 보조된 선진국의 농작물은 가격경쟁력을 보유하게되고 개도국 시장으로 진입함으로써 개도국 생산농가의 생산을 위축시키거나 개도국의 대 선진국 농산물 수출을 제약해 왔다는 것이다. 또한 현행 허용대상보조는 풍부한 재정자원이 요구되는 등 여러 이유로 인해 소수의 선진국에게만 사용되어 왔으며, 기본적으로 허용보조는 선진국 관심위주로 형성되었으며 개도국에게는 무용지물이라는 것이다. 단지 허용대상 정책은 감축이 요구되는 정책을 단순히 허용대상으로 전환시키도록 유도해 왔을 뿐만 아니라 일부 허용대상정책은 무역왜곡이 상당히 존재하고 일부 허용대상정책 기준은 모호하여 잘못된 사용을 유도하였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허용대상보조는 평화조항에 의해 상계조치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기 때문에 허용보조를 지급하지 않은 국가에 비해 불공정한 특혜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현행 허용보조에 대한 이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도국의 입장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안하였다. 첫째, 허용보조의 기준강화, 무역 왜곡적 허용보조를 감축 대상화, 일정 기준의 명확화, 개도국이 처한 현실과 상황을 고려한 허용대상정책의 재설정이 필요하다. 둘째, 개도국의 국내생산과 생산력 유지를 위한 지원, 식량작물과 식량안보 작물에 대한 지원, 생산품의 품질 향상을 위한 보조, 생산 및 수출 다양화를 위한 지원을 허용해야 한다. 셋째, 모든 감축대상 국내보조를 일반보조(*general subsidies*)로 일원화 하되 개도국 박스는 새롭게 형성하여 개도국의 국내보조에 특별대우를 제

공한다. 넷째, 일반보조 총액을 농업생산의 일정률 이내에서 지원토록 하고(농업생산액의 10%) 그 이상의 보조에 대해서는 선진국에 대해 상계조치 가능토록 하며, 개도국에게는 평화조항을 적용해야 한다. 다섯째, 허용대상보조의 기준을 명확화 하여 생산 및 무역 중립적인 경우에만 허용되 개도국에게는 특별대우를 제공하고 개도국의 식량안보와 경제발전 등 비교역적 관심사항을 고려하기 위한 특별대우 차원에서의 신축성 부여, 빈곤경감, 농촌개발, 식량안보 등을 위한 생산증대조치를 허용할 것을 제안하였다(세계평균 이하의 생산력 보유 작물에 대한 생산 증대조치를 허용화). 마지막으로 평화조항을 철폐하되 다만 개도국의 식량안보, 농촌개발, 농촌고용, 국내생산력 증대 등에 대해서는 개도국우대조치 차원에서 존치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5) 나미비아

현행 허용보조 정책의 기준에 대한 투명성 증대와 정확성 확보를 위해 수량화와 명확한 규범 설정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허용대상정책이 단지 농산물 무역왜곡을 위한 또 다른 강구 조치로 사용되지 않도록 적절한 통보, 투명성 확보, 규율화가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왜냐하면 일부 허용대상 정책들에 대한 기준과 규정이 모호성하여 아직도 가격 왜곡적이고 소비자 부담적인 조치가 허용대상으로 분류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개도국의 개발전략을 위한 국내보조 신축성부여와 농업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보조비율이 마이너스이거나 거의 제로 수준인 개도국을 감안한 최소허용보조수준 및 AMS 규정의 재개정을 제안하였다.

1.2.3. 블루박스

(1) 케언즈 그룹

블루박스정책이 기타 감축대상정책에 비해 덜 왜곡적이라고 주장되나 정책 속성상 생산 왜곡적이며, 정책기준, 통보, 소수회원국만의 사용 등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다고 지적하였다. 지난 UR 협상에서 감축면제된 블루박스정책에 대한 보조상한설정, 감축대상으로 전환과 향후 주어진 계획에

따라 철폐해 나갈 것을 제안하였다.

한편 케언즈그룹은 국내보조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다음 사항을 제안하였다. 우선 회원국간 보조수준의 형평성과 블루박스를 포함한 모든 무역 및 생산 왜곡적 보조의 감축을 위해 공식 접근법을 사용할 것, 둘째 이행기간 초년도에 50% 이상의 상당한 초기감축이 필요(downpayment)하고 모든 농산물에 대한 무역 및 생산왜곡 감축을 위해 품목별 접근방식 채택할 것, 셋째, 무역 및 생산왜곡이 없거나 최소화 되도록 감축에서 면제되는 허용보조정책의 기준 재검토와 강화가 필요하며, 모든 감축대상정책의 사용을 최대한 자제하고 감축해 나갈 것을 제안하였다. 다만 농업 및 농촌개발, 식량안보 등 개도국이 처한 상황을 적절히 고려하면서 국내보조의 신축성 및 우대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식량안보, 농촌개발 빈곤퇴치를 위한 허용대상조항 확대, 개도국을 위한 상이한 공식접근과 감축률 적용, 개도국의 농업 및 농촌개발, 식량안보를 위한 기술지원과 국제협력 제공을 제안하였다.

1.2.4. 특별긴급관세(SSG)

(1) 스위스

특별긴급관세제도는 지난 UR 협상의 관세화 과정에서 출현한 중요한 요소로서 개혁기간동안 유지되어야 하나 현행 SSG제도 운영경험에 비추어 다음과 같은 사항의 개선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첫째, 현재 시장상황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기준참조 기간을 재설정 할 것, 둘째, SSG 발동을 위해 수입측면 뿐만 아니라 국내 생산 및 가격상황도 고려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현행 SSG 관세 계산방식의 단순화 등 가격 및 물량 발동기준의 수정을 제안하였다.

(2) 노르웨이

농업개혁이 진행되고 관세가 감축됨에 따라 특별긴급관세제도의 필요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으며, 또한 농산물 시장의 내재적 특성을 고려할 때,

급격한 수입증가나 가격하락에 대응하기 위한 SSG제도의 유지가 요구된다. 다만 지난 UR 협상의 관세화 과정에서 창출된 SSG제도는 당시 소수의 회원국만이 사용권한을 보유함으로써 많은 개도국과 시장경제 이행국의 경우 SSG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SSG 사용권한을 보유하지 못한 회원국에게 SSG를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을 제안하였다.

(3) 일본

부패성과 계절성이 있는 농산물에 대해 SSG와 별도의 새로운 SG기준과 절차 수립을 요구하면서 자동적인 구제조치 방안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신규 SG 대상품목으로 모든 가공되지 않은 원료 농산물과 냉동, 절단 등 단순가공물까지 포함할 것을 제안하였다. 새로운 SG 발동기준으로 세 가지 유형을 제시하면서 현행 SSG와 유사한 형태인 물량기준 또는 가격기준이 발동되는 형태, 물량기준과 가격기준이 동시 충족되어야 발동되는 형태, 기준발동물량을 초과해야 발동되는 형태를 제안하였다.

(4) 나미비아

현행 SSG제도는 관세화 대상품목과 SSG 발동권한을 유보한 국가의 경우에만 발동이 가능하며 오직 선진 7개국에 의해서만 지금까지 발동되어 왔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안하였다. 우선 SSG 발동권한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개도국과 최빈 개도국들은 새롭게 SSG 발동품목 재설정의 기회를 부여하고, 둘째, SSG 구제조치로 추가적 관세부과 이외에 수량제한도 허용하며, 셋째, 개도국의 SSG 발동 능력 향상을 위한 기술적 지원을 요구하였다.

(5)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등 5개국 공동제안

선진국들의 다양한 보조금 지급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수입농산물이 개도국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상쇄하기 위한 방안으로 관세인상이나 SSG적용품목 확대 등은 최적의 해결책이 아니다. 따라서 선진국의

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수출되는 모든 농산물에 대해 개도국 우대차원에서 개도국들이 자동적인 상계조치를 발동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특히 개도국 국내 생산 농산물의 시장 점유율 감소와 개도국 농산물 수출기회 박탈에 대응하기 위해 개도국 우대조치 차원의 상계조치(SDCM) 허용을 주장하였다.

(6) 쿠바, 도미니카 공화국 등 8개국

대부분의 개도국에 있어서 농업분야는 정부의 지원이 거의 없으며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쉽게 영향을 받는 매우 불안정한 상태로서 적절한 농산물 SG제도가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개도국 우대차원에서 개도국에게 적절한 안정망 장치(ASM)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개도국의 SSG 발동권한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일정한 수입증가와 가격하락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허용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개도국의 SSG조치로 관세인상 이외에 수량제한도 허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1.2.5. 지리적 표시제

(1) EU

명성있는 식품과 음료에 대한 도용을 막기 위한 보호장치 마련을 통해 실효적 시장접근기회 보장의 필요성을 지적하며 지리적 명칭이나 원산지 규정강화, 표시에 대한 규제를 통해 소비자 및 공정경쟁 보호강화 방안이 차기 농업협상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2) 스위스

지리적 표시에 의한 보호는 특별한 품질과 특성을 보유한 품목의 유통에 중요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원거리 지역이나 낙후지역의 특별한 노력을 적절히 보상할 수 있는 장치로서 농촌개발, 소규모 영농과 환경보호, 전통지식보호 등과 같은 비교역 기능을 충족시키는 수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차원에서 보호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다만 스위스는 동문제가 농업위원회가 아닌 지적재산권위원회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제안하였다.

1.3. 협상의제별 주요국 발언 동향과 논의 사항

1.3.1. 농촌개발

농촌개발과 관련하여 농산물 수출국인 미국, 호주 등 케언즈 그룹 국가들과 개도국들은 선진국과 개도국간에 농촌개발의 의미와 성격이 다르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선진국의 무역 왜곡적 조치가 개도국의 빈곤경감과 농촌고용 증진 등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개도국 농촌개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면서 수입선진국들이 이를 근거로 무역 및 생산왜곡적 조치사용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다.

이에 반해 우리 나라를 비롯한 EU, 스위스 등 NTC 주장 국가들은 국가마다 처한 상황에 따라 농촌개발의 우선 순위가 각기 다를 뿐이지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농촌개발은 매우 중요한 정책목표이기 때문에 각국의 사정에 맞게 적용 가능한 규범을 개발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특히 우리 나라는 각국의 농촌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행 허용보조만으로 불충분함으로 각국 사정에 맞는 적용 가능한 다양한 조치를 농촌개발 측면에서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1.3.2. 허용보조

허용보조와 관련하여 비보조 농산물 수출국 모임인 케언즈 그룹과 대부분의 개도국들은 무역왜곡이 없도록 현행 허용보조의 각 정책 특정적 요건들을 강화하고 허용보조 총액에 상한을 설정할 것을 주장하였다. 또한 미국은 현행 요건이 7년 전에 만들어져서 각국이 새롭게 직면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허용보조의 기본 요건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러한 변화 및 정책 요구사항을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한편, EU는 현행 허용보조의 골격을 유지하되 경기변동이나 생산, 가격, 투입요소와 연계되는 보조는 허용보조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동물후생을 위한 정책은 감축약속에서 면제할 것을 주장하였다. 우리 나라를 포함한 일본, 노르웨이, 스위스 등 여타 NTC 국가들은 각국의 다양한 여건을 반영하고 농업이 갖는 다원적 기능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현행 허용보조 규범을 신축적으로 확대할 것을 주장하였다.

1.3.3. 블루박스

생산제한 하 직접지불정책과 관련하여 미국, 케언즈 그룹 및 대부분의 개도국들은 이 정책이 무역왜곡 측면에서 감축대상 보조와 별 차이가 없으므로 감축하여 궁극적으로 철폐할 것을 주장하였다. 반면에 EU, 스위스, 노르웨이와 헝가리, 체코 등 동구권시장경제 이행국가들은 생산제한하 직접지불정책을 계속해서 감축에서 면제할 것을 주장하였다.

한편, 우리 나라와 일본은 이 정책이 UR농업협정 이후 무역 왜곡적 정책을 무역왜곡이 없는 정책으로 전환하는 데 유용한 정책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농업개혁과정 동안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1.3.4. 특별긴급관세(SSG)

특별긴급관세(SSG)제도와 관련하여 미국, 케언즈 그룹 등 농산물 수출출국들은 이 제도가 과도기적인 조치이며, 특히 지금까지 소수 선진국에 의해서만 사용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이를 근거로 한 추가적인 보호는 철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개도국들은 현행 SSG는 철폐하는 대신 개도국에게만 적용 가능한 SSG를 신설할 것을 주장하였다.

한편, 일본은 현행 특별긴급관세제도 적용의 한계를 지적하며, 계절성과 부패성이 높은 농산물에 대해 새로운 세이프가드조치 도입을 제안하였다. 또한 노르웨이는 SSG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국가 확대를 주장하였으며, 스위스는 보다 현실성 있게 제도를 개선할 것을 제안하였다. 우리 나라는

SSG가 지난 UR 협상의 주요 합의 사항인 비관세장벽의 예외는 관세화와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 중요 요소로서 향후 농업 개혁기간 동안 계속 유지되어야 하며, 특히 일본이 제안한 계절성 및 부패성이 있는 농산물의 수입 급증에 대응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새로운 보호장치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1.3.5. 지리적 표시제

지리적 표시제와 관련하여 EU와 스위스 등 유럽국가들은 공정한 경쟁 기회 보장, 농산물 무역자유화에 대한 기여 측면에서 지리적 표시제 대한 보호 강화와 농업협상에서 이 의제를 심도 있게 취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반면에 미국, 케언즈 그룹 등 농산물 수출국뿐만 아니라 대다수 국가는 지리적 표시제와 관련된 논의는 WTO 농업협상 범위를 넘는 의제로서 기본적으로 지적재산권(TRIPs) 협상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2. WTO 농업위원회 제28차 정례회의(9. 27)

WTO 농업위원회 정례회의는 회원국들의 지난 UR 농업협정 약속이행상황 점검을 목적으로 일년에 네 번 정기적으로 개최되어 각국의 이행 상황 통보내용을 점검하고 있다. 이번 28차 정례회의에서 우리 나라의 통보내용은 없으며 주로 미국의 98년 국내보조 이행실적에 대한 질문이 집중되었다.

시장접근 분야에서는 EU, 일본 등 총 12개국의 통보내용이 논의되었으며, 주로 관세할당물량의 낮은 수입 이행률(Tariff Quota Underfill)에 대한 질문이 집중되었고 답변은 주로 국내수요부족, 국내생산증가로 인한 국내가격하락 등이 낮은 수입 이행률을 초래하였다고 제시되었다. 국내보조 분야에서는 미국, 캐나다, 슬로바키아 공화국 등 총 13개국의 통보내용이

논의되었다. 우리 나라를 포함한 많은 회원국들은 미국이 '98년 유통 년도의 시장손실지원정책(market loss assistance program)을 품목불특정 감축보조로 분류한 이유에 대해 질문을 집중하였다. 이에 대해 미국은 동 보조가 현재 생산과 관계없이 지불되고 품목별 보조액을 정확히 산출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품목불특정보조로 분류하였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EU, 일본, 알제틴 등이 97 유통년도에 비해 미국의 품목별 보조수준이 전반적으로 증가한 것이 현재 진행중인 농업협상에 대한 미국의 개혁적 협상입장(ambitious position)과 모순된다는 문제제기를 하였다. 수출보조 분야에서는 EU, 미국 등 14개국의 통보내용이 점검되었으며, 차기 정례회의는 제4차 농업위원회 특별회의 비공식회의(12.3~5)에 연이어 12월 6일 개최기로 하고 종료하였다.

3. 결론

이번 WTO 농업위원회 특별회의 제3차 비공식회의는 허용보조, 블루박스, 특별긴급관세 등 전통적인 협상의제와 농촌개발이라는 NTC 관련 의제, 그리고 지리적 표시의 새로운 협상의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었다. 우선 전통적 의제와 NTC 관련 의제에 대해서는 대체로 각국이 제 1단계협상에서 표명한 기존 입장을 반복하는 수준이었으며, 뉴 이슈에 대해서는 농업협상 논의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많았다.

최근들어 많은 나라들이 협상의제에 대해 단독 혹은 이해 그룹별로 비공식 문서를 제출함으로써 의제별로 자국의 이익을 적극 주장 및 홍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우리 나라도 핵심 협상의제에 대해서 통상 이익증진 차원에서 적극적인 의견개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 발견된 특징은 최근 들어 다자간 협상의 장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개도국들이 기존 그들의 주장에 대한 논리를 보강하

면서 구체적인 제안을 제시하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개도국들의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그 동안 개도국과 유사한 입장을 취해 왔던 케언즈 그룹내의 선진국까지도 반대하고 있다. 예를 들어 보조금을 받은 모든 선진국의 수출농산물에 대해서는 개도국의 신축적인 상계조치 허용(알젠틴, 볼리비아, 태국, 필리핀 등 주장)요구가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지난 협상과정에서 단순히 자국 입장만을 주장하던 개도국들이 그들의 주장에 대한 설득력 있는 논리를 제시하면서 구체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수준까지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이번 WTO 농업협상은 지난 UR 협상과는 다른 양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마지막으로 참석회의기간 중인 9월 26일 배포된 도하 각료선언문 농업분야 초안은 기본골격만을 제시함으로써 각료회의 직전까지 많은 사전정지작업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WTO 제4차 각료선언문은 뉴라운드 출범의 주요 쟁점사항인 협상의제의 윤곽을 제시하고 있으며, 향후 협상의 방향, 범위, 일정 등을 내포하고 있는 선언적 의미의 문서이다. 각료선언문 초안은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농업 및 서비스 이외에 공산품관세인하 등 비 농산물 시장접근, 지적재산권, 무역원활화, 반덤핑, WTO 규범개선 등 비교적 폭넓은 의제를 포함하고 있으나 무역 및 투자, 무역 및 경쟁정책, 무역 및 환경 등 몇 개 분야의 경우는 향후 협상에서 결정하거나 협상의제에서 제외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농업분야는 농산물 수출입국의 이해대립을 반영하듯이 구체적 문안을 제시하지 않고 향후 검토될 주요 사항만을 나열하고 있다(농업협상의 장기적 목표, 협상분야별 협상방향, 비교역적 관심사항, 개도국 우대, 협상일정, 협상기구). 따라서 농업분야에 대한 각료선언의 최종문안은 핵심 문안에 대해 수출입국이 가지고 있는 민감성을 고려할 때, 각료회의 직전까지 문안 조율협의를 지속되면서 각료회의로까지 위임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임정빈 jeongbin@krei.re.kr 국제농업연구실)

EU의 WTO 농업협상에 대한 접근방법

EU 집행위원회는 최근 “EU · US and the WTO Agriculture”라는 요약보고서를 간행했다. 이 보고서는 개혁된 EU 공동농업정책의 기초, 농산물 무역협상의 주요 의제들, EU와 미국 사이의 농산물 무역분쟁 사례에 이르기까지 국제 농산물 무역협상에 대해 EU가 취하고 있는 접근방법을 포괄적이면서도 일목요연하게 소개하고 있다.

1. 새로운 공동농업정책

1.1. 공동농업정책

공동농업정책은 처음 확립된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여 적응하고 변화하는 역량을 보여왔다. 그 초기 단계에는 농업생산성 향상에 주된 초점을 두었었다. 이러한 접근방법은 곧 결과를 낳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공동농업정책은 몇몇 부문에서의 생산 잉여를 관리할 것을 요청 받았다. 당시 공동농업정책이 취한 첫 번째 대응은 양적 제한이라는 수단을 통해 생산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것이었다. 더욱 최근에, 공동농업정책은 핵심 농산물에 대한 가격보장 수준을 낮추고 직접지불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그러한 조치가 생산자 소득에 미치는 충격을 극복하고자 하는 새로운 접근방법을 시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접근방법은 1992년의 공동농업정책 개혁에 토대를 두고 있는데, 시장균형과 농업소득 안정화라는 두 관점에서 볼 때 매우 성공적이었다. EU는 1999년에 더욱 근본적인 공동농

업정책 개혁작업을 수행했다. 그것은 새로운 도전에 대해 농업 부문과 농촌 경제를 준비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1.2. 새로운 공동농업정책

어젠다 2000(Agenda 2000)은 최근 수년 동안 가장 야심 찬 농업개혁 프로그램 중 하나였다. 그것이 다루었던 농산물들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어젠다 2000은 EU의 모든 농업개혁조치들 중 가장 광범위한 수준의 것이었다. 농업정책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법을 도입함으로써, 유럽의 농촌경제가 그 앞에 놓여 있는 도전들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추었다. 이 새로운 공동농업정책은 농업생산 보다 더욱 범위가 넓은 농촌경제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갔다. 그리고 농민들이 생산하는 것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사회에 대해 그들이 제공하는 일반적인 기여에 대해서도 보상 받을 수 있도록 보장했다. 이 개혁은 또한 EU 확장과 WTO 협상을 준비하도록 도왔다. 어젠다 2000은 “WTO에서의 장래 다자간 무역협상에 대한 EU의 입장 중 근본적인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와 같은 일련의 개혁조치들은 다음과 같은 목표를 두고 있다.

- (1) 유럽시장과 점차 성장하고 있는 수출 시장, 양자의 경우에서 모두 EU의 경쟁력을 보장하는 것.
- (2) 농촌환경과 경관의 유지와 향상에 기여하는 영농방식을 장려하는 것.
- (3) 농촌경제개발을 촉진하는 동시에 농민들의 삶의 질을 유지시키는 데 기여하는 것.

그리고,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수단들을 선택하고 있다.

- (1) 가격보장 축소 : 시장가격 지지 축소를 통해 유럽의 농민들이 세계 시장가격에 더욱 가깝게 가도록 도울 것이며, 국내 시장이나 세계 시장에서 농산물의 경쟁력을 증진시키도록 도울 것이다.
- (2) 농업계에 대한 공정한 기준을 보장 : 제도적인 가격 축소는 직접보조

금 지불의 증액을 통해 부분적으로 극복될 것이다. 가격지지로부터 이탈하여 직접지지의 형태로 이행하는 움직임은, 정책적 지원을 생산으로부터 더욱 디커플링(decoupling)하는 것을 의미한다.

- (3) 더욱 환경친화적인 영농활동 촉진 : 농업-환경 정책은 EU 회원국들이 작성한 '2000-2006년 농촌개발계획' 개요 중에서 유일한 의무조항이다. 그리고 회원국들은 환경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영농활동에 대한 보조금 직접지불(교차준수, cross-compliance)의 가능성을 포함하여 환경기준을 충족시키는 필요한 정책수단들을 취해야 한다.
- (4) 모든 농촌지역에서의 농촌개발에 대한 종합적 접근방법 장려 : 농촌개발에 대한 새로운 정책은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전략이라는 맥락에서 농업 부문이 경쟁력 있고 다원적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장려할 것이다.
- (5) 품질에 대한 관심 집중 : 이 개혁조치들은 식품의 품질과 안전성, 농업에 있어서의 환경보호와 동물후생에 대한 증대된 소비자들의 관심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

어젠다 2000은 더욱 더 현대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틀과 활력 있는 농촌경제를 유지하기 위한 포괄적인 정책을 마련했다. 그것은 특정한 모델을 가진 농업이 지속되도록 뒷받침하려 한다. 그러한 농업 모델은 유럽 농업이 생산하는 광범위한 편익과 다원적 기능을 인식하는 모델로서 유럽의 유산 중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다.

1.3. 미래 지향

품질이라는 이슈는 소비자로부터의 요구 충족과 유럽 역내와 역외에서의 농민들의 지위를 강화하려는 관점을 지닌 새로운 공동농업정책을 점점 더 발전시켜 가는 동력이다.

그러므로 식품의 건강성, 품질, 안전성을 증진시키는 일은 EU에 있어 최우선순위를 차지한다. 시장에 존재하는 식품의 안전성에 대해 소비자들을 안심시킬 필요가 있다. WTO의 배경에서는 '예방의 원칙(precautionary

principle)⁵⁾이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예방의 원칙이 지켜지는 방식에 대해서는 여전히 검토해야 할 사항들이 존재한다. 이것이 바로 EU가 예방의 원칙 적용이 명료화되어야 한다고 제안하는 이유이다.

투명한 표시 규칙이 공정경쟁과 소비자에 대한 합당한 정보제공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보호가 적용되고 있는 명칭의 오용으로부터 고품질 농산물 - 식품 및 음료 -를 보호하는 것이 한가지 핵심분야이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새로운 공동농업정책은 유럽에서의 농업생산이 지닌 풍부한 전통을 반영하고 있는 다양성에 대한 요구 등 사회의 새로운 요구에 지속적으로 응답해나갈 것이다.

2. WTO 농산물 무역협상에 대한 EU의 접근방법

2.1. 농산물 무역에 관한 뉴라운드(new round) 시작

2000년 3월, 제네바에 있는 WTO 본부에서는 농산물 무역에 있어서의 자유화 심화에 대한 다자간 논의가 시작되었다. 이러한 논의는 1994년에 종료된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합의된 일정에 따라 시작된 것이었다.

2.2. 협상 목표

현재 라운드의 목표는 이전의 우루과이 라운드의 결론에 밝혀져 있다.

5) 2000년 1월에, EU 집행위원회는 예방의 원칙에 대한 코뮌িকে를 채택했다. 여기에서는 여타의 WTO 회원국들과 마찬가지로 EU도 적절하다고 간주할 수 있는 수준의 보호책을 확립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이 재진술되었다. 이 코뮌িকে는, 과학적 근거가 불충분하고 결론을 내릴 수 없거나 불확실한 동시에 이전의 과학적 평가가 환경, 인간, 동식물 위생에 대한 잠재적으로 위험한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이유 있는 근거가 있다고 가리키는 경우에 대해 EU이 일반적으로 채택하는 보호수준과 불일치할 수도 있는 사례들을 언급하고 있다.

우루과이 라운드 농업협정문에는 대화의 목표가 “공정하고 시장지향적인 농업 무역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다. 이러한 목표는 “GATT 규정을 지키는데 있어 더욱 효과적으로 만들고 강화시킴으로써, 그리고 지지와 보호에 대한 협상을 통해” 달성될 것이다.

따라서 EU는 농업개혁에 필요한 정책수단을 유지하고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촉진하는 것과 점진적인 자유화 및 더욱 공정한 국제무역 체계 구축 사이의 균형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협상에 임할 것이다.

2.3. 우루과이 라운드(UR) 농업협정문

2.3.1. 시장접근, 국내지지, 수출경쟁

지지와 보호에 대한 합의사항은 시장접근, 국내지지, 수출경쟁 등 3 분야들에 관한 것이다.

2.3.2. 비교역적 관심사항

협정문에는 또한, 특히 농촌개발, 환경, 식품 안전성, 동물 후생을 포함하는 비교역적 관심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되어 있다.

2.3.3. WTO와 개발도상국

1994년의 협정은 개발도상국가들에 대해 “특별하고 차별화된” 조치를 제공하고 있다.

2.3.4. WTO에서 EU의 협상방식

EU과 그 회원국들은 모두 WTO의 회원 자격을 지닌다. 그러나 EU 각료 이사회에서 승인된 위임을 토대로, WTO에서는 EU 집행위원회가 회원국들을 대표한다.

농산물 무역 협상에 대해서는 집행위원회에 그 권한을 위임하기로 한

합의는 1999년 9월에 이루어졌다. 한편 전체적인 위임에 대한 합의는 그로부터 한달 뒤인 10월에 이루어졌다. 2000년 11월 21일, EU 이사회는 다가올 협상에서 EU의 입장의 기본토대를 구성하게 될 농업협상 제안서에 대한 일반틀을 승인했다.

2.3.5. 농산물협상에 대한 EU의 입장에 대한 개관

EU의 포괄적 제안은 지지와 보호에 있어서의 더 큰 감축과 비교역적 관심사항라는 목표와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특별하고 차별화된 조치를 제공할 필요성을 고려하고 있는 농업협정문 제20조를 근거로 하고 있다.

시장접근에 있어서, 뉴 라운드에서 EU의 목표는 시장접근을 확대하여 모든 WTO 회원국가들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특히 세계에서 가장 큰 수출국가들 중 하나인 EU에게 중요한 일이다.

국내지지에 있어서 EU는 블루박스(blue box)와 그린박스(green box)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전제 하에 국내지지의 폭을 더욱 감소시켜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그린박스와 블루박스는 시장가격 지지에서 직접지불로 이행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

수출경쟁에 있어서 현재의 협정은 완전히 한가지 수단, 즉 수출보조금만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영역에서 긴급한 요구가 존재한다고 EU는 믿고 있다. EU는 또한 식량지원 남용 등 다른 많은 수단들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며 수출환급금(export refunds) 감축에 대해서도 협상할 것이다.

시애틀 사건에서도 분명히 드러났듯이, 비교역적 관심사항은 전 세계 사람들의 관심을 점점 더 끌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목소리는 사람들 스스로가 정책에 참여하도록 만들고 있어, 정부들은 늘어나는 인구를 위해 식량과 섬유를 생산하는 것 이상의 농업의 역할에 대해 더욱 주의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배경 속에서, 지속가능한 개발, 환경보호, 농촌

의 활력 유지, 빈곤 완화 등에 대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에서 농업이 기여하는 다원적 기능이 고려되어야 한다.

역사, 지리, 문화, 기후 등의 모든 요인들이 EU에서의 농업활동에 기여하고 있으며 시장법칙이 지배하는 단순한 경제활동 이상의 것들을 농업이 맡고 있다. 유럽 땅의 절반 이상을 관리하는 농민들은 인간활동의 필수적 부분인 환경을 보호하려는 노력의 최전선에 서 있다. 식품의 품질과 안전성, 동물후생에 대한 더욱 커져 가는 관심 등이 모든 이슈들이 농산물 무역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때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EU는 개발도상국가들에 최혜국 대우를 하고 있으며, 가장 큰 농산물 수출시장이다. EU는 최소개발국(the least developed country)에 대해 농산물을 포함한 모든 상품들에 있어 무관세 접근을 제공하도록 요청받고 있다.

WTO의 138개 회원국들 대부분은 개발도상국이며, 그들의 이해관계는 농산물 협상 문제에 현저하게 나타날 것이다.

마지막으로, EU는 지난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합의했던 “평화 조항(peace clause)⁶”과 “세이프가드 조항(safeguard clause)⁷”이 농업협정의 이행에 있어 유용했다고 믿으며, 앞으로의 협상에서도 그러한 유형의 새로운 수단을 주장할 것이다.

6) 협정이행의 종료시기까지, 즉 2003년 말까지, 우루과이 라운드 농업협정문 제13조 (평화조항)는 (그린박스과 블루박스로 분류된 정책수단들을 포함하여) 국내지지 정책수단들과 WTO 회원국들이 특정한 법률적 활동으로부터 수출보조금을 지불하는 것을 보호하고 있다.

7) 우루과이 라운드 농업협정문 제5조에 따르면, WTO 회원국들의 무역 상황이 그러한 상황을 정당화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입가격의 급격한 하락이나 급작스럽거나 예측할 수 없었던 수입물량 증가를 막기 위해 추가적인 관세를 부여할 수 있다.

3. 시장접근

“철옹성과 같은 유럽”이라는 비난은 사실과 다르다. 세계에서 으뜸가는 농산물 수입국이면서 두 번째의 수출국인 EU는 농산물 무역에 있어 세계를 선도하는 주체이며 시장접근 문제에 있어서 균형잡힌 접근을 취하는데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아래의 분석은 그 범위가 협상에 있어서 주요 참여자들 몇몇(미국, 케언즈 그룹)에만 국한되어 있지만, 그러한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3.1. EU는 세계 최대 농산물 수입지역

2000년 현재, EU의 농산물 수입 규모는 총 582억 Euro(전체 수입 규모의 5.7%)였다. EU의 주요 관심사항은 과일, 커피, 차, 코코아, 향료, 유지류 등이다. 이들 농산물들의 주요 공급자에는 중동부 유럽, NAFTA 회원국(캐나다, 멕시코, 미국), Mercosur 회원국(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그리고 아프리카, 카리브해, 태평양 연안의 77개 국가들이 포함된다. 2000년 가을에 EU 집행위원회는 (무기거래와 관련된 것을 제외하고는) 최소개발국가들의 모든 상품들에 대해서 EU 시장에서의 무관세 접근을 하도록 하는 제안을 채택했다.

3.2. EU는 세계 주요 농산물 수출국

2000년 현재 EU의 농산물 수출규모는 580억 Euro(총 수출 중 6.2%)이었다. 세계에서 2000년 한 해 동안 EU보다 더 많은 농산물을 수출한 국가는 미국뿐이다. 주요 수출농산물에는 포도주와 주정, 낙농제품, 쇠고기, 시리얼, 쌀, 밀가루 등이다. EU의 주요 수출시장은 NAFTA, 러시아, 지중해 연안국가들이다.

수출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음은 농산물의 무역 수지를 살펴보

면 분명히 드러난다. 1992년(EU 12개 회원국)에, EU는 약 68억 ECU의 농산물 무역 적자를 보였으며, 1995년 EU 15개 회원국들의 농산물 무역적자는 52억 ECU에 달했다. 현재 EU의 농산물 수출입은 거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이다. 2000년 현재 EU의 농산물 무역적자는 단지 1억 9400만 Euro에 불과하다. 1차 농산물보다는 가공상품의 수출증가 속도가 더 빨랐다. 1991년에서 2000년 사이에, 농산물 가공상품 수출 증가율은 71.3%(연평균 6.2%)이었으며, 1995년부터 2000년 사이에는 31.4%(연평균 5.6%)였다. 한편 1차 농산물의 경우, 각각 49.2%(연평균 4.5%)와 26.0%(연평균 4.7%)이었다.

3.3. 시장접근과 식품의 고유성 - 필수적인 연계

EU의 농산물들이 불공정거래로부터 확실히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이 EU의 관심사항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EU가 고품질 농산물들과 지역특산품들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들을 더욱 강화하려고 하는 이유이다. EU는 특별한 지역에서 나는 특별한 농산물들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가 전 세계 생산자들에게 건전한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공정한 거래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러한 농산물들이 불공정하거나 명성을 도용 당하는 일로부터 보호받을 필요가 있다.

4. 국내지지

우루과이 라운드가 WTO 회원국들이 국내 지지수단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 예전보다 더욱 큰 규제를 가하도록 만들었지만, 세계시장에서의 낮은 농산물가격과 공급초과가 맞물려 국내지지 수준이 더욱 높아지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OECD는 최근에 ‘생산자지지 계수(Producer Support Estimate, PSE)’를 측정했을 때, 국내지지 수준이 1990년대 초반의 수준으로 되돌아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지난 3년간의 농산물 가격의 저위는 미 의회로 하여금 긴급지원 패키지를 승인하도록 했으며, 2000년의 직접지불 규모는 32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구체적인 정책수단들을 검토하는 가운데, OECD는 최근 EU에서 그러한 국내지지의 양상을 띠는 블루박스 정책수단들이 시장가격지지보다 무역왜곡을 덜 일으킨다고 보고한 바 있다.

공동농업정책 개혁의 마지막 단계에서, EU는 농산물보다는 농민에 근거하여 지원하는 방향의 길을 걸어왔다. 시장가격지지는 계속해서 감소했는데, 생산제한적 프로그램에서 생산자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증가해왔다.

공동농업정책 개혁을 통해 쇠고기, 시리얼, 우유, 낙농제품에 대한 제도 가격(institutional price)은 삭감되었다. 쇠고기 부문에서 2000년에 시작한 가격 삭감은 20%까지 이루어졌다. 경종작물 부문에서 가격삭감 역시 2000년에 시작하여 15% 가량 삭감되었다. 우유와 낙농부문에서는, 2005년 이후부터 15%까지 삭감될 예정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최근의 가격삭감이 EU에서 더 낮은 수준으로 제도가격을 유지하려는 장기간의 동향을 완전히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1992년과 1999년 두 차례에 걸친 개혁을 함께 고려한다면, 가격 삭감은 경종작물 부문에서는 45% 수준에 이르며, 쇠고기 부문에서는 35% 수준에 달하고 있다. 이를 함께 고려할 때 두 부문은 유럽 농업생산의 5분의 1을 차지한다.

그와 같은 개혁단계에서 직접지불은 가격 또는 생산량과는 분리(decouple) 되었으며, 생산제한적 프로그램과 연계되었다. 경종작물 부문에서 10%의 경지가 연작시스템에서 윤작시스템으로 전환되었으며, 공급을 감축해가고 있으며, 따라서 세계 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직접지불 증가가 가격삭감을 완전히 보상하고 있지는 못하다. 보상수준은 경종작물의 경우 50%, 쇠고기 부문의 경우 80% 정도이다.

EU는 지난 10년간 그 농업정책에 있어 큰 변화를 이루었다. 2000년의 공동농업정책은 1990년의 공동농업정책이 아닌 것이다. 시장가격지지와 수출환급금이 1989-1991년 사이의 EU 농업 예산의 90% 이상을 차지했던 반면에, 2006년경에는 20% 정도에 불과하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생산제한 프로그램 하의 직접지불은 1989-1991년 사이에는 10% 미만이었던 것이 2006년경에는 농장에 투입되는 예산의 80%에 육박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요약하면, EU는 그 농업정책을 더욱 투명하고 시장을 왜곡시키지 않는 정책수단 쪽으로 크게 전환시켜온 것이다. EU는 블루박스와 그린박스 개념이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는 전제 하에 무역을 왜곡시키는 농업지지수단을 더욱 감축시킬 준비가 되어 있다. 이는 시장가격지지에서 직접지불로 이동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역할을 해왔다. 이른바 블루박스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예상했던 대로, 한편으로는 시장가격지지보다 그리고 농산물에 기초한 지불보다 훨씬 덜 왜곡을 일으켰다. 그리고 EU은 시장가격 변화에 대한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수출활동을 촉진하는 “엠버박스(amber box)” 보조금들에 대해 더욱 구체적인 규제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5. 수출경쟁

우루과이 라운드 협정은 농산물에 대한 수출보조금 분야에 있어서 더욱 큰 규제를 부과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분야에서 여전히 그 협정의 의도를 달성하고 있지 못하다.

EU는 협정이 정하고 있는 수준 이상으로 이 분야에서의 협정내용을 이

행해왔다. 예를 들어, EU는 1995-1999년 사이에 우루과이 라운드 협정이 허용하고 있는 재정적 가능 범위의 60% 이하 수준으로 수출보조수단을 사용했다. (수출보조금을 포함한) 전체 시장지지 수준은 1992년 이전의 전체 지지 92% 수준에서 매우 떨어져 2006년경에는 21% 이하에 달하게 될 것이다. 수출환급금은 공동농업정책자금 지출에서 1992년에는 25% 수준이었던 것이 지금은 10%에 불과하다. 아래의 그래프는 1991-1997년 사이의 수출환급금 예산의 감소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EU 농업개혁의 최근 단계에서 이루어진 이러한 일들은 EU에서의 농산물 가격을 세계시장에서의 가격에 더욱 근접하게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다. 따라서 보조금 없는 수출에 대한 전망을 열어놓고 있는 것이다.

EU는 수출환급금 프로그램에 있어서 더 많은 감축을 협상할 용의가 있다. 그러나 이는 모든 형태의 수출경쟁이 협상테이블에서 함께 다루어질 경우의 이야기이다. 이는 수출 신용, 식량지원의 남용 등의 모든 문제를 함께 다루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형태의 수출보조금들이 동일한 방식으로 다루어지고 동일한 WTO 규정의 적용을 받고 투명한 규칙이 적용될 때에만, EU의 수출환급금 사례가 그러하듯, 누가 무엇에 대해 어떻게 보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명료한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6. 개발도상국들과의 농산물 무역

6.1. WTO와 개발도상국

1994년 협정은 개발도상국가들에 대한 “특별하고 차별화된 취급”을 말하고 있다. EU의 개발정책의 목표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촉진시키기 위한 것이다.

- 개발도상국가들의 지속가능한 경제적, 사회적 발전

- 개발도상국가들을 세계 경제에 매끄럽고 점진적인 방식으로 통합
- 개발도상국에서의 빈곤에 대한 캠페인

EU가 판단하기에 이러한 목표들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국제 무역 체계를 통한 것이다. 현재 협상 내용의 결과는 모든 WTO 회원국들의 이익을 반영하는 것이어야 한다. 2000년 9월에 138개국의 WTO 회원들 가운데, 4/5가 개발도상국이며 그들의 이해관계는 농산물 무역과 관련된 논의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무역과 개발 사이의 상호작용은 농산물 무역이라는 문제를 넘어서는 매우 큰 범위의 문제이다. 그러나 개발도상국에서의 농산물 무역은 다음 협상 테이블에서 중요한 문제로 부각될 것인데, 많은 개발도상국가들의 경제에서 농업부문이 차지하는 중요성 때문이다.

EU는 모든 회원국들이 무역의 확대로부터 완전히 이익을 얻어야 한다는 관점을 견지하고 있다. 따라서 개발도상국들, 특히 최소개발국가들의 국제무역체계에의 참여가 촉진되어야 한다.

EU는 개발도상국들에 대해 특별하고 차별화된, 특히 농업과 관련하여 그러한 취급이 있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EU 시장에 대한 접근과 관련하여, EU는 이미 EU/ACP 협정을 통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EU는 이미 개발도상국들의 농산물 수출에 있어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다.

개발도상국에서 나는 농산물의 시장 접근을 증대시키기 위해 EU는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들에 대해 최혜국 대우를 제공해야 하며, 특히 최소개발국들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7. 비교역적 관심사항

농업부문은 식품이나 섬유 생산에 국한되지 않는 매우 큰 일들을 하고 있다. 유럽의 경관 유산을 보호하는 것이 지난 10년 동안 주된 정치적 우선사항이 되었다. 실제로 유럽공동체 조약(EC Treaty)은 지속가능한 개발을 촉진할 필요를 언명하고 있다. 유럽 땅의 거의 절반을 점유하고 있는 농업부문은 지속가능한 개발을 주도해나갈 필요가 있는 중요한 분야 중 하나임이 틀림없다. 농업계가 유럽의 자연공간 관리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위치에 있으며, 그러한 과제들에 투입되는 추가적인 노력은 모든 사람들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일이므로 그에 대해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은 현재 더욱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공중으로부터의 광범위한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농산물 협상에서 그러한 관심사항들을 적절히 다루는 것이 필수적이다. EU는 환경, 농촌지역의 활력 유지, 식품 안전성, 동물 후생, 기타 소비자들의 관심사항들을 충족시키기에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적절한 정책수단을 채택할 권리를 보호해야만 한다.

무역이 동물후생 보호를 증진시키려는 EU의 노력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일이 중요하다. WTO의 농업 협상에서 이러한 문제를 제기할 때, EU의 의도는 새로운 무역장벽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다. EU는 표시제, 보다 높은 수준의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농민들에게 초래될 비용증가에 대한 보상 제공 가능성, 다자간 협정의 가능성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선택지들을 검토하고 있다.

7.1. 농업계 : 유럽 농촌지역 발전에 있어 핵심적인 행위자

EU 농업부문에서의 지난 10년간의 동향은 농업활동이 더 이상 과거에

농촌 경제에서 차지했던 위치에만 국한되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많은 수의 농민들과 농장들에서 실패가 있었던 한편, 가족농이 유럽 농촌지역의 경제적 재생산에 있어 핵심고리 중 하나가 되었다. EU의 농촌개발정책은 1999년에 큰 변화를 겪었다. 그 개혁은 농업부문을 강화하고, 농촌지역의 경쟁력 증진에 기여하고, 유럽의 농촌 유산과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었다.

농촌지역을 뒷받침하는데 실패함으로써 EU는 다음과 같은 상황을 초래하게 되었다 : 기본적 서비스들의 폐쇄, 도시로의 인구이동, 농촌에서의 생활방식의 점진적인 손실. 따라서 농업부문이 점차 더욱 경쟁적인 환경으로 바뀌고 있는 현실에 적응하고 농촌지역을 위한 새로운 사업적 해결책을 발견하도록 돕는 것은, EU가 활력있는 농촌을 가꾸려하는데 있어 중요한 방법 중 하나이다.

7.2. 유럽을 위한 농업부문

환경보호와 농촌경제개발은 EU 농업부문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할 두 가지 분야이다. 농업계가 그러한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은 아마도 세계 어느 곳보다 유럽에서 분명할 것이다. 단순히 말하자면, 유럽의 작은 농촌지역 어디에서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으며, 따라서 유럽인들의 일상생활과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1997년 유럽의 평균 인구 밀도는 1평방킬로미터 당 117명이었는데, 이는 미국의 29명과 대조적인 차이를 보인다.

유럽의 영농모델은 그 경쟁국가들의 모델과는 다르다. 수출활동은 중요하며 EU는 시장의 규칙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 그러나 EU의 농업부문 또한 다른 중요한 영역에서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농촌지역을 재생산하도록 돕고 있으며 자연적 경관유산을 보존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EU 농업모델의 이와 같은 다기능적 측면이 세계 무대에서 설명되고 방어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한 가지이다.

경제 부문으로서의 유럽농업은 다기능적이고, 지속가능하며, 경쟁력 있고, 유럽 전역에 걸쳐 확산되어야 한다. 그것은 농촌을 유지하고, 자연을 보존하며, 농촌지역 활성화에 핵심적인 기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EU의 목표는 농업이 가능한 한 최소한의 무역왜곡적인 방식으로 그러한 역할들을 수행하도록 하는 정책수단을 수행할 권리를 지키는 것이다.

8. EU과 미국의 농산물 무역

EU와 미국은 농산물 무역에 있어 세계의 동력원이다. EU는 최대의 농산물 수입국이다. 이는 유럽 시장의 개방성과 EU의 무역에 대한 협정 이행노력을 보여주는 사실이다. 미국 또한 중요한 수입국이다. 수출에 있어서는 매우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미국과 EU는 세계를 선도하는 농산물 수출국이다. 농산물에 있어서 미국과 유럽의 쌍무적 관계라는 관점에서 볼 때, 2000년은 수입이나 수출 양방향에서 최대의 무역규모를 보인 한 해였다.

8.1. EU과 미국의 기본적인 내용 비교

EU와 미국의 농업부문은 거의 비슷한 농업생산가치를 보이고 있다. 2000년에 EU의 경우 그 규모는 1970억 달러였으며 미국의 경우 1900억 달러였다.

EU와 미국 사이의 주된 차이는 토지의 규모와 농장의 수이다. EU는 1억 3400만 ha에 불과한 농지를 지니고 있는데, 미국은 그 3배에 달하는 4억 2500만 ha의 농지를 갖고 있다.

EU에서의 농장수는 700만 개에 달하는데, 미국의 경우 200만 개에 불과하다.

8.2. EU · 미국간 농산물 무역(2000년)

EU와 미국 사이의 농산물 무역 총 거래액은 188억 Euro에 달했는데, 이는 양자간의 총 무역거래액 4279억 Euro의 약 4.4%에 해당된다. 2000년에 EU는 미국에 104억 5900만 Euro의 농산물을 수출했으며, 83억 4300만 Euro의 농산물을 수입함으로써 21억 1600만 Euro의 잉여를 보였다. 이러한 모습은 최근 수년간 유럽과의 농산물 무역에 있어 무역수지 폭이 점차 좁혀져왔음을 보여주는 근거이다. 이는 특히 EU의 수출증가(1999년 대비 26.2%, 농산물의 경우 16.2% 증가)에 힘입은 것이다. 달러화 강세 또한 한 몫을 했다. 그리고 미국경제의 부흥으로부터 초래된 소비자들의 고부가가치 상품에 대한 관심에 EU가 초점을 맞춘 것 또한 유럽의 수출 성공의 한 요인이다.

EU가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최상위 5개의 농산물 품목은, 유지류(19억 3200만 Euro), 옥수수 글루텐 사료를 포함한 동물 사료(9억 6300만 Euro), 담배 (9억 5000만 Euro), 과일과 땅콩(9억 1800만 Euro), 음료, 주정, 포도주 (6억 3700만 Euro)이다.

미국에 대한 EU의 수출은 포도주와 기타 음료에 집중되어 있다. 그 규모는 약 50억 600만 Euro로서, 미국에 대한 농산물 수출의 47.9%를 차지한다. 미국에 수출되는 다른 주요 품목들은 음료 원료, 과일, 땅콩 (5억 8000만 Euro), 시리얼 원자재, 밀가루, 전분, 우유(5억 300만 Euro)이다.

8.3. EU · 미국간 무역분쟁

EU는 무역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으로서 WTO의 분쟁해결절차를 강력히 지지하고 있다. EU는 현재 미국과 16개의 WTO 분쟁항목을 가지고 있다. 이 가운데 11개는 EU이 제소한 것이며, 5가지는 미국이 EU에 대해 제소한 것이다. 그 가운데 몇 가지들이 농업부문과 관련된 것들이다.

8.3.1. 바나나

EU는 이 사례가 해결되었을 때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분쟁해결에 이르기까지 매우 어려운 과정을 겪었으며, 수년간의 노력을 필요로 했다. EU의 지속적인 노력은 분쟁해결에 대한 EU의 약속이행을 보여주는 것이다.

8.3.2. 호르몬

EU는 현재 WTO 규정에 맞도록 법규를 개정하고 있다. EU는 미국으로부터의 수출상품들에 대해 EU 시장을 더욱 크게 개방하는 형태로 보상하면서, 미국에 대한 EU 수출상품들에 대한 현재의 관련 정책수단들을 대체할 방법을 찾고 있는 중이다.

8.3.3. 밀 글루텐

WTO는 미국의 밀 글루텐 세이프가드 쿼터가 “법률적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판결하였다. 미국에 대해 WTO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사항은 쿼터를 상향조정하는 것이며, EU는 그러한 조치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자료: EU Commission, DG for Agriculture에서
(김정섭 jngspkim@terrami.org 지역아카데미)



농산물무역 정보

중국의 농산물수출 동향과 문제점

중국의 농산물수출 동향과 문제점

1. 중국의 농산물수출 동향

1.1. 주요 농산물 가격동향

90년대 이전, 중국의 식량과 면화 등 농산물의 국내가격수준은 일반적으로 국제가격수준보다 낮았으며, 비교적 높은 가격경쟁력을 구비하고 있었다. 그러나 근래에 들어와 중국의 농산물 생산비는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는데,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의 식량생산비는 매년 10%의 속도로 상승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식량의 수매가격 또한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 그 결과 주요 농산물 수출가격이 보편적으로 국제시장가격보다 높게 형성됨으로써, 중국은 과거의 가격경쟁력을 상실하였다.

2001년 3월 중국 정조우(鄭州)상품거래소의 밀 가격은 톤당 1,257위엔 이었는데, 미국의 시카고 선물시장의 밀 가격은 톤당 806.2위엔 이었다. 따라서 중국이 운송비 등 각종경비를 포함한 미국산 밀 수입가격은 톤당 1,200위엔에도 미치지 못한다. 지린(吉林)의 옥수수 시장가격은 톤당 1,030 위엔 이었는데, 미국 시카고 선물시장의 거래가격은 톤당 681.9위엔에 불과하였다. 중국이 운송비 등 각종경비를 포함하여 수입한 미국산 옥수수 수입가격은 톤당 1,000위엔도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중국 국내가격이 국제시장가격보다 높은 상황아래서 수출기업의 수출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들 기업의 손실규모는 커진다고 볼 수 있다.

1.2. 수출액 구조변화

세계적인 농산물가격 하락과 중국 국내농산물 시장가격 상승은 중국 농산물 수출가격에 영향을 미쳤으며, 이로 인하여 중국 농산물의 수출량은 감소한 반면, 수입량은 증가하였다.

<표 1>은 1996년부터 1999년까지 중국 주요 농산물 수출총액을 나타내고 있다. 1996~1997년 기간 동안 중국 일부 주요농산물 수출총액은 감소하였는데, 품목별로 살펴보면 축산물은 33.37%, 수산물은 25.92%, 담배는 32.68%, 면화는 1.2% 감소하였다. 1997~1998년 기간동안 농산물 수출총액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모두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냈는데, 수출 감소폭이 가장 큰 것은 식용유이며, 그 다음은 잠사이다. 1998~1999년 기간동안 축산물, 식용유, 유지 등의 농산물 수출은 여전히 하락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수산물, 목재 및 목가공품, 면화 등의 수출은 다소 회복되는 추세를 나타냈다. 따라서 중국의 전반적인 주요 농산물의 수출경쟁력이 하락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 주요 농산물 수출 현황

단위: 억달러

	1996	1997	1998	1999
식용유 및 유지	3.82	6.81	3.28	1.41
축산물	24.18	16.11	14.56	12.4
수산물	25.54	18.92	17.37	19.47
당(糖)	3.04	1.94	1.83	1.40
담배	9.76	6.57	5.78	3.36
목재 및 목가공품	20.52	22.04	18.32	21.77
잠사	8.93	9.47	7.15	7.55
동물털 및 가공품	8.18	9.92	7.60	9.64
면화	31.58	31.17	28.10	32.91

자료 : 「中國海關統計年鑒」,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1.3. 수출상품 구조변화

<표 2>에서 와 같이 중국은 곡물, 사료, 당, 유지 등을 제외한 대다수 농산물의 수출액이 수입액을 상회하고 있다. 1997년과 1998년 곡물이 순수출된 것은 바로 중국의 식량생산이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풍년이 들었기 때문이며, 동시에 밀과 콩에 대한 수입제한을 하였기 때문이다. 1980~96년 기간 동안, 중국의 곡물무역 현황은 기본적으로 순수입을 하였는데, 이는 중국의 경제발전 및 공업화추진과 관련이 깊다.

80년대이래, 식량수입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농산물 순수출 규모는 크게 증가하였다. 1980년 0.79억달러의 농산물 무역역조가 1998년 64.39억달러의 무역흑자로 전환되었는데, 주된 원인은 육류, 수산물, 과일, 채소, 차, 담배 등의 농산물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표 2 주요 농산물 무역액 비교

단위: 억달러

	1996			1997			1998		
	수출	수입	차액	수출	수입	차액	수출	수입	차액
생축	4.68	0.47	4.39	4.76	0.41	4.35	4.41	0.54	3.87
육가공품	10.86	1.57	9.29	9.70	1.49	8.21	8.40	1.43	6.97
수산물	17.38	5.97	11.41	18.92	5.44	13.48	17.37	6.66	10.71
유제품 ¹⁾	1.95	0.57	1.38	1.65	0.68	0.97	1.75	0.89	0.86
채소	15.42	0.76	14.66	15.13	0.74	14.39	14.83	0.71	14.12
과일	4.61	1.97	2.64	4.64	2.35	2.29	4.35	2.42	1.93
커피, 차	4.92	0.28	4.64	5.53	0.10	5.43	5.21	0.20	5.01
곡물	1.87	25.56	-23.69	11.77	8.92	2.85	14.98	6.96	8.02
사료	10.56	4.12	6.44	8.69	9.89	-1.20	7.51	13.45	-5.94
동식물유	3.82	1.69	2.13	6.81	16.78	-9.97	3.28	14.78	-11.50
당료	3.05	4.28	-1.23	1.94	2.50	-0.56	1.83	1.77	0.06
담배	9.76	4.57	5.19	6.57	2.54	4.03	5.78	1.06	4.72

자료: 「中國海關統計年鑒」, 1997년, 1998년, 1999년

주: 1) 계란 가공품을 포함.

1.4. 수출시장 현황

중국의 농산물 특히 곡물, 육류, 채소, 수산물 등의 수출시장은 주로 인근의 아시아국가 및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1996년 중국은 북한, 일본, 한국, 몽고, 홍콩 등 5개 국가와 지역에 대한 식량수출이 총 식량수출량의 82.2%를 차지하였다. 1997년 한국, 말레이시아, 북한,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5개 국가에 대한 식량수출량은 총 식량수출량의 84.75%를 차지하였다.

이는 중국의 식량수출이 인접지역 및 국가에서 일정한 정도의 경쟁력을 구비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미국, 유럽 등 지역에서는 경쟁력이 낮으며, 시장개척능력 또한 결핍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중국의 초급 농산물 예를 들면 차, 담배, 면화 등 농산물은 미국시장이나 동남아시장을 막론하고 모두 비교적 양호한 수출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2. 중국 농산물수출의 문제점

최근 중국의 농산물수출 현황은 과거 비교우위에 있었던 주요 농산물수출의 가격경쟁력 점진적 하락, 과거 수출량이 비교적 많았던 일부 농산물의 수출량 감소, 농산물 수출구조가 토지집약형 농산물에서 노동과 자본집약형 농산물로 전환, 해외 시장개척 능력 부족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농산물수출 경쟁력이 점진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주된 원인으로 농산물 생산비 상승과 유통부문의 구조적인 문제를 들 수 있다.

2.1. 농산물 생산비 상승

개혁개방이후 중국의 식량생산비는 매년 평균 8.44%로 증가하였다⁸.

8) 자세한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세계농업정보 5월 23일에 발표한 “중국 식량 생산비 추이와 전망”참조.

1995년 중국 국가통계위원회의 무(畝)당 농산물 생산비에 관한 표본조사에 의하면 자본투입량은 과일과 채소가 무당 416.55위엔과 434.03위엔, 돼지와 소는 두당 531.58위엔과 1,348.9위엔, 담수어는 무당 1,576.4위엔에 달하였는데, 이는 곡물의 무당 자본투입량 108.87위엔을 크게 상회하였다.

연간 노동투입량은 과일과 채소가 무당 67.1일과 61.5일에 달한 반면, 주요 곡물은 무당 단지 13.6일에 지나지 않아, 단위면적당 채소와 과일의 노동투입량은 곡물에 비하여 4.5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담수양식업의 무당 노동투입량은 30.9일 이었으며, 돼지와 소의 두당 사육에 필요한 노동투입량은 20.5일과 57.5일에 달하였다. 노동비가 상승하면서 이러한 농산물의 생산비는 동일한 비율로 상승하였다.

중국의 식량 등 토지집약형 농산물은 현재 수출경쟁력이 크게 하락하였으며, 육류, 수산물, 과일 등 노동집약형 농산물의 생산비 또한 점진적으로 상승하면서, 수출경쟁력을 크게 약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농산물은 경지를 일반적인 투입요소로 하고 있지 않으며, 또한 농한기 대량의 유휴 노동력을 이용할 수기 때문에, 현재 국제시장에서 비교적 높은 경쟁력을 구비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수출이 증가되는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2.2. 높은 유통비용

유관부문의 조사에 따르면, 허난(河南)성 상치우(商丘)지역의 현급 식량 비축창고의 톤당 식량 저장비용은 350위엔에 달하였다. 밀의 예를 들면 톤당 정부의 보호가격⁹⁾에 의한 구매가격은 1,260위엔 이었으며, 여기에 저장비용을 더할 경우 최저 수출가격은 1,600위엔에 달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당시 국제시장의 밀의 FOB가격은 120달러로 당시환율에 의하여 중국화폐로 환산하면 1,008위엔에 불과하다. 따라서 중국이 밀을 수입할 경

9) 중국 정부가 생산자의 이익을 보전하기 위하여 시행한 최저가격에 의한 구매제도를 말함.

우 운송비를 포함한 CIF의 가격은 약 1,300위엔에 불과하다. 위의 비교를 통하여 중국의 식량수출경쟁력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비 식량농산물 예를 들면, 채소, 과일, 육류 등의 유통비용 또한 식량의 유통비용과 마찬가지로 높다. <표 3>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의 채소수출의 FOB가격은 중국 국내도매물가에 비하여 아주 높다. 이는 초급 가공비용의 영향을 다소 받겠지만, 그러나 수출가격이 비교적 높게 형성되는 가장 중요한 원인가운데 하나는 역시 유통비용이 높다는데 있다.

2000년, 중국 농산물수확기의 시장현황을 살펴보면, 밀의 도매가격은 구매가격에 비하여 30~45%, 면화의 도매가격은 구매가격이나 생산자가격에 비하여 25~30%, 옥수수 20~30%, 콩은 15~25%, 채유종실은 10%가 높았다. 위와 같이 중국은 농산물 유통비용이 농산물 최종가격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유통부문의 경비하락을 통한 농산물 수출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지가 크다고 하겠다.

표 3 과일·채소의 국내 도매가격과 수출가격 비교, 1998

단위: 위엔/톤

	과일				채소		
	사과	감귤	배	바나나	콩	무우	토마토
국내도매가격	3087	2190	1840	3720	980	630	1490
FOB수출가격	3138	2369	2574	2778	1148	2236	1873

자료: 「中國農業發展報告」, 中國農業出版社, 1998年.
 「中國對外經濟貿易年鑒」, 中國社會出版社, 1999年.

자료: 陳高生, "中國農產品出口后勁不足的原因與對策", 「中國農村經濟」(2001. 7)에서
 (이수행 soohaeng@krei.re.kr 국제농업연구실)



세계 식료수급 정보

세계 곡물 수급 및 가격 동향(2001. 10)

세계 곡물 수급 및 가격 동향(2001. 10)

1. 곡물 수급 동향 및 전망

1.1. 전체 곡물

2001/02년도 세계 쌀 생산량은 전년 수준을 유지하고 소맥과 옥수수 생산량이 줄어들지만 보리, 호밀, 수수 등 잡곡이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2001/02년도 세계 전체 곡물 생산량은 전년대비 0.1% 증가한 18억 3,258만톤이 될 전망이며, 이는 전월 전망치보다도 약 700만톤 정도 증가한 수준이다.

2001/02년도 총공급량은 전년 기말재고량 4억 8,414만톤과 생산량을 합친 23억 1,672만톤으로 전망되어 전년보다 약 3,400만톤 이상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는 전년대비로는 1.5% 감소한 수준이며, 전월대비로는 0.1% 증가한 수준이다.

2001/02년도 세계곡물 소비량은 전년보다 1.6% 늘어난 18억 9,606만톤으로 전망된다. 1999/00년도에는 생산량과 소비량이 거의 균형을 이루었으나 2000/01년도부터 소비량이 늘어나 2001/02년도에는 그 차이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표 1 세계 전체 곡물의 수급동향

	1999/00	2000/01 (추정)	2001/02(전망)		변동율	
			2001.9	2001.10	전년대비	전월대비
생산량	1871.22	1,830.80	1,825.71	1,832.58	0.1	0.4
공급량	2,393.68	2,350.90	2,314.38	2,316.72	△1.5	0.1
소비량	1,873.58	1,866.76	1,895.30	1,896.06	1.6	0.0
교역량	281.81	264.42	267.92	268.55	1.6	0.2
기말재고량	520.10	484.14	419.08	420.67	△13.1	0.4
기말재고율(%)	27.8	25.9	22.1	22.2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379, Oct, 12 2001.

세계 곡물 교역량(수출량 기준)도 전년대비 1.6% 늘어난 2억 6,855만톤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교역량이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7%가 될 전망이다.

곡물 소비량이 생산량을 약 6,000만톤 이상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2001/02년도 기말재고량은 전년대비 13.1% 감소한 4억 2,067만톤 정도로 전월 전망치 보다도 0.4% 증가한 수준이다. 기말재고율도 2000/01년도 25.9%에서 22.2%로 3.7% 포인트 하락할 전망이다.

1.2. 쌀

2001/02년도 쌀 생산량은 2000/01년보다 0.6% 줄어든 3억 9,329만톤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쌀 생산량은 늘어나지만 중국과 일본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미국의 쌀 생산량은 전년대비 9.7% 증가할 전망이다.

2001/02년도 쌀 소비량은 전년대비 1% 늘어난 4억 484만톤으로 전년대비 약 400만톤 정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표 2 국제 쌀(정곡기준) 수급 동향

	1999/00	2000/01	2001/02(전망)		변동율	
			2001.9	2001.10	전년대비	전월대비
생산량	408.46	395.69	394.44	393.29	△0.6	△0.3
공급량	541.50	538.62	532.03	530.81	△1.5	△0.2
소비량	398.56	401.11	404.80	404.84	0.9	0.0
교역량	24.06	23.56	23.42	23.42	△0.6	0.0
기말재고량	142.93	137.52	127.23	125.96	△8.4	△1.0
기말재고율(%)	35.9	34.3	31.4	31.1	△9.2	△1.0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379, Oct. 12, 2001.

2001/02년도 세계 전체 쌀 교역량은 전년대비 0.6% 줄어든 2,342만톤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생산량에서 교역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6.0%로 전망된다. 수출량은 태국이 전년과 같은 670만톤 수준이나 베트남은 13.2% 증가한 430만톤, 미국도 약간 늘어난 271만톤 수준인 것으로 전망된다.

태국과 미국의 재고량은 늘어나지만 인도네시아, 중국, 일본의 재고량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어서 세계 쌀 기말재고량은 전년대비 8.4%가 줄어든 1억 2,596만톤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기말재고율은 31.1%로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중국이 세계 쌀 재고량의 약 67%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1.3. 소맥

세계 밀 생산량은 2000/01년 5억 7,925만톤에서 2001/02년에는 전년대비 1.4% 감소한 5억 7,120만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러시아의 생산량은 증가할 전망이나 미국, 캐나다, 중국, 유럽 등 주요 소맥 생산국의 생산량이 줄어들 전망이기 때문이다.

2001/02년도 세계 밀 소비량은 2000/01년 5억 8,848만톤보다 약 550만톤 늘어난 5억 9,397만톤 수준이 될 전망이다.

표 3 국제 소맥 수급 동향

	1999/00	2000/01 (추정)	2001/02		변동율	
			2001.9	2001.1	전년대비	전월대비
생산량	586.19	579.25	571.07	571.20	△1.4	0.0
공급량	760.65	747.39	729.54	730.10	△2.3	0.1
소비량	592.52	588.48	595.06	593.97	0.9	△0.2
교역량	135.16	123.80	128.54	128.36	3.7	△0.1
기말재고량	168.14	158.90	134.48	136.13	△14.3	1.2
기말재고율(%)	28.4	27.0	22.6	22.9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379, Oct. 12, 2001.

밀의 국제 교역량은 1999/00년 1억 3,516만톤까지 늘어났으나, 2000/01년에는 1억 2,380만톤으로 줄어들었다가 2001/02년에는 다시 1억 2,836만톤으로 전년대비 3.7% 늘어날 전망이다. 생산량에 대한 교역량의 비율은 22.5%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1/02년 소비량은 증가하나 생산량이 감소하여 기말 재고량은 전년대비 14.3% 감소한 1억 3,613만톤으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주요 밀 생산국인 미국, 중국, EU의 재고량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어서 기말재고율도 전년의 27%에서 22.9%로 크게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4. 옥수수

2001/02년도 세계 옥수수 생산량은 5억 8,385만톤으로 전년보다 0.4% 감소하며, 전월 전망치보다는 0.8%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중국, 유럽, 멕시코, 동남아시아의 생산량은 약간 늘어나지만 미국 생산량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기 때문이다.

2001/02년의 소비량은 전년대비 2.2% 증가한 6억 1,643만톤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소비량이 생산량을 약 3,258만톤 정도를 초과할 전망이다.

표 4 국제 옥수수 수급 동향 및 전망

	1999/00	2000/01 (추정)	2001/02(전망)		변동율	
			2001.9	2001.10	전년대비	전월대비
생산량	607.02	586.05	579.19	583.85	△0.4	0.8
공급량	776.14	756.99	734.65	737.90	△2.5	0.4
소비량	605.20	602.94	616.15	616.43	2.2	0.0
교역량	85.83	82.94	81.48	82.84	△0.1	1.7
기말재고량	170.94	154.05	118.50	121.47	△21.1	2.5
기말재고율(%)	28.2	25.5	19.2	19.7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379, Oct. 12, 2001.

옥수수 교역량의 경우 전년보다 01% 감소한 8,284만톤,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2%가 될 전망이다. 전체 교역량 중 미국과 아르헨티나가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62.9%, 12.9%로 이들 두 국가가 약 75% 이상을 차지할 전망이다.

2001/02년 옥수수의 기말재고량은 전년보다 21.1% 줄어든 1억 2,147만톤으로 전년보다 약 3,300만톤 정도 줄어들 전망이다. 아르헨티나, 유럽의 기말재고량은 약간 늘어나지만 중국과 미국의 기말재고량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기 때문에 기말재고율도 전년보다 약 6% 포인트 줄어든 19.7%가 될 전망이다.

1.5. 대두

세계 대두 생산량은 2001/02년에 사상 최대인 1억 8,067만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중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대두 생산국의 생산량이 증가할 전망이다.

대두 소비량은 전년보다 4.9% 늘어난 1억 7,994만톤으로 전망된다. 생산량이 소비량을 약 73만톤 정도 상회할 전망이다.

표 5 국제 대두 수급 동향 및 전망

	1999/00	2000/2001 (추정)	2001/2002		변동율	
			2001.9	2001.10	전년대비	전월대비
생산량	159.85	173.18	175.44	180.67	4.3	3.0
공급량	186.49	199.82	203.81	209.19	4.7	2.6
소비량	160.53	171.48	177.87	179.94	4.9	1.2
교역량	38.72	54.56	55.54	57.31	5.0	3.2
기말재고량	26.94	28.52	26.18	29.04	1.8	10.9
기말재고율(%)	16.8	16.6	14.7	16.1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379, Oct. 12, 2001.

2001/02년 세계 대두 교역량은 전년보다 5.0% 증가한 5,731만톤으로 전망된다.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교역량의 비중은 31.7%에 이를 전망이다, 전 세계 수출량에서 미국이 46.5%, 브라질이 30.5%, 아르헨티나가 14.0%의 비중을 차지하여 이들 세 국가의 수출비중이 91%에 이를 전망이다. 2001/02년도 미국의 수출비중은 약간 줄어들고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비중은 늘어날 전망이다.

2000/01년 대두의 기말 재고량은 2,904만톤으로 추정되어 전년의 2,852만톤과 비교하여 1.8% 정도 증가할 전망이다. 그러나 소비량이 생산량보다 더 크게 늘어나 기말재고율은 전년의 16.6%에서 16.1%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2. 국제 곡물 가격 동향 및 전망

2.1. 쌀

중립종(자포니카계) 쌀의 국제가격은 1998년 9월 이후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하여 1999년 7월에는 사상최고치인 톤당 556.66달러를 기록하였다. 이

후 하락하여 2001년 10월 국제가격(10월 19일 기준)은 전월대비 23.9%대폭 상승한 톤당314.16달러 수준이다. 그러나 이는 전년대비 27.2%, 전년동월 대비 20.0% 낮은 수준이다.

태국산 장립종 쌀 가격은 1999년 10월 톤당 221.80 달러까지 하락하였으나 이후 조금씩 상승하여 2000년 2월 253.25달러까지 상승하였다. 이후 계속 하락하여 5월에는 톤당 210 달러 수준이었으나 2001년 10월(10월 19일 기준)에는 전년대비 15.9% 하락한 톤당 178 달러 수준이다. 이는 전년동월 보다 8.4% 낮으며 전월과는 동일한 수준이다.

현재 쌀재고량은 충분하지만 소비량이 늘어나고 교역량은 약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어 국제 쌀 가격은 약세장이 이어질 전망이다.

2.2. 소맥

밀의 국제가격은 1996년 5월 톤당 218.11 달러까지 폭등한 이후 1997/98년의 대풍작에 따라 1997년에는 153.1 달러로 하락하였다. 가격하락에 따라 1998/99년의 식부면적이 줄어들어 생산량이 감소하였으나 세계 경기침체에 따른 수요가 크게 감소하여 1998/99년의 국제 밀 가격은 120 달러로 더욱 하락하였다.

국제 밀 가격은 1999년 12월에 톤당 112.44 달러까지 떨어졌으나, 2000년 상반기에는 110~118 달러 수준을 유지하였다. 2000년 8월에는 톤당 102.92 달러까지 하락하였으나 이후 상승하여 2001년 10월(10월 19일 기준) 현재에는 139.99 달러로 이는 전년보다 26.9%, 전년동월보다 29.3%, 전월보다 2.2% 높은 수준이다.

현재 기말재고량이 크게 줄어들고 소비량과 교역량이 늘어날 전망이기 때문에 앞으로 국제가격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2.3. 옥수수

1996년 5월 톤당 209 달러까지 폭등했던 옥수수 국제가격은 연속된 풍작으로 1999년 7월에는 85.42 달러까지 폭락하였으나 이후 조금씩 회복하여 2000년 5월에는 톤당 102.67 달러로 상승하였다.

이후 하락하기 시작하여 2000년 8월에는 톤당 80 달러로 하락함으로써 2000년 이후 최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2001년 10월(10월 19일 기준) 현재 톤당 93.60 달러 수준으로 전년대비 1.8%, 전년동월대비 5.6% 상승하였으나, 전월보다는 0.6% 낮은 수준이다.

기말재고량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어 국제가격은 이 수준에서 상승할 전망이다.

2.4. 대두

대두 국제가격은 1997년 5월에 톤당 331달러(미국 Gulf, 2등급, f.o.b.)까지 상승하였으나, 1997/98, 1998/99년의 연이은 풍작에 따라 1998년에 234.33 달러, 1999년 7월에는 168.98 달러까지 하락하였다. 이후 상승하기 시작하여 2000년 5월에는 톤당 211.72 달러까지 상승하였다.

이후부터 국제가격이 하락하여 2000년 8월에는 톤당 178.87 달러까지 하락하다가 12월에는 196.98달러까지 상승하였다. 2001년 10월(10월 19일 기준) 현재에는 183.63 달러로 전년대비 5.3%, 전년동월대비 0.5%, 전월보다는 0.7% 하락한 수준이다.

2001/02년도에는 생산량이 크게 늘어나지만 소비량과 교역량이 더 큰 폭으로 늘어나고 기말재고량이 약간 줄어들어 대두의 국제가격은 약세장이 이어질 전망이다.

표 6 국제 곡물가격 동향

단위: 달러/톤, FOB

품 목	2000 평균	2000.10	2001.9	2001.10	증감률(%)		
					전년대비	전년동월	전월대비
쌀(중립종)	431.70	392.69	253.53	314.16	△27.2	△20.0	23.9
쌀(장립종)	211.68	194.38	178.00	178.00	△15.9	△8.4	0.0
소 맥	110.28	108.27	136.93	139.99	26.9	29.3	2.2
옥수수	91.94	88.61	94.20	93.60	1.8	5.6	△0.6
대 두	193.98	184.61	184.90	183.63	△5.3	△0.5	△0.7

주: 쌀 중립종은 U.S. California, Medium 1등급, 장립종은 태국 1등급 가격임. 소맥은 US Portland, White Wheat 1등급 가격, 옥수수와 대두는 US Gulf 2등급 가격임.

표 7 세계 쌀(정곡기준) 수급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톤

	1999/00	2000/01 (추정)	2001/02(전망)		변동률	
			2001.9	2001.10	전년대비	전월대비
공급량	541.50	538.62	532.03	530.81	△1.5	△0.2
기초재고량	133.04	142.93	137.59	137.52	△3.8	△0.1
생산량	408.46	395.69	394.44	393.29	△0.6	△0.3
미국	6.50	5.98	6.51	6.56	9.7	0.8
태국	16.50	16.83	16.83	16.83	0.0	0.0
베트남	20.93	20.53	21.00	21.00	2.3	0.0
인도네시아	33.45	32.00	32.50	32.50	1.6	0.0
중국	138.94	131.54	128.10	126.70	△3.7	△1.1
일본	8.35	8.64	8.50	8.50	△1.6	0.0
수입량	21.29	21.81	21.83	21.76	△1.0	△0.3
인도네시아	1.50	1.30	1.60	1.60	23.1	0.0
중국	0.28	0.30	0.31	0.31	3.3	0.0
일본	0.64	0.73	0.70	0.70	△4.1	0.0
소비량	398.56	401.11	404.80	404.84	0.9	0.0
미국	3.85	3.69	3.81	3.81	3.3	△0.8
태국	9.60	9.99	10.00	10.00	0.1	0.0
베트남	16.77	16.96	17.10	17.10	0.8	0.0
인도네시아	35.40	35.88	36.36	36.36	1.3	0.0
중국	133.76	134.34	134.61	134.61	0.2	0.0
일본	9.45	9.30	9.30	9.30	0.0	0.0
수출량	24.06	23.56	23.42	23.42	△0.6	0.0
미국	2.80	2.61	2.71	2.71	3.8	0.0
태국	6.55	6.70	6.70	6.70	0.0	0.0
베트남	3.37	3.80	4.30	4.30	13.2	0.0
기말재고량	142.93	137.52	127.23	125.96	△8.4	△1.0
미국	0.87	0.89	1.21	1.28	43.8	5.8
태국	1.41	1.55	1.68	1.68	8.4	0.0
인도네시아	6.37	3.80	1.54	1.54	△59.5	0.0
중국	98.50	94.20	86.00	84.60	△10.2	△1.6
일본	1.83	1.30	1.05	1.05	△19.2	0.0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379, Oct. 12, 2001.

표 8 세계 소맥 수급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톤

	1999/00	2000/01 (추정)	2001/02(전망)		변동률	
			2001.9	2001.10	전년대비	전월대비
공급량	760.65	747.39	729.54	730.10	△2.3	0.1
기초재고량	174.46	168.14	158.47	158.90	△5.5	0.3
생산량	586.19	579.25	571.07	571.20	△1.4	0.0
미국	62.57	60.76	54.19	53.28	△12.3	△1.7
호주	25.01	21.17	20.50	20.50	△3.2	0.0
캐나다	26.90	26.80	21.50	20.70	△22.8	△3.7
EU15	96.78	104.85	92.62	91.96	△12.3	△0.7
중국	113.88	99.64	94.00	94.00	△5.7	0.0
러시아	31.00	34.45	41.50	43.50	26.3	4.8
수입량	130.71	122.60	126.42	126.62	3.3	0.2
EU15	25.09	24.70	26.13	26.73	8.2	2.3
브라질	7.56	7.20	6.50	6.50	△9.7	0.0
북아프리카	16.61	16.80	16.40	16.40	△2.4	0.0
파키스탄	2.10	0.15	0.50	0.50	233.3	0.0
인도	1.37	0.10	0.10	0.10	0.0	0.0
러시아	5.08	1.50	1.00	1.00	△33.3	0.0
소비량	592.52	588.48	595.06	593.97	0.9	△0.2
미국	35.38	36.32	34.62	33.94	△6.6	2.0
EU15	87.19	92.38	87.58	88.12	△4.6	0.6
중국	115.62	114.00	113.00	113.00	△0.9	0.0
파키스탄	20.45	20.50	20.60	20.40	△0.5	△1.0
러시아	35.37	35.05	37.50	37.50	7.0	0.0
수출량	135.16	123.80	128.54	128.36	3.7	△0.1
미국	29.65	28.89	28.58	27.90	△3.4	△2.4
캐나다	19.17	17.32	16.00	15.50	△10.5	△3.1
EU15	38.34	35.70	34.20	33.70	△5.6	△1.5
기말재고량	168.14	158.90	134.48	136.13	△14.3	1.2
미국	25.85	23.85	17.21	17.74	△25.6	3.1
EU15	14.41	15.88	12.84	12.74	△19.8	△0.8
중국	65.16	50.48	32.18	31.98	△36.6	△0.6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379, Oct. 12, 2001.

표 9 세계 옥수수 수급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톤

	1999/00	2000/01 (추정)	2001/02(전망)		변동률	
			2001.9	2001.10	전년대비	전월대비
공급량	776.14	756.99	734.65	737.90	△2.5	0.4
기초재고량	169.12	170.94	155.46	154.05	△9.9	△0.9
생산량	607.02	586.05	579.19	583.85	△0.4	0.8
미국	239.55	253.21	234.67	239.52	△5.4	2.1
아르헨티나	17.20	15.50	16.00	15.50	0.0	△3.1
EU15	37.21	38.42	40.36	39.26	2.2	△2.7
멕시코	19.24	17.70	19.00	19.00	7.3	0.0
동남아시아	14.61	14.77	15.08	14.98	1.4	△0.7
중국	128.09	106.00	105.00	108.00	1.9	2.9
수입량	80.02	81.59	81.08	81.64	0.1	0.7
EU15	10.87	11.08	11.78	11.48	3.6	△2.5
일본	16.12	16.00	15.70	15.70	△1.9	0.0
멕시코	4.91	5.50	6.00	6.00	9.1	0.0
동남아시아	4.50	4.15	4.90	4.90	18.1	0.0
한국	8.69	8.50	7.00	7.00	△17.6	0.0
소비량	605.20	602.94	616.15	616.43	616.2	0.0
미국	192.48	199.51	199.40	198.89	△0.3	△0.3
EU15	38.72	40.19	41.85	40.75	1.4	△2.6
일본	16.32	16.05	15.70	15.70	△2.2	0.0
멕시코	23.65	24.00	25.00	25.00	4.2	0.0
동남아시아	18.99	18.52	19.53	19.46	5.1	△0.4
한국	8.40	8.80	7.10	7.10	△19.3	0.0
중국	118.00	120.00	123.00	124.00	3.3	0.8
수출량	85.83	82.94	81.48	82.84	△0.1	△1.7
미국	49.21	49.28	50.17	52.07	5.7	3.8
아르헨티나	11.96	10.50	11.00	10.70	1.9	△2.7
중국	9.94	7.00	4.00	4.00	△42.9	0.0
기말재고량	170.94	154.05	118.50	121.47	△21.1	2.5
미국	43.63	48.23	34.58	37.04	△23.2	7.1
아르헨티나	0.45	0.47	0.48	0.48	2.1	0.0
EU15	4.11	4.70	5.27	5.27	12.1	0.0
중국	102.31	81.36	59.66	61.56	△24.3	3.2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379, Oct. 12, 2001.

표 10 세계 대두 수급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톤

	1999/00	2000/01 (추정)	2001/02(전망)		변동률	
			2001.9	2001.10	전년대비	전월대비
공급량	186.49	199.82	203.81	209.19	4.7	2.6
기초재고량	26.64	26.64	28.37	28.52	7.1	0.5
생산량	159.85	173.18	175.44	180.67	4.3	3.0
미국	72.22	75.06	77.12	79.12	5.4	2.6
아르헨티나	21.20	26.50	26.00	27.00	1.9	3.8
브라질	34.20	38.40	39.00	41.50	8.1	6.4
중국	14.29	15.40	15.00	15.00	△2.6	0.0
수입량	47.65	54.42	55.78	57.10	4.9	2.4
EU15	15.66	17.75	17.72	18.32	3.2	3.4
일본	4.90	4.84	4.85	4.90	1.2	1.0
중국	10.10	13.20	14.00	14.00	6.1	0.0
소비량	160.53	171.48	177.84	179.94	4.9	1.2
미국	47.43	49.09	49.88	49.89	1.6	0.0
아르헨티나	18.02	18.68	19.63	19.93	6.7	1.5
브라질	23.19	24.25	25.00	25.50	5.2	2.0
EU15	15.66	16.74	17.57	18.33	9.5	4.3
일본	5.08	5.08	5.11	5.16	1.6	1.0
중국	22.90	26.47	29.60	29.60	11.8	0.0
수출량	46.67	54.56	55.54	57.31	5.0	3.2
미국	26.49	27.22	26.94	26.67	△2.0	△1.0
아르헨티나	4.13	7.20	7.50	8.00	11.0	6.7
브라질	11.16	15.00	15.75	17.50	16.7	11.1
기말재고량	26.94	28.52	26.18	29.04	1.8	10.9
미국	7.90	6.75	6.94	9.39	39.1	35.3
아르헨티나	5.61	6.63	5.90	6.10	△8.0	3.4
브라질	7.65	7.60	6.75	6.90	△9.2	2.2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379, Oct. 12, 2001.

(성명환 mhsung@krei.re.kr 농산업경제연구부)

M45-15 세계농업뉴스 제15호 (2001. 11)

등 록 제5-10호 (1979. 5. 25)

인 쇄 2001년 11월

발 행 2001년 11월

발행인 강정일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전화 02-3299-4224 팩시밀리 02-965-6950

<http://www.krei.re.kr>

인쇄처 경희정보인쇄(주) 02-2263-7534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 이 연구는 우리 연구원의 공식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